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A Study on Establishing Outcome Assessment System
for Fishing Community New Deal 300

2019. 10.

박상우 | 황재희 | 윤영준 | 이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황재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윤영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연구원
이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박상우 연구총괄, 제1장, 제4장 제1절, 제2절 일부, 제3절

연구진

황재희 제3장
윤영준 제4장 제2절 일부
이호림 제2장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역재생사업단장
강희정 해양수산부 내수면산업팀 사무관
권준영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목차

❖ 요약 · i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4
2. 연구 방법	6

제 2 장 어촌뉴딜 300사업 현황 및 실태 · 11

제1절 생활 SOC 정책동향	11
1. 생활 SOC 3개년 계획	11
2. 어촌뉴딜 300사업	19
제2절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현황	21
1.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및 선정	21
2.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현황	26

제 3 장 유사 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검토 · 31

제1절 도시재생 성과평가	31
---------------------	----

1.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31
2.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39
제2절 지역개발 성과평가	47
1.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47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2
제3절 도서개발 성과평가	56
1. 도서종합개발사업	56
2. 도서특성화사업: 가고 싶은 섬 사업	61
제4절 성과평가 체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66
1. 분야별 성과평가 체계 비교	66
2. 시사점	68

제 4 장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 69
제1절 어촌뉴딜 성과평가 개요	69
1. 재정사업의 평가 체계	69
2. 어촌뉴딜사업의 현행 성과지표	79
3. 현행 어촌뉴딜 성과목표 및 지표의 한계	87
제2절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92
1. 개요	92
2. 성과평가 체계 및 평가항목	101
3. 평가항목 우선순위	113
제3절 어촌뉴딜 성과평가 추진방안	124
1. 추진 개요	124
2. 평가방식 및 방법	125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33
제1절 결론	133

제2절 정책제언	135
1. 관문심사 및 자기진단평가 체계 도입	135
2. 어촌뉴딜 핵심 성과지표(KPI) 도출 및 평가 결과	136
3. 어촌뉴딜 성과평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138
4. 어촌뉴딜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 운영	139
5. 어촌뉴딜 성과평가 관리시스템 도입	141



표 목차

❖	
〈표 1-1〉 AHP 분석 조사개요	9
〈표 2-1〉 어촌뉴딜 300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	21
〈표 2-2〉 어촌뉴딜 300사업 유형별 선정결과	22
〈표 2-3〉 어촌뉴딜 70개소 선정 결과	22
〈표 2-4〉 입지유형별 공통사업 인프라 투자 계획 비율	27
〈표 2-5〉 사업유형별 공통사업 인프라 투자 비율	28
〈표 2-6〉 입지유형별 특화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투자비율	29
〈표 2-7〉 사업유형별 특화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투자비율	29
〈표 3-1〉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근거	33
〈표 3-2〉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성과지표	36
〈표 3-3〉 세부 사업평가 지표 가이드라인	37
〈표 3-4〉 전주TB의 사업 모니터링 지표	38
〈표 3-5〉 창원TB의 사업 모니터링 지표	39
〈표 3-6〉 서울형 도시재생 현황	41
〈표 3-7〉 추진과정 모니터링 지표 예시	43
〈표 3-8〉 성과(변화) 모니터링 공통지표	44
〈표 3-9〉 종합평가 항목	45
〈표 3-10〉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요	48
〈표 3-11〉 개발계획안 실현가능성 검증기준	49
〈표 3-12〉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기준	50
〈표 3-13〉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기준	51
〈표 3-14〉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기준	52
〈표 3-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개요	53
〈표 3-16〉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 도서지역 분류	57
〈표 3-17〉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주민설문 대상지역	58

〈표 3-18〉 산출목표 달성 및 기반시설 개선 지표	58
〈표 3-19〉 결과목표 달성도 측정 지표	59
〈표 3-20〉 도서관기반시설 개선정도 측정 항목	60
〈표 3-21〉 섬별 평가항목 구성	64
〈표 3-22〉 분야별 평가체계 비교	67
〈표 4-1〉 재정성과 평가의 법적근거	74
〈표 4-2〉 성과관리 대상기관	71
〈표 4-3〉 성과지표의 4가지 유형	73
〈표 4-4〉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변화	74
〈표 4-5〉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평가요소	75
〈표 4-6〉 핵심사업 평가대상(2018년)	77
〈표 4-7〉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절차	78
〈표 4-8〉 어촌뉴딜의 성과지표	80
〈표 4-9〉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84
〈표 4-10〉 자문의견의 기본계획 반영 정도	86
〈표 4-11〉 어촌뉴딜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89
〈표 4-12〉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의 기본방향	93
〈표 4-13〉 제47조의8 어촌뉴딜 성과평가의 근거규정 마련(안)	95
〈표 4-14〉 사전준비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104
〈표 4-15〉 계획수립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108
〈표 4-16〉 사업시행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111
〈표 4-17〉 사업이후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113
〈표 4-18〉 AHP 조사 체계	114
〈표 4-19〉 응답자의 특성	115
〈표 4-20〉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프로세스별 평가기준	116
〈표 4-21〉 어촌뉴딜 300사업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항목	116
〈표 4-22〉 AHP 쌍대비교값	117
〈표 4-23〉 성과평가 추진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118
〈표 4-24〉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평가기준별 상대적 중요도/종합 중요도	119
〈표 4-25〉 1차 관문심사 점검사항(안)	127
〈표 5-1〉 어촌뉴딜 성과평가의 근거규정 마련(안)	139

그림 목차



〈그림 1-1〉 공간적 범위	5
〈그림 1-2〉 연구 수행방법	7
〈그림 1-3〉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조사(경남 남해, 충북 제천)	8
〈그림 1-4〉 연구수행 체계도	10
〈그림 2-1〉 생활SOC 3개년 계획	14
〈그림 2-2〉 생활SOC 3개년 계획(여가 활력 분야)	16
〈그림 2-3〉 생활SOC 3개년 계획(생애 돌봄 분야)	17
〈그림 2-4〉 생활SOC 3개년 계획(안전·안심분야)	18
〈그림 2-5〉 어촌뉴딜 300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안	20
〈그림 2-6〉 어촌뉴딜의 사업내용별 예산비중	26
〈그림 2-7〉 지역협의체 및 위원장 구성 비율	30
〈그림 3-1〉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로드맵	32
〈그림 3-2〉 도시재생사업 평가 체계	34
〈그림 3-3〉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평가 주체	35
〈그림 3-4〉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유형	40
〈그림 3-5〉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 구성체계	42
〈그림 3-6〉 사업추진체계도	54
〈그림 3-7〉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평가지표 구조	55
〈그림 3-8〉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56
〈그림 3-9〉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평가체계	62
〈그림 3-10〉 총괄평가 항목 구성	63
〈그림 3-11〉 유사 사례 분석의 주요 시사점	68
〈그림 4-1〉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70
〈그림 4-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도	72
〈그림 4-3〉 핵심사업 평가 추진체계	76

〈그림 4-4〉 핵심사업 평가과정	77
〈그림 4-5〉 여촌뉴딜의 정책목록	79
〈그림 4-6〉 1차 공모사업의 기본계획 협의 완료 대상지역(56개소)	81
〈그림 4-7〉 거제시(이수도항) 및 순천시(화포항) 성과지표 사례	82
〈그림 4-8〉 기본계획의 부문별 성과지표	83
〈그림 4-9〉 기본계획의 예산배정 비율(공통사업 vs 특화사업)	85
〈그림 4-10〉 현행 여촌뉴딜 성과평가 검토 개요	87
〈그림 4-11〉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인과성이 부족한 사례	90
〈그림 4-12〉 성과평가 체계의 기본방향 도출과정	92
〈그림 4-13〉 여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마련의 목적	95
〈그림 4-14〉 여촌뉴딜 단계별 평가절차	97
〈그림 4-15〉 여촌뉴딜 성과평가 체계(안)	102
〈그림 4-16〉 사전준비 단계의 평가항목(안)	104
〈그림 4-17〉 계획수립 단계의 평가항목(안)	107
〈그림 4-18〉 사업시행 단계의 평가항목(안)	110
〈그림 4-19〉 사업이후 단계의 평가항목(안)	112
〈그림 4-20〉 사전준비 단계의 세부 평가항목 우선순위	120
〈그림 4-21〉 계획수립 단계의 세부 평가항목 우선순위	121
〈그림 4-22〉 사업시행 단계의 세부 평가항목 우선순위	122
〈그림 4-23〉 사업이후 단계의 세부 평가항목 우선순위	123
〈그림 4-24〉 여촌뉴딜 성과평가 추진 로드맵(안)	124
〈그림 4-25〉 여촌뉴딜 성과평가의 평가방식	125
〈그림 4-26〉 여촌뉴딜 사업추진과정 및 관문심사 도입(안)	126
〈그림 4-27〉 2차 관문심사(공모평가) 개선방안(안)	128
〈그림 4-28〉 여촌뉴딜 사업추진과정 및 모니터링 점검 · 평가 도입(안)	129
〈그림 4-29〉 여촌뉴딜 사업추진과정 및 성과평가 도입(안)	130
〈그림 4-30〉 여촌뉴딜의 성과평가 체계(안)	131
〈그림 4-31〉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거버넌스(안)	132
〈그림 5-1〉 여촌뉴딜 관문심사 제도 도입(안)	135
〈그림 5-2〉 여촌뉴딜사업 40개소의 여촌주민 삶의 질 만족도 평가결과	138
〈그림 5-3〉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 운영(안)	140
〈그림 5-4〉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141

요약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어촌뉴딜은 지금까지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어촌·어항의 통합적 개발을 통해 생활 SOC 등 인프라 현대화와 어촌사회를 혁신하는 것으로 어촌주민과 지자체의 기대는 높다. 하지만 어촌뉴딜 2차 공모사업(2020~2022년)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촌뉴딜 정책이 기존 어항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어촌뉴딜의 현장에서는 현안 진단 및 사업 발굴 등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협의체는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 300개소에 약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으로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어촌뉴딜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어촌뉴딜 정책은 행정뿐만 아니라 어촌현장에서 어촌뉴딜의 개념, 추진방식, 사업목표 및 성과 등 각기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마련을 통해서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업의 목표, 성과의 달성 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업실행에 따른 현실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식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생활 SOC 정책동향과 어촌뉴딜 공모 추진상황, 유사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단계별 평가체계와 주요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어촌뉴딜 300사업 평가,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어촌뉴딜 300사업의 핵심적인 성과평가 체계와 체크리스트를 제시함으로써 정부, 지자체, 전문가, 용역기관, 어촌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사업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번 현안연구를 통해 도출한 핵심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를 ① 사전 준비단계, ② 계획수립 단계, ③ 사업시행 단계, ④ 사업 이후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자기진단평가와 모니터링 점검·평가, 성과지표 이행점검 등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평가(부처 자율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어촌뉴딜 내실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어촌뉴딜 성과평가는 3단계의 관문심사(1차 지역협의체 → 2차 공모를 통한 사업지 선정, 3차 기본계획 확정)를 제안하고, 특히, 사전 준비단계로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과정에서 1차 관문의 기능을 강화하여 어촌뉴딜의 주민주도와 지역혁신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어촌뉴딜 성과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촌·어항법」제47조의8 개정안을 통해 성과평가의 근거규정과 대책연구기관과 협력기관 등의 거버넌스 등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 행정, 해양수산부, 전문가 등 수요자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촌뉴딜 공모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의 과정과 성과 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촌뉴딜 성과평가 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취약지역 기반확충을 위한 생활SOC 정책으로 어촌뉴딜300 추진

■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배경 및 개념

- 어촌은 풍부한 자연환경, 해양, 수산 등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인 인프라 및 콘텐츠가 부족하여 지역 간 격차가 커져 일부 어촌지역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어촌뉴딜은 지역경제 침체 및 인구감소 등 어촌사회 문제를 해결을 목적으로 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SOC 일환으로 마련됨
- ‘어촌뉴딜 300사업’은 소규모 항포구 등 어촌지역의 300개소를 현대화하여 어촌을 활력 있고, 매력 있는 공간으로 창출하는 사업임
 - 해상교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접근성 제고
 - 어촌의 핵심자원을 개발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 어촌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활력 있는 어촌 조성

■ 어촌뉴딜 1차(2019~2021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 어촌뉴딜 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12개 시도에서 제출한 총 143건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70개소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였음
 - 1차 공모 사업지역 70개소 중 도서어촌과 연안어촌은 각각 30개소, 40개소, 여객선이 운항되는 소규모 항포구는 24개소로 나타남

표 1. 어촌뉴딜300 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

단위: 건, %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청	143	4	7	3	3	1	13	56	6	37	6	3	4
선정	70	1	5	1	1	-	6	26	5	15	5	2	3
(비중)	100	1.4	7.1	1.4	1.4		8.6	37.1	7.1	21.4	7.1	2.9	4.3
도서	30	-	4	-	-	-	3	12	4	5	1	-	1
연안	40	1	1	1	1	-	3	14	1	10	4	2	2
여객	24		1				2	11	3	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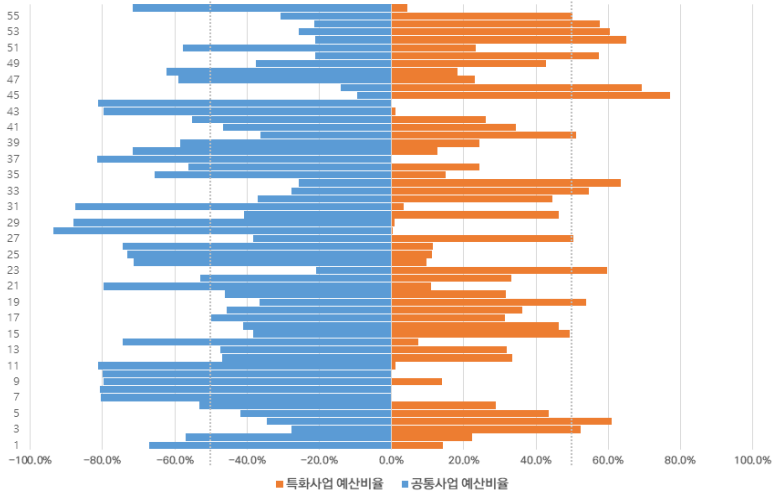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합동, 어촌뉴딜300 후속조치 추진방안, 2019, p.7 내용을 저자 재구성

■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현황

- 본 연구는 70개 선정된 지역 중 기본계획이 확정된 5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유형, 성과지표,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 의견 반영 등을 분석하였음
- 어촌뉴딜 300사업의 사업시설별 예산비중은 생활SOC 개선이 포함된 공통사업이 63.7%, 특화사업 33.7%, 소프트웨어사업 3.5%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공통사업은 방파제 정비, 어항시설정비, 해상교통시설 정비사업에 편중되어 생활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
 - 특화사업은 해양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관광인프라 개선사업 약 68%를 차지하고, 생활SOC인 정주여건 개선은 32%로 나타남
 - 역량강화사업은 교육이 47%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홍보·마케팅 28%, 컨설팅 25%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기본계획의 예산배정 비율(공동사업 vs 특화사업)

단위: %



자료: 해양수산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 기본계획 협의요청서(56개)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기본계획의 성과지표는 평균 4.1개로 나타났고, 성과지표가 7개인 지역이 1개소, 성과지표가 없거나 1개만 제시한 신청지역도 4개소로 나타남
 - 성과지표는 ‘관광객수 증가’가 40개소(71.4%)로 가장 높았고, ‘공동체 역량강화’ 38개소(67.9%), ‘정주/SOC 등 주민 삶의 질 만족도’ 37개소(66.1%), ‘소득원 창출’ 28개소(50.0%), ‘일자리 창출’ 21개소(37.5%)로 나타남
- 지역협의체 구성은 평균 13.6명으로 지역전문가는 10.6%, 분야별 전문가는 18.9%, 행정 21.3%, 지역주민은 57.6%로 나타났으며, 지역협의체 위원장으로 어촌계장이 80%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에 의해 제시된 자문 및 검토의견은 총 1,251건으로, 이 중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395건(31.6%), 부분반영 184건(14.7%), 반영예정 528건(42.2%), 미반영 144건(11.5%)로 나타나 반영예정인 528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도시·농촌, 섬 등 지역개발사업, 단계별 평가요소 차별적으로 구성

■ 도시재생 사업, 사업 단계별로 평가체계 구체화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평가는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종합 성과평가로 구성됨
 - 연차별 평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별 모니터링을 의미함
 - 종합 성과평가는 사업추진 4년차 이후부터 확인되는 효과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사업종료 후의 효과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후평가 및 피드백에 해당함
- 이러한 특징은 도시재생 분야의 사업들이 유관 특별법 및 상위 계획을 통해 평가요소 및 방안을 비교적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임
 - 연차별 평가지표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계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지역 및 사업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됨
-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각 사업지는 지역 및 사업특성에 적합한 모니터링·성과 지표를 직접 개발하여 활용함
 - 가령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거지구 지표 24개, 상가지구 지표 20개로 구성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의 모니터링·평가지표도 전주와 같이 주거지구, 상가지구 대상의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개발 분야 사업은 평가결과에 근거한 인센티브·패널티로 사업 효과성 제고

- 이러한 방식은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국토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를 위탁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함
 - 사업 유형을 개발계획과 기반시설사업 부문으로 분리하여 각 부문에 대한 사전평가(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집행평가(실적)를 수행하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는 사업집행 단계의 자율평가, 모니터링·컨설팅 내용을 활용한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전문가 그룹의 집행결과 평가로 진행됨
 -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및 현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산출(Output) 지표, 결과(Result) 지표, 파급효과(Impact)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함

■ 도서개발 사업의 평가체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평가·관리 부분이 비교적 취약

-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988년부터 지금까지 4차에 이르는 10년 단위 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평가내용은 사업관리 및 사후평가보다는 사전 타당성 검토에 치중되어 있음
 - 제4차 계획에서만 1,256개 사업에 1조 5,132억원의 재정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등 사업규모와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후평가 및 피드백 과정의 부족은 평가체계의 한계로 지적됨
- 시범사업으로 진행된『가고 싶은 섬』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사업 단위 및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된 반면, 시범사업 이후 중앙 정부 차원의 사업이 단절된 관계로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다소 낮은 실정임

표 2. 정책 분야별 평가체계 비교

분야	사업명	평가체계	평가주체	시기
도시 재생	도시 재생	- 사업 단계별 평가(준비-계획-집행-관리) - 지자체 TB별 자체 모니터링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 준용)	- 도시재생지원기구 - 국토교통부, 지자체	매년, 4년 (종합평가)
	서울형 도시재생	- 사업 집행과정 평가에 주력(모니터링, 외부평가, 종합평가, 컨설팅으로 구성) - 공통지표, 지역특화지표로 구성	- 외부평가위원회 - 자가진단, 지자체	매년, 2년 (종합평가)
지역 개발	성장촉진 지역개발	- 사업 단계별 평가(사전평가, 집행평가) - 모사업(개발사업), 기반시설사업 분리 평가	- 전문기관(국토연구원) - 국토교통부, 지자체	매년
	일반농산 어촌개발	- 투입요소에 근거, 실적-결과-효과 지표 구성 - 평가결과로 인센티브, 패널티 부여	- 시도 전문가 그룹 - 농식품부, 지자체	매년, 5년 (사후평가)
도시 개발	도시종합 개발	- 타당성 평가 중심(계획·사업타당성, 메타평가) - 목표 적절성, 내용 적합성, 절차 합리성 지표	행안부, 지자체	10년 (최종평가)
	가고 싶은 섬(시범)	- 사업 단위별 평가(총괄, 섬별, 사업별) - 사업 유형별 평가(하드·소프트·휴먼웨어)	- 평가위원단(실사) - 문체부	5년 (최종평가)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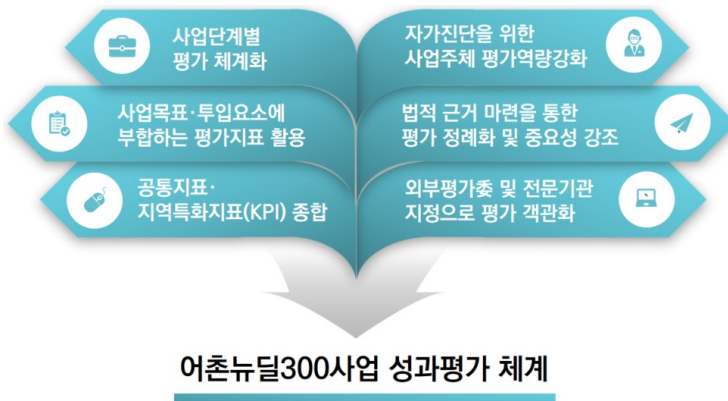
어촌뉴딜, 사업 단계를 고려한 평가체계 구성으로 효과적인 사업 운영·관리 지원 필요

■ 사업 단계별 평가방법 체계화는 평가의 효율성 및 결과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 평가 체계화의 일환으로서 주요 투입요소에 기반하여 산출, 결과, 파급효과 지표를 설정하는 지표 구성방법도 주요하게 참고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지표체계 구축은 사업의 목표와 실제 투입내용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사업 단계별 평가지표 구성을 공통지표와 지역특화지표인 KPI (Key Performance Index)로 이원화 하는 것도 사업·지역별 고유성을 반영한 어촌뉴딜 300 평가에 유용함
- 법적 근거 마련과 외부평가위원회·전문평가기관 구성 등으로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는 절차적 기반 마련 필요

그림 2. 유사 사례 분석의 주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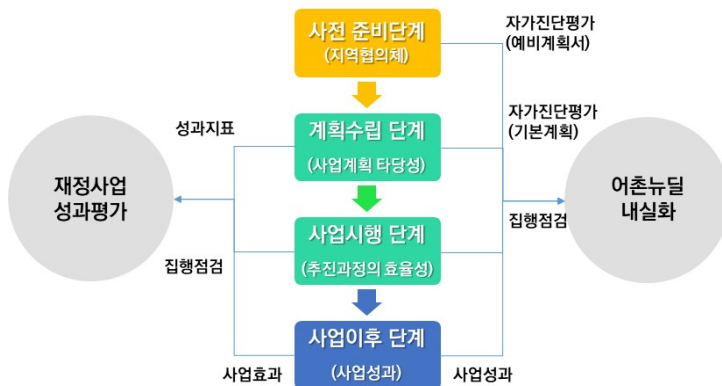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재정사업 평가와 어촌뉴딜 내실화 도모

- 단계별(사전 준비 → 계획수립 → 사업시행 → 사업이후) 성과평가 체계 추진
-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체계는 단계별 평가(① 사전 준비단계 → ② 계획수립 단계 → ③ 사업시행 단계 → ④ 사업이후 단계)를 기반으로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어촌뉴딜 300사업의 내실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체계로 추진되어야 함

- 어촌뉴딜 성과평가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도 핵심과제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사업 성과평가 지침에서 규정하는 계획, 시행,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와 핵심 성과지표(KPI)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 자체의 내실화를 위해 각 단계별 점검사항을 강화하고, 성과지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함

그림 3.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안)



자료: 저자 작성

■ 어촌뉴딜 핵심요소의 조기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 마련

- 지역협의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구조와 운영의 내실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협의체의 역할과 성과 여부를 기록하고, 그 결과가 예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인과관계가 정립되어야 함
- 어촌사회는 고령화와 지역전문가의 부족으로 공동체 역량기반이 취약해 어촌뉴딜을 준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교육 시행, ② 국내외 선진사례 견학 등, ③ 어촌뉴딜 공론화 과정 등 어업공동체가 지속적인 역량강화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예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철저한 자기진단평가(또는 사전점검평가)를 통해 공모 참여여부를 결정함으로 예비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① 주민주도로 사업계획안 마련 여부, ② 어촌뉴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간 정합성, ③ 예비사업계획의 사업타당성 등을 점검
 · 평가가 필요함

표 3. 사전 준비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지역 협의체	① 지역협의체 구성의 다양성 - 어촌계, 어촌주민 중심의 구성은 지양되어야 함 - 수협, 행정(시군, 읍면), 지역전문가(연구소, 대학), 관광업체 등	지역협의체 구성 시 구성원 및 전문성 ※ 적합 vs 부적합
	② 지역협의체 운영의 내실화 ②-1 지역협의체 회의(워크숍) 개최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자 / 참석자별 의견내용 / 결과 ②-2 지역협의체 운영 성과 - 지역협의체 운영과 예비계획 간 인과성(문제진단 및 사업발굴)	① 회의개최 여부 ※ 최저기준 ○회 이상 ② 결과보고서 첨부 ※ 첨부 vs 미첨부 ③ 결과보고서 첨부 ※ 적합 vs 부적합
	③ 예비사업계획의 사업타당성 - 지역현안과 문제진단의 정확성 - 사업별 타당성 검토 - 성과지표 적절성(어촌뉴딜 정합성, 산정방식 객관성/신뢰성)	① 현안 및 문제진단 ※ 적합 vs 부적합 ② 사업별 타당성 ※ 적합 vs 부적합 ③ 성과지표 적절성 ※ 적합 vs 부적합
공동체 역량 강화	① 어촌뉴딜 공론화 과정 - 어촌뉴딜 개념 / 정책목표 / 추진방식 / 기대효과	어촌뉴딜 공론화 ※ 시행 vs 미시행
	② 선진사례 견학 등 - 사업방향과 관련성이 높은 사례지역 방문 - 선진사례를 통한 시사점 및 사업방향 구체화 계획	조사 결과보고서 ※ 적합 vs 부적합
	③ 전문가 역량교육 시행 - 관련 전문가 섭외의 전문성 - 교육과정 내실화에 대한 점검	역량강화 교육 평가 ※ 최저기준 ○회 이상 ※ 적합 vs 부적합
예비 사업 계획	① 주민주도의 사업 참여 - 주민참여도를 점검 - 예비계획서에 주민의견 반영정도	① 주민참여도 ※ 적합 vs 부적합 ② 주민의견 반영도 ※ 적합 vs 부적합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예비사업 계획	② 어촌뉴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정합성 - 핵심 성과지표와 특화된 성과지표 마련 여부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 및 도입시설과의 정합성 - 성과지표 산정방식의 객관성 및 신뢰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 적합 vs 부적합
	③ 예비사업계획의 사업타당성 - 시설 및 사업구상의 적절성 / 실행가능성 / 이용규제 검토 - 시설규모 및 사업예산의 적정성 - 사업효과 기대효과	사업타당성 ※ 적합 vs 부적합

주: 자기진단평가는 정량적인 점수산정 방식이 아닌 모든 점검요소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자료: 저자 작성

■ 어촌뉴딜 사업추진의 시작점, 계획수립 단계 점검 · 평가의 강화

- 주민주도의 현안 발굴은 어촌뉴딜의 시작점이며, 동시에 사업추진의 배경과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는 기본요소로 ① 기존 활동조직 및 이해관계자 등 지역협의체의 역할과 성과, ② 행정 지원 및 협의체계 마련, ③ 여건에 맞는 지역현안 발굴 등의 핵심요소를 평가항목(안)으로 제시함
- 전문가 활용 체계 마련은 용역기관이나 전문가 참여와 역할이 형식적인 절차의 과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기진단평가와 어촌뉴딜 성과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이행 · 점검이 필요함
- 기본계획의 타당성은 어촌뉴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① 성과지표의 합리성(핵심 성과지표와 추진과제의 적절성), ②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 의견 피드백, ③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④ 타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제시함

표 4. 계획수립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주민 주도의 현안 발굴	① 기존 활동조직 및 이해관계자 ①-1 지역협의체 기능과 역할 - 지역협의체가 사업계획에 맞는 주체와 이해관계자 구성 여부 - 구성원 역할과 참여도 (어촌주민 참여도 최소 50% 이상) ①-2 지역협의체 운영 성과 -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한 성과 점검	① 지역협의체 역할 ※ 적합 vs 부적합 ② 지역협의체 성과 ※ 적합 vs 부적합
	② 행정 지원 및 협의체계 마련 - 어촌뉴딜에 대한 지자체 역할 및 지원 내용 (협의체 구성 /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성과 지원 등)	행정기관 지원 ※ 적합 vs 부적합
	③ 여건에 맞는 지역현안 발굴 - 현안 및 문제진단의 적절성 (생활 SOC 제고 / 소득 및 일자리 창출 / 관광 활성화 등)	현안/문제진단 적절성 ※ 적합 vs 부적합
전문가 활용 체계 마련	①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와 운영 - 전문가의 미스매칭 여부(사업내용 vs 전문가 전문분야) - 사업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지정 - 전문가 참여의 지속성	① 전문가 전문성 ※ 적합 vs 부적합 ② 전문가 참여도 ※ 최소 0명/0회 이상
	② 용역기관 전문성 - 사업계획(사업내용)에 충실한 용역기관 전문성 매칭 (지역재생, 어항분야 엔지니어링, 경관디자인, 관광 등)	용역기관 전문성 ※ 적합 vs 부적합
기본 계획 (설계) 타당성	① 합리적인 성과지표 - 성과지표 정합성(사업계획 목표 vs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어촌뉴딜 목표 부합 여부 - 성과지표의 정량화, 객관성, 신뢰성 확보	성과지표 합리성 ※ 적합 vs 부적합
	②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 의견 환류 - 전문가 의견의 반영의견 및 조치사항 명확성 - 기본계획 협의과정 전에 자문의견의 환류과정 완료 (전문가 의견 → 의견 조치 → 전문기관 점검평가 → 환류 → 반영예정 없이 완료)	자문의견 환류 ※ 적합 vs 부적합
	③ 기본계획의 적정성 - 시설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 실행가능성 / 법·규제 검토 - 시설규모 및 사업예산의 적정성 - 시설의 사업주체와 운영·관리 지속가능성 담보	기본계획의 적정성 ※ 적합 vs 부적합
	④ 타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권역 내 유효한 타 부처 계획의 제시 - 타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한 방안 제시 (단순하게 타 부처 계획의 나열은 지양)	타 부처 계획 연계성 ※ 적합 vs 부적합

주: 자기진단평가는 정량적인 점수산정 방식이 아닌 모든 점검요소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자료: 저자 작성

■ 어촌뉴딜 효율적 사업추진 점검·평가, 사업시행 단계

- 기본계획 또는 설계는 현장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이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대로 변경 없이 집행되거나 조정 시 변경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단계적 시행은 어촌뉴딜의 각 권역별, 지역별 예산집행이나 사업지에 대한 완공률 등 공정관리를 통해 행정적인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 어촌뉴딜을 통한 사업에서도 여객터미널, 화장실, 관광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조성되기 때문에 시설별 운영관리 주체가 가급적 지역의 어업공동체로 구성되고 있는지도 점검, 구체적인 운영방법, 운영관리 예산 마련 등 시설 운영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함

표 5. 사업시행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사업계획 조정 및 조율	① 시행과정 중 사업계획 변경 점검 - 사업계획대로 사업집행 여부 점검 평가 (전문기관 모니터링)	① 사업지 관리 ※ 적합 vs 부적합
	② 사업변경에 따른 협의과정 및 경과 - 사업변경에 따른 협의과정 이행 및 점검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	사업변경 협의 ※ 적합 vs 부적합
단계적 시행	① 예산집행 실적 - 예산집행 실적을 주기(월별, 분기별, 연차별) 점검	예산집행 모니터링 ※ 주기별 점검
	② 분기별 완공률 실적 - 사업공기에 따른 완공률을 분기별로 점검	완공률 모니터링 ※ 분기별 점검
사업주체와 지속가능성	① 시설별 운영·관리 주체의 명확성 - 운영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의 주체의 명확성 - 주체는 지역공동체로 중심으로 구성	시설 운영관리주체 ※ 적합 vs 부적합
	② 운영·관리의 지속가능성 - 시설 운영관리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운영관리 예산 등 지속가능성 담보	운영관리 지속성 ※ 적합 vs 부적합

자료: 저자 작성

■ 어촌뉴딜 정책목표 달성정도와 성과·효과 평가, 사업이후 단계

- 어촌뉴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수면과 강마을 지역재생에 대해 통합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공간위계별(개별 사업권역, 시군구, 시도, 전체), 사업목표(삶의 질 개선, 관광객 유입효과, 소득·일자리 창출 등)의 달성정도를 점검해야 함
- 어촌뉴딜의 사업효과는 크게 주요 성과지표(KPI) 변화의 측정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이원화하여 시행되어야 함
 - 핵심 공통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 점검·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함
 - 핵심 성과지표의 선정은 어촌뉴딜 정책을 상징적으로 함의하고, 도입사업, 추진방식 등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최대 3개 이내에서 검토가 필요함
 - 어촌뉴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부가가치, 고용, 생산유발)에 대한 분석을 지역단위,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표 6. 사업이후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어촌뉴딜 사업성과	① 사업유형별 성과 측정 - 국민휴양형, 해양레저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복합형	핵심 성과 측정 ※ 유형별 성과평가
	②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 - 공간위계별 사업목표 달성 이행·점검 (사업권역 / 시군구 / 시도별 / 전체 사업목표) - 어촌뉴딜 사업목표에 달성 점검·평가 (삶의 질 만족도 / 관광객 유입효과 / 소득·일자리 창출 등)	사업목표 달성 점검 ※ 사업목표/공간위계별
어촌뉴딜 사업효과	① 주요 성과지표(KPI) 효과 측정 - 핵심 공통 성과지표의 도출 - KPI 연차별 측정 (사업완료 이후 5년)	공통 KPI 모니터링 ※ 최소 3개 이상
	②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 - 부가가치 유발 효과 / 고용유발효과 / 생산유발효과	파급효과 모니터링 ※ 1차 사업완료 이후 (2022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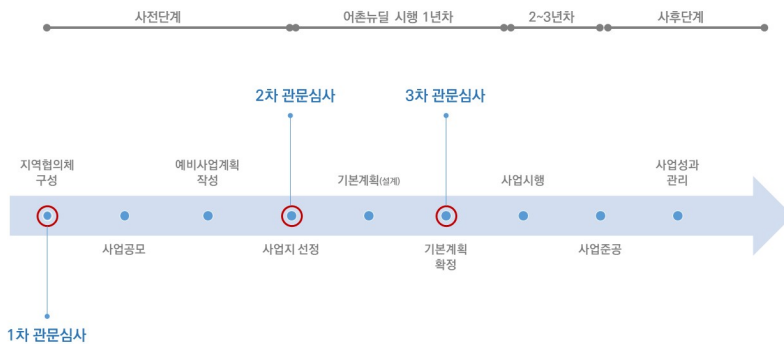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 관문심사(Gate Assessment) 및 자기진단평가 체계 도입

-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전준비·계획수립 단계는 관문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체크포인트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어촌뉴딜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사업지 선정과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음

그림 4. 어촌뉴딜 관문심사 제도 도입(안)



자료: 저자 작성

- 자기진단평가는 관문심사 시 해당 지자체와 지역협의체가 스스로 자기진단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이 점검·평가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자의성과 이해충돌 등을 최소화해야 함
 - 1차 공모사업의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어촌뉴딜 자기진단평가 체계(S.A.S : Self Assessment System)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어촌뉴딜 성과평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본 연구에서는 어촌뉴딜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와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어촌·어항법」 제47조의8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성과평가의 실시 근거,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표 7. 어촌뉴딜 성과평가의 근거규정 마련(안)

현행	개정안
신설 (어촌어항 재생사업 의 평가 및 전문기관 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업 완료 이후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저자 작성

■ 어촌뉴딜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업무는 현행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단을 기존 수행업무(한국어촌어항공단)와 별도로 분리하여 국·공립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성과평가 전문기관은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함
- 시·도연구원은 시도별 공모사업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전문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토록 함
- 성과평가 전문기관은 사업(예정)지 점검·평가에 대한 결과와 연차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함으로써 어촌뉴딜 정책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 어촌뉴딜 성과평가 관리시스템 도입

- 어촌뉴딜은 300개소가 2022년이 되면 공모, 사업계획 수립, 사업집행, 성과평가 등이 전국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다양한 주체의 니즈에 대응해 나가고, 어촌뉴딜에 대한 수요자 니즈분석, 평가시스템(조회, 입력, 환류 등), 정보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1) 지역밀착형 생활 SOC 정책의 대두

2019년 4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생활 SOC¹⁾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기간 시설이 아닌 국민생활 편의 증진시설로 기초 생활인프라 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보육, 의료복지, 공원시설, 안전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인프라를 의미한다. 현행의 생활 SOC 공급방식으로는 도시와 농어촌 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칸막이식 공급체계는 지역의 복합화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에 있다.

1) 생활 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

정부는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²⁾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분야에 국민의 삶의 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취약한 생활 SOC를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취약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재생, 일반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 취약지역, 농·산·어촌 등의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생활 SOC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2) 어촌뉴딜 국비지원사업 시행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일환으로 「어촌·어항법」 제46조의6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낙후된 어촌·어항의 지역재생을 위해 약 3조 원(70% 국비)의 재정을 투입하는 수산 분야의 대표적인 재정사업으로 부상하였다. 동 사업은 2019년 국비 1,728억 원을 투입하였고, 2020년 예산은 3,981억 원으로 전년대비 2,253억 원이 증액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어촌뉴딜은 지역재생을 통한 지역혁신의 개념이다. 특히 이 정책은 인구감소와 수산업 침체 등으로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데 있다. 어촌뉴딜은 단기간 내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1차 공모는 142개소 지자체(70개소 선정), 2차 공모는 250개소 지자체(100개소 선정)가 사업공모에 신청하여 지자체와 어촌사회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나타내고 있다.

2)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최저기준'으로 도출한 서비스 소외지역(서비스 사각·부족지역)을 우선 공급대상지역으로 검토

2. 연구 필요성

어촌뉴딜은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주도의 주민 상향식 개발체계로서 어촌분야에서 단기간 내에 3조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수산부의 대표적인 재정사업이다. 하지만 어촌뉴딜은 지역협의체를 통한 상향식 사업체계 등 어촌주민의 역량에 비해 어촌·어항재생의 사업목표와 추진체계의 이해 부족뿐만 아니라 사업규모에 대비한 정책성과에 대한 불투명 등 우려의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8조 및 제8조의2³⁾에 근거하여 정부의 각 부처는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지표와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의 자체평가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평가기관이 메타(상위)평가 방식⁴⁾으로 전환하여 평가대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기관의 재평가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재정규모, 사업 추진기간(2019~2027년), 사업규모(3조 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양수산부의 자율적인 재정사업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촌뉴딜은 생활 SOC의 큰 틀에서 긴급하게 마련된 정책으로 사업집행, 관리, 성과평가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사업진행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토대로 재정사업의 자율평가 강화와 생활 SOC의 8대 과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3)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4) 자율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반재정(기획재정부), R&D(과기통부), 지역발전(균형위) 성과 평가

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어촌·어항에 지역 혁신을 도모하는 어촌뉴딜 재정사업의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어촌뉴딜 사업공모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지역별 예비계획서, 승인된 기본계획 56건 등을 토대로 사전준비단계, 계획수립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이후단계 등 총 4단계의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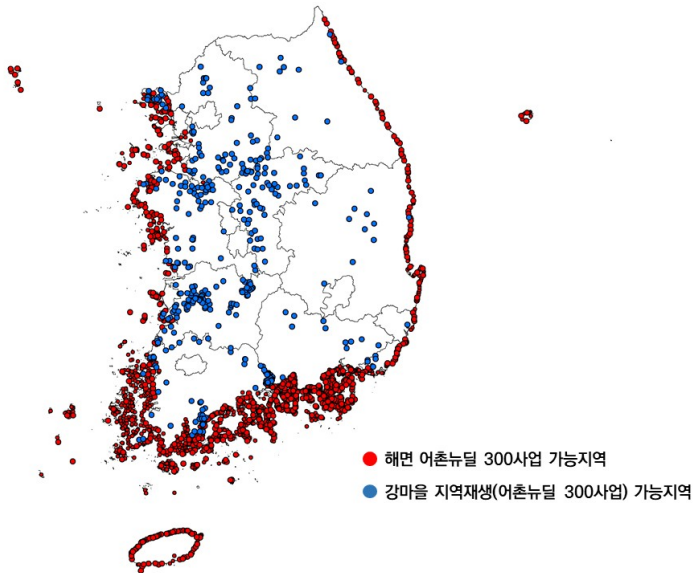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1)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가능한 대상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먼저 해면의 대상지역은 2,167개소 법정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과 그 배후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강마을은 「내수면어업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물 흐름 또는 수면과 그 일원의 어촌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그림 1-1〉 공간적 범위



자료: 저자 작성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낙후된 어촌의 생활 SOC를 현대화함으로써 지역재생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어촌개발 정책으로 동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로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개요로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수행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생활 SOC 정책동향과 1단계(2019~2021년) 어촌뉴딜 공모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56개소 사업권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은 어촌뉴딜과 유사한 도시, 농촌, 낙후지역의 지역재생과 관련한 정책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검토하였고, 각 정책별 성과평가 체계

상호 간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어촌뉴딜의 성과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4장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사전준비단계, 계획수립단계, 사업실행단계, 사후단계로 구분하고, 해당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모니터링 체계와 사업완료 이후 성과를 측정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평가 체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전담기관 마련, 어촌뉴딜 성과평가 관리시스템 도입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1) 개요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 현장조사, 실증분석, AHP 분석⁵⁾,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행되었다. 특히, 실증분석은 1단계 공모를 통해 추진되었던 70개소 사업권역 중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56개소와 1·2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업계획의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현안 발굴과 사업발굴 과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공모사업의 현장실사 등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항목과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AHP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5) 의사결정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중적인 경우, 이를 세부 요인으로 계층화하여 세부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등을 통해 세부 요인들을 순위화시키는 기법

〈그림 1-2〉 연구 수행방법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 방법

(1) 연구 수행방법

가. 문헌조사

본 연구는 국내외의 지역재생과 관련한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검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진이 검토하였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문화관광체육부의 '가고 싶은 섬 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는 방향성 설정에 많은 참조가 되었다.

나. 현장조사

어촌뉴딜 사업지의 현장조사는 현장평가, 어촌뉴딜 자문, 내수면 관련 연구 현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경기(화성), 충남(서산, 서천), 전북

(고창), 부산(기장, 해운대, 영도구), 경남(남해), 강원(동해, 고성) 충북 (제천) 등의 지역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자체, 어촌계, 어업인 등과 면담을 병행하였다.

〈그림 1-3〉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조사(경남 남해, 충북 제천)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자 : 2019.8.28. 2019.7.2.)

다. 실증분석

어촌뉴딜 1차 공모사업(70개소)을 통해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⁶⁾된 56개소를 해양수산부로부터 협조 받아 사업지역별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현안 진단 및 사업 발굴,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등을 살펴봄으로써 단계별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문제인식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라. AHP 분석

본 연구에서는 1차 공모사업 진단 및 평가, 유사 사례 성과평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단계별 성과평가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어촌

6) 사업계획 승인절차(2019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 ① 어촌뉴딜 지역협의체 확정(시군구) → ② 시행계획 협의(시군 → 시도 제출) → ③ 시도 의견 첨부(시군 → 해수부 제출) → ④ 어촌뉴딜 자문단 자문(해수부 내용 검토) → ⑤ 의견통보(해수부 → 시도, 승인 또는 미흡)

뉴딜 평가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 1-1>과 같이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 AHP 분석 조사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기관	연구진 자체조사		-
조사시기	2019. 9		7일
조사표본	어촌뉴딜 현장평가 평가위원 105명	- 수산어촌 지역경제 18명(17.2%) - 지역공동체 14명(13.3%) - 건축, 디자인 · 경관 19명(18.1%) - 도시계획, 향만기술 25명(23.8%) - 문화관광, 레저 29명(27.6%)	-
조사방식	전자우편을 통한 조사방식		-

자료: 저자 작성

마. 전문가 자문

본 연구는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과 협의를 통해 연구수행 방향과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전 논의가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도시재생 지역전문가, 내수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통해 연구 방향성 설정에 참고하였다.

(2) 연구 추진체계

이 연구는 3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어촌뉴딜 1차 공모사업 추진 실태와 유사사업의 성과평가 사례를 검토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행체계를 마련하였고, 그 내용은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연구수행 체계도



제 2 장

어촌뉴딜 300사업 현황 및 실태

제1절 생활 SOC 정책동향

1. 생활 SOC 3개년 계획

1) 추진배경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밀착형 생활SOC⁷⁾’개념을 도입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프라(생활SOC) 개념

생활SOC란 생활 사회간접자본으로 대규모 인프라(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의 기초시설과 문화, 체육, 교육, 의료, 복지, 공원 등의 삶의 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을 의미한다. 생활밀착형 사회

7) 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⁸⁾에서는 생활밀착형 SOC를 보육시설·의료시설, 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의 생활SOC는 넓은 범위에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의(衣)·식(食)·주(住) 해결과 자녀 및 노인을 부양하고,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삶의 터전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2) 배경 및 경과

생활SOC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성장위주의 기초인프라(SOC) 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수준에 도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초인프라 집중 투자지역 주변으로 인프라가 확충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약한 인프라 등으로 인하여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져 일부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중심으로 양적투자보다는 여가·안전 등 사회적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소외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8년 정부는 생활인프라 취약지역의 지역경제 침체 및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생활SOC 예산을 50% 이상 증액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생활SOC 정책협의회와 정책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생활SOC 추진단을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계획을 구축하였다.

8)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자 : 2019.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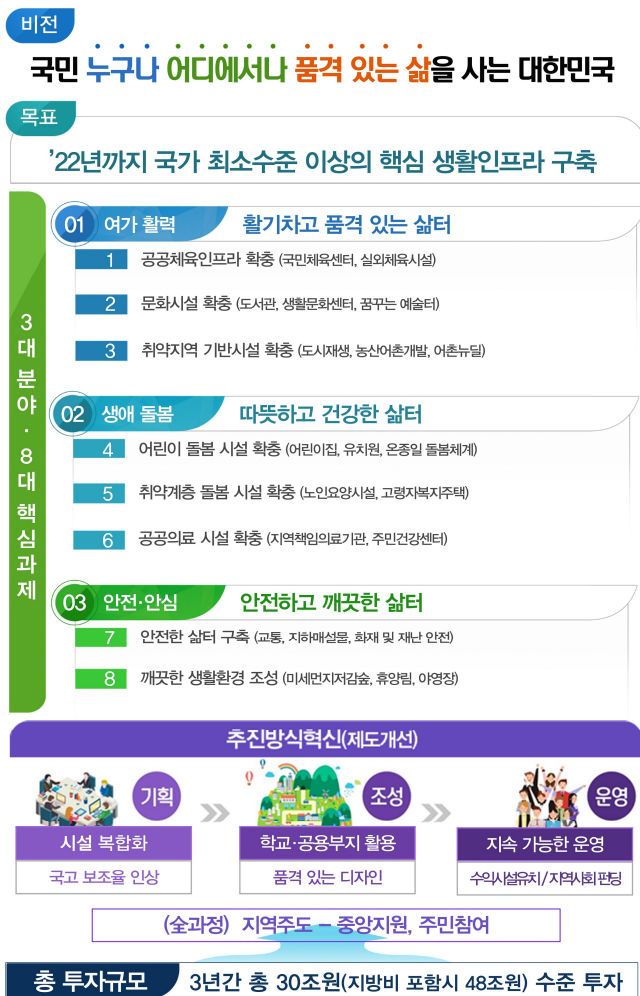
정책협의회와 생활SOC 추진단은 다양한 논의를 걸쳐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생활SOC 3개년 계획은 ‘국가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지역을 최소기준에 적용되도록 하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주체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 방식으로 수립되었다.

먼저, 생활SOC 3개년 계획은 국가최소수준(National Minimum)의 개념을 적용하여 국민체육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 시설을 구분하고,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최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역 및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계획의 추진방식은 기존 사업추진 방식의 한계로 인해 부처별 공급방식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복합화 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다부처의 범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생활SOC 3개년 계획의 대상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와 삶의 전제인 안전분야를 대상으로, 2018년 설정된 사업의 범주에서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사업은 제외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은 새롭게 추가하여 생활SOC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특히, 문화·체육·복지 등과 같이 생활부분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노인 및 아동 복지시설, 의료시설, 공원 등 핵심시설은 ‘생활SOC 국가최소기준’을 적용하여 서비스 소외지역을 우선순위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생활 안전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안전 분야도 생활SOC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정부는 생활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을 위해서 복합화, 국고보조율 조정 및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그림 2-1〉 생활SOC 3개년 계획



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 계획(안), p.6.

2) 추진내용

(1) 생활 SOC 비전과 목표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생활SOC 구축을 목표로 하였고,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생활SOC 계획의 비전은 계층에 관계없이 장애인을 포함하여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생활인프라를 누리고, 보육·문화·복지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SOC를 국가최소기준으로 공급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계획의 목표는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보육, 돌봄센터 등 핵심 인프라 시설을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에 맞추어 2022년까지 서비스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다.

(2) 주요사업

생활SOC 계획의 주요사업은 삶의 터전에 활력, 건강, 안전을 위한 3대 분야로 나누고, 공공체육시설, 생활문화시설, 취약지역 기반시설, 보육시설, 취약계층 돌봄시설, 공공의료시설, 교통·지하매설물·화재·재난 등 안전시설, 생활환경시설의 8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하여 체육관, 수영장 등의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거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에서 체육관은 5.5km(13분) 이내에 위치하고, 수영장은 9.1km (22분) 이내로 공급하였으나, 새로 발표된 국가최저기준은 체육관은 4km(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수영장은 6km

(15분)이내에 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체육관은 현재 963개소에서 1,400여개소로 공급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인프라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도서관, 문화예술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시설은 기존 노후하고, 단일화된 기능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융복합된 문화·교육시설로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국가최소기준에서 공공도서관은 과거 12분(5km)이내의 접근시간에서 10분(4km) 이내로 변경되었고, 현재 1,042개소에서 1,200여개까지 확대 추진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 공동화지역, 농촌·산촌·어촌 등의 취약지역은 도시재생뉴딜(국토교통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림축산식품부), 어촌뉴딜300사업(해양수산부) 등의 지역재생사업을 통해 취사·난방을 위한 에너지복지시설(LPG, 지역난방, 에너지자립 등), 보행안전시설, 정주여건개선시설,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등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림 2-2〉 생활SOC 3개년 계획(여가 활력 분야)



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계획안」, 2019,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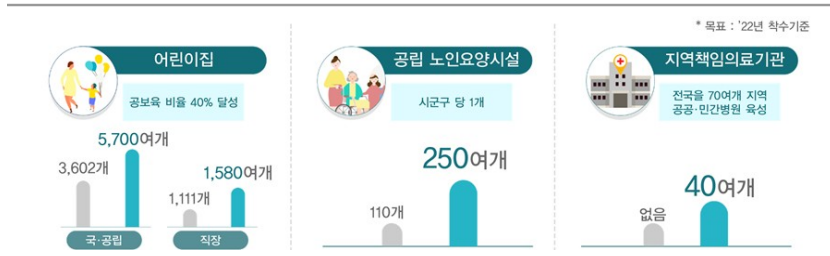
둘째로 유아·어린이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돌봄과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보육시설은 어린이 돌봄서비스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공적돌봄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으나, 도시와 지방간 격차가 있어 지역 간 균형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공립 교육시설을 기존 4,713개소(직장 포함)에서 7,280개소로 공보육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온종일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향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약계층 돌봄시설은 시·군·구당 1개소씩의 공립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현재 110개소에서 250여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간보호, 재활치료, 보건의료 등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의료시설은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대책으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육체적·정신적인 건강 증진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동 계획은 전국을 70여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40여개의 공공 및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는 현재 66개소에서 시·군·구당 평균 0.5개소로 110여개소까지 확충한다.

〈그림 2-3〉 생활SOC 3개년 계획(생애 돌봄 분야)



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계획안」, 2019, p.11.

마지막으로는 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81명으로 매우 높으며, OECD 상위 30%(2,000명)에 약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상위 3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개선되어야 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심지역에서 싱크홀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하매설배관 등의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화된 상수도관 등을 교체하고, 162개 시·군의 지하공간 통합공간지도를 구축하여 사고예방 및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제천화재, 밀양병원 화재 등과 같이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공공이용시설의 화재로 인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화재안전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우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대의 예방을 위해 192개소 취약지역에 대한 저류시설을 현재 47.4%에서 66.1%까지 높일 계획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게 위해서 미세먼지, 석면 슬레이트 등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계획과 캠핑 등의 여가·휴양문화 증가에 따라 국립공원 등 휴양림을 170개소에서 190개소로 확대하고, 숲속에 다양한 야영장을 조성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림 2-4〉 생활SOC 3개년 계획(안전·안심분야)



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계획안」, 2019, p.11..

2. 어촌뉴딜 300사업

1) 추진배경

여가문화 확산 및 해양레저·관광 수요의 증가는 어촌지역의 해양 관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광정책은 산, 둘레길, 자전거, 캠핑 등의 육상자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어촌은 바다, 섬 등 풍부한 자연환경과 해양레저, 수산 등의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한 잠재력이 풍부한 공간이나 기본적인 인프라 및 콘텐츠 부족으로 그 잠재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및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연안어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 정주환경 및 관광연계의 강화를 통해 어촌활성화 전략을 추진하여 어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2) 어촌뉴딜 300사업 개념 및 추진방안

‘어촌뉴딜 300사업’이란 우리나라 어촌지역을 활력 있고, 매력 있는 공간으로 재창출시키기 위해 300여 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 및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및 연안어촌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의 비전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 맞는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혁신 어촌 구현으로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어촌주민 삶의 질제고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9) 해양수산부, 「20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어촌뉴딜의 3대 추진방안은 어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가기 쉬운 어촌을 만들고,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찾아오고 싶은 어촌을 만들며,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조성하는 데 있다.

〈그림 2-5〉 어촌뉴딜 300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안



자료: 해양수산부, 「20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가이드라인」, 2019, p.4.

제2절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현황

1.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및 선정

1차 어촌뉴딜 300사업에 접수된 사업신청서는 총 143건이며, 충청 북도를 포함하여 12개 시·도에서 공모하였다. 어촌뉴딜의 공모는 예비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통해 상위 70개소의 사업지역을 선정하였고, 도서어촌이 30개소, 연안어촌 40개소가 선정되었다. 1차 70개소 가운데 여객선이 운행되는 소규모 항·포구는 24개소였다.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가 도서지역 및 어촌마을이 상대적으로 많아 어촌뉴딜 300사업에 많이 공모하였고, 부산, 울산, 경기 등 도시지역에서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어촌뉴딜 300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

단위: 건, %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신청	143	4	7	3	3	1	13	56	6	37	6	3	4
선정	70	1	5	1	1	-	6	26	5	15	5	2	3
(비중)	100	1.4	7.1	1.4	1.4		8.6	37.1	7.1	21.4	7.1	2.9	4.3
도서	30	-	4	-	-	-	3	12	4	5	1	-	1
연안	40	1	1	1	1	-	3	14	1	10	4	2	2
여객	24		1				2	11	3	6			1

자료: 관계부처합동, 「어촌뉴딜300 후속조치 추진방안」, 2019, p.7. 내용을 저자 재작성

어촌뉴딜 300사업은 〈표 2-2〉와 같이 5개의 사업유형으로 구분되고, 복합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해양레저형, 재생기반형 순으로 선정되었다. 입지유형별로 사업유형을 보면, 국민휴양형 및 복합형은 도서·연안지역에서 균등하게 선정되었으나, 수산특화형 및 해양레저형 사업유형은 연안지역에 더 치우쳐져 선정되었다.

〈표 2-2〉 어촌뉴딜 300사업 유형별 선정결과

단위: 개소, %

구분	국민휴양형	복합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해양레저형
합계	18	27	10	6	9
도서	9	14	3	2	2
연안	9	13	7	4	7

자료: 해양수산부, '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결과, 내용을 저자 재작성

어촌뉴딜 사업은 시군구의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입지유형별, 여객선 유무, 사업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 어촌뉴딜 70개소 선정 결과

시도	시군구	대상항	입지	여객	사업유형	사업명
인천	중구	소무의항 등	도서	무	수산특화형	어촌뉴딜300 "아름다운 어촌만들기" 사업
	옹진군	야달항	도서	무	복합형	야달항 무인도 체험관광개발
		답동항	도서	무	복합형	답동항 자연생태 탐조관광개발
		대이작항 등	도서	유	복합형	대소이작항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개발
	강화군	후포항	연안	무	재생기반형	후포항 밴댕이마을 조성사업
경기	화성시	백미항	연안	무	국민휴양형	화성시 해양생태휴양마을 조성사업
충남	당진시	난지도항 등	도서	유	국민휴양형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테마랜드 난지섬 만들기 사업
	보령시	효자도항	도서	유	국민휴양형	효자도 어촌뉴딜 300사업
	태안군	가의도북항	도서	무	국민휴양형	생태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서해관광 제1경의 가의도
		가경주항	연안	무	국민휴양형	패총과 문화가 있는 어촌민속마을 가경주
	서천군	송석항	연안	무	복합형	서천군 송석 해의 공동체마을
	서산군	중왕항	연안	무	수산특화형	서산시 중왕마을 어촌뉴딜 300사업

시도	시군구	대상항	업지	여객	사업유형	사업명
전북	군산시	명도항	도서	유	국민휴양형	명품 힐링섬 조성사업
		무녀2구항	도서	무	수산특화형	무녀2구항 가고 싶은 섬 조성 사업
	고창군	동호항	연안	유	복합형	동호 어촌뉴딜 300사업
	부안군	식도항	도서	유	수산특화형	맛과 정이 있는 밥섬어가
		대리항	도서	무	재생기반형	풍요로운 어항, 살고 싶은 대리
전남	강진군	서중항	연안	무	국민휴양형	서중마을 어촌뉴딜 300사업
	고흥군	선정항	연안	무	국민휴양형	남양 선정지구 어촌뉴딜 300 사업
		덕흥항	연안	무	복합형	동일 덕흥지구 어촌뉴딜300 사업
	광양시	와우포구 등	연안	무	해양레저형	중마 와우 길호포구 해양관광지 및 어항시설 조성
	목포시	달리도항 등	도서	유	복합형	달리도항/어망촌항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사업
	무안군	신월항	연안	유	재생기반형	안전하고 활력넘치는 어항만들기 사업
	보성군	상진항	연안	유	재생기반형	여자만 참갯벌로 다시 찾아오는 옷나루 상진항
		동율항	연안	무	수산특화형	청정바다의 먹거리와 득량만 해돋이, 녹차향이 어우러진 동율항
	순천시	화포항 등	연안	무	복합형	순천만 갯벌 어부십리길 조성 사업
	신안군	진리항	도서	유	해양레저형	해양관광 꾸러미 진리항
		하우리항	도서	무	복합형	민어와 툴립의 고향 임자도
		만재항	도서	유	복합형	만가지 재화가 가득한 만재도
		생김항	도서	무	복합형	천사대교와 새천년을 만들어갈 암태도
	여수시	안도항	도서	무	복합형	안도항 어촌뉴딜사업
		월호항	도서	유	복합형	월호항 어촌뉴딜사업
		죽포항	연안	무	국민휴양형	여수시 돌산읍 죽포항 어촌뉴딜 300

시도	시군구	대상항	입지	여객	사업유형	사업명
전남	영광군	송이도항	도서	유	국민휴양형	활기찬 어항, 어촌마을 공유 송이도
		법성항	연안	무	국민휴양형	천년의 역사 법성포항, 문화와 관광의 법성포 마을
	완도군	솔지항	도서	유	복합형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푸른마을 넓도
		가학항	도서	유	복합형	어촌마을 재생 일번지! 행복 가학마을
	장흥군	노력항	도서	유	국민휴양형	장흥군 회진면 어촌뉴딜300 사업
	진도군	창유항	도서	유	국민휴양형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관문 새섬 뉴딜 프로젝트
		송군항 등	연안	무	국민휴양형	한국 해양관광 보물섬! 지중해 stay 송군권역 뉴딜 프로젝트
	함평군	함평항 등	연안	무	복합형	함평군 어촌뉴딜300사업 (수산 특화자원기반으로 지속 성장하는 어촌생태계 구축사업)
	해남군	두모항	연안	무	수산특화형	현산 두모항 어촌뉴딜 300사업
		구성항	연안	무	수산특화형	화산 구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경남	거제시	이수도항	도서	유	국민휴양형	비상하는 학섬 이수도
		학동항	연안	무	국민휴양형	4계4색 힐링해변 학동
	고성군	입암항 등	연안	무	복합형	바다공룡과 함께 살아가는 6차 산업형 디노토리 테마항 조성
	남해군	동갈화항	연안	무	수산특화형	사계절 새우를 즐길 수 있는 보물섬의 표 어촌특화마을 갈화
		설리항	연안	무	해양레저형	해양레저를 통한 교류와 상생으로 발전하는 설리지구
	사천시	영북마을	연안	무	복합형	해양레저 관광활성화를 위한 영북개발
	창원시	명동항 등	연안	무	복합형	명품 어촌 빌리지 명동
		주도항	연안	무	재생기반형	창원시 주도지구 어촌뉴딜사업 (사계절 휴양, 아름다운 주도항)

시도	시군구	대상항 등	입지	여객	사업유형	사업명
	통영시	산등항 등	도서	유	복합형	육지면 산등/상리/하리 어촌뉴딜300사업
		진두항 등	도서	유	재생기반형	한산면 용초/진두/죽도 어촌뉴딜300사업
		가오치항	연안	유	복합형	도산면 가오치항 어촌뉴딜300사업
		연화항 등	도서	유	복합형	육지면 연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진촌항	도서	유	복합형	사량면 진촌항 어촌뉴딜300사업
	하동군	술상항	연안	무	수산특화형	수산특화 관광클러스터 한상차림 술상마을
		중평항	연안	무	해양레저형	바다에서 하늘까지 해양레저 중심 중평마을
부산	기장군	동암항 등	연안	무	복합형	바다위를 걷고 동암항을 맞보다
울산	동구	화암항 등	연안	무	수산특화형	방어진항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경북	포항시	신창2리항	연안	무	복합형	포항시 신창 플랫폼 조성사업
	울릉군	천부항	도서	무	해양레저형	오아시스 천부
	울진군	석호항	연안	무	해양레저형	울진군, 석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영덕군	석동항	연안	무	국민휴양형	가고싶고, 쉬고 싶고, 살고 싶은 석리마을
	경주시	수렴항	연안	무	복합형	되누리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즐거운 수렴마을
강원	동해시	어달항	연안	무	해양레저형	어달항 바다놀이터 어달 팡팡
	고성군	반암항	연안	무	해양레저형	반암항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제주	제주시	비양도항	도서	유	국민휴양형	천년의 섬 비양도 사계절 휴양림 조성사업
		함덕항	연안	무	복합형	국민 어울림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서귀포	하예항	연안	무	해양레저형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 300사업

자료: 해양수산부, '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선정결과, 내용을 저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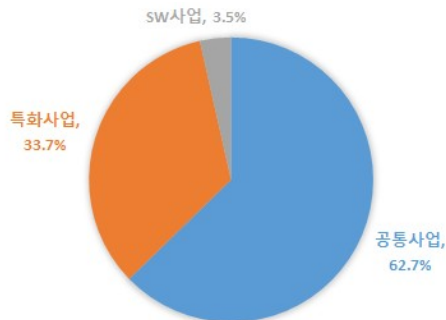
2.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현황

1) 기본계획 현황

어촌뉴딜 300사업은 공통사업으로 ①생활밀착형 SOC 정비사업, ②사업유형별 특성을 나타내는 특화사업, ③어촌지역의 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구분된다. 공통사업인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해상교통시설의 현대화를 목표로 접안, 안전,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 경관개선, 친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반면, 지역특화사업은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레저, 국민휴양, 수산특화, 재생기반에 기초하는 사업을 발굴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지자체 행정, 공공기관,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워크숍,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그림 2-6〉과 같이 어촌뉴딜 300사업의 사업내용별 예산비율을 보면, 생활SOC 개선 62.7%, 특화사업 33.7%, 소프트웨어 3.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어항기반 확충 등 어촌지역의 생활SOC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어촌뉴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어촌뉴딜의 사업내용별 예산비중



자료: 해양수산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 기본계획 협의요청서 56개를 토대로 저자 작성

(1) 공통사업

어촌뉴딜 300사업의 공통사업을 <표 2-4>와 같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 어촌의 안전한 삶, 깨끗한 주거환경, 생활편의시설, 어업환경정비, 어항시설정비, 방파제 정비, 기타 등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전체적으로 방파제 정비, 어항시설정비, 해상교통 시설정비 순으로 예산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사업은 도서지역의 인프라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안지역보다 높은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지역은 특히 방파제 정비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해상교통 시설정비, 어항시설정비도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도서지역에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안전시설 등의 사업수요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안어촌은 어항시설정비 사업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 방파제정비, 경관정비 등의 순으로 사업 수요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 2-4> 입지유형별 공통사업 인프라 투자 계획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사업대상	도서어촌	연안어촌
공통사업 소개	51.34	56.64	47.16
해상교통시설정비 (여객선 접안 등)	9.06	16.57	3.14
안전시설정비	1.62	0.45	2.55
경관환경개선	2.60	0.78	4.04
생활편의시설정비	0.56	0.13	0.90
어업환경정비	2.60	2.06	3.03
어항시설정비	13.82	9.18	17.49
방파제정비	17.19	26.37	9.96
기타	3.87	1.10	6.06

자료: 해양수산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 기본계획 협의요청서 56개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2-5〉와 같이 사업유형별로 공통사업을 살펴보면, 해양레저형 사업유형은 어항시설정비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해상교통시설정비 사업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화사업보다 공통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업환경정비 등의 수요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휴양형 사업유형은 방파제정비, 기타사업정비, 어항시설정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편의시설정비 수요가 낮게 나타났다.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복합형은 비슷한 사업 수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어항시설정비, 방파제정비, 해상교통시설정비 등의 수요가 높고, 안전시설, 생활편의 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2-5〉 사업유형별 공통사업 인프라 투자 비율

단위: %

구분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복합형
공통사업 소계	54.40	43.30	42.44	63.01	56.25
해상교통시설정비 (여객선 접안 등)	12.71	6.76	9.91	10.46	8.95
안전시설정비	-	1.74	-	1.22	2.91
경관환경개선	-	3.44	0.07	1.12	4.51
생활편의시설정비	2.67	0.22	-	1.79	0.06
어업환경정비	0.51	2.14	3.25	7.26	1.07
어항시설정비	37.05	6.79	14.96	19.77	10.57
방파제정비	-	12.92	13.49	16.83	26.71
기타	1.46	9.29	0.77	4.54	1.47

자료: 해양수산부,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협의요청서 56개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특화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특화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사업으로 사업유형과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유형에 맞추어 지역의 역량강화를 수행한다. 특화사업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생활인프라

개선사업과 관광인프라 개선사업으로 나뉘 수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 전체의 기본계획은 관광인프라 개발사업이 생활인프라 개선사업보다 약 두 배 높고, 도서어촌이나 연안어촌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2-6〉 입지유형별 특화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투자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사업대상	도서어촌	연안어촌
특화사업 소계	30.11	28.65	31.26
생활인프라 사업	10.79	10.06	11.37
관광인프라 사업	20.54	18.59	22.07
역량강화 소계	3.05	2.83	3.22
교육	1.44	1.42	1.46
컨설팅	0.76	0.61	0.89
홍보·마케팅	0.84	0.80	0.87

자료: 해양수산부,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협의요청서 56개를 토대로 저자 작성

사업유형별로 특화사업을 살펴보면, 해양레저형, 수산특화형, 복합형에서 관광인프라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휴양형과 재생기반형은 생활인프라 개선과 관광인프라 수요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사업유형별 특화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 투자비율

단위: %

구분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복합형
특화사업 소계	28.44	34.23	41.52	18.96	26.46
생활인프라 사업	4.13	16.90	12.53	9.25	7.39
관광인프라 사업	24.30	21.92	28.98	9.71	19.07
역량강화 소계	3.85	2.85	3.06	3.48	2.81
교육	1.15	1.32	1.00	1.68	1.45
컨설팅	1.64	0.85	1.12	0.50	0.56
홍보·마케팅	1.06	0.68	0.94	1.30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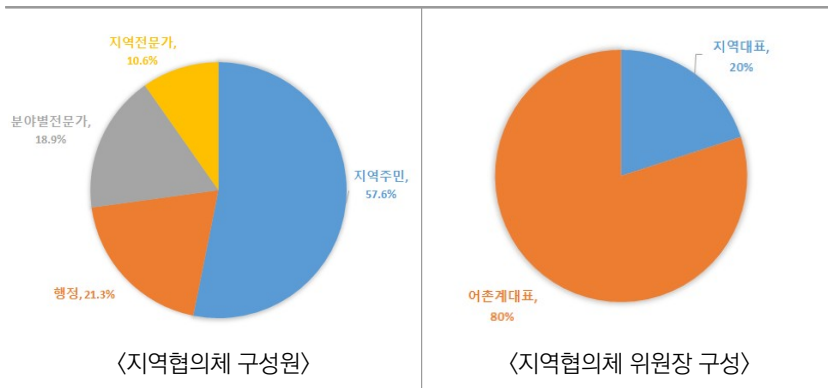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협의요청서 56개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지역협의체 구성 현황

지역협의체의 구성인원수는 평균 13.6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전문가 10.6%, 분야별 전문가 18.9%, 행정지원 21.3%, 지역주민 57.6%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협의체 위원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어촌계를 운영하고 대표하는 어촌계장이 위원장을 맡은 곳이 80%가 넘으며, 마을 이장, 통장 등 지역을 이끄는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곳은 20%이다. 지역협의체 위원장은 보통 마을대표와 지역의 행정지원 대표가 맡아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지역협의체 및 위원장 구성 비율



자료: 해양수산부,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협의요청서 56개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 3 장

유사 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검토

제1절 도시재생 성과평가

1.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1) 사업 개요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7년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도시재생 뉴딜의 형태로 확대·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만 균특회계에서 6,462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도시계획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¹⁰⁾으로,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의 주무부처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7월 뉴딜사업으로의 개편과 함께 지역별

10) 지역지원계정의 도시재생사업(전국, 세종), 지역자율계정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전국, 제주) 합계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도시경제 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된 사업유형을 2018년에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까지 총 5개 유형으로 다양화 하였다.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으로 세분화 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주도로 국가최소기준에 충족하는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과 청년일자리 확충 등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로드맵



자료: 관계부처합동,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18, p.10.

2) 평가 체계 및 방법

(1) 평가 체계

가. 기본 체계

도시재생사업은 차년도 사업전략의 개선·보완을 위해 매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평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한다. 계획상으로는 도시재생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으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성과관리 기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점검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표 3-1〉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근거

구분	주요 내용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근거 제시 -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제시	
근거	도시재생전략계획(제13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제24조)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평가·환류 및 점검계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조 또는 융자 규모·비율 차등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전략계획가이드라인(제10절) ①-⑤	도시재생활성화계획가이드라인 (제5절) ①-⑤

자료: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정보활용 방안 연구』, 2018, pp.26~27. 참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과평가는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종합 성과평가로 구성된다. 2017년까지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모니터링·사후평가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내용에 대한 관문심사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이후 제3차 관문심사와 추진실적평가를 사업 투입·성과지표 중심의 연차별 추진실적평가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림 3-2〉의 연차별 평가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종합 성과평가는 사업추진 4년차 이후부터 확인되는 효과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사업종료 후의 효과와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후평가 및 피드백에 해당한다.

〈그림 3-2〉 도시재생사업 평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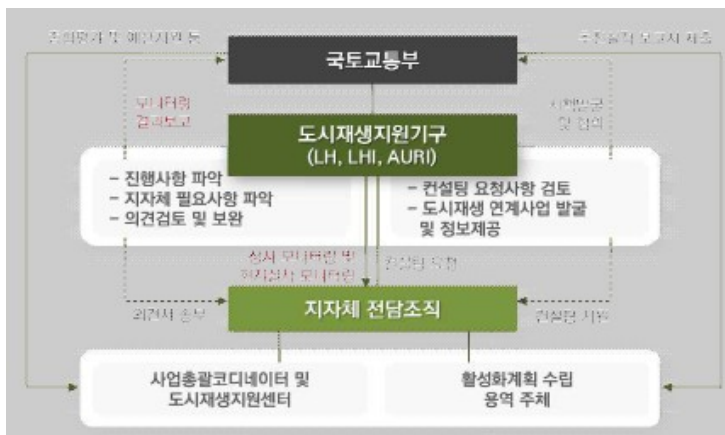
주: 붉은 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성과 평가 부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도시재생 뉴딜 분석」, 2018, p.90.

나. 평가 주체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정에 따르면,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자체 추진협의회(전담조직 중심)로 구성된다(〈그림 3-3〉 참조). 지자체 추진협의회로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지역별 도시재생 지원센터, 전문가·시민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하며, 사업의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관리한다. 광역자치단체는 매년 1월 각 지역의 추진협의회에서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지자체의 사업 관리에 필요한 전문역량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재생지원기구는 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추진실적보고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 평가결과, 도시재생지원기구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그림 3-3〉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평가 주체



자료: 서울연구원,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2017, p.33.

(2) 평가 방법

가. 주요 성과지표

정부는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비전으로 선포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4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목표에 근거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사업의 성과지표는 이러한 성과목표에 맞추어 5개의 주요 산출지표와 2개의 결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표 3-2〉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산출 지표	지역 혁신거점 조성 진행	250곳 이상('18~'22년) (복합기능 혁신공간 연평균 30여곳, 지역특화 사업 연평균 20여곳)
	국도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250개 이상('22년)
	도시재생대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200개 이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300곳 이상) 설치
	공공임대상가 공급	연 평균 20여곳('18~'22년)
	내몰림 예상지역의 상생계획 수립, 공공 임대상가 공급	100여곳 이상('22년)
결과 지표	전국 쇠퇴지역	65.9%('16년) → 63%('27년)
	저층 주거지의 거주가구 주거만족도 제고	67%('16년) → 75% 이상('22년)

자료: 관계부처 합동,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2018), 「도시재생 뉴딜 분석」, 2018, p.58에서 재인용

나. 연차별 평가지표

도시재생사업의 연차별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개발한 모니터링 지표의 변화수준을 분석·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지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계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지역 및 사업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된다.

먼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제24조)은 사업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사업평가 지표를 제안하고 있다(〈표 3-3〉 참조). 주요 평가요인은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 문화적 재생, 선도거점 재생, 도시환경 재생 등 5개 영역의 13개 목표지표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표는 평가단계상 연차별 추진실적평가에 활용되며,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입 수준, 목표달성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제13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5개 영역에 대한 주요

평가지표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세부평가항목은 빈점포 활용 신규 창업수, 주요지점 지가 및 임대료, 주택 개·보수 건수 등 구체성이 비교적 높은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3〉 세부 사업평가 지표 가이드라인

평가요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핵심성과	세부평가항목	목표지표	
사회적 재생	주민의식	자치조직 가입률, 상인회 회원수 및 만족도	거주민 만족도	장소성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협의체의 구성 여부, 주민회의 회수 및 참여자		복지 서비스
	사회적 자본	범죄건수, 인적자원 활용 정도		접근성
	복지	기초생활 수급자수	주민회의수	
	-	-	주민회의 참여자수	
경제적 재생	산업·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수익 구조	기초생활 수급자수	
		공가수, 빈점포수	주요지점 지가	
		주요지점 지가 및 임대료	창조사업 투자액	
문화적 재생	창조사업 관련	창조사업 투자액	지역적 특성 만족도	
	지역 특성	지역적 특성 만족도	일자리 창출수	
선도거점 재생	상권 활성화	빈점포 활용 신규 창업수	주요지점 통행량	
	가로 활성화	주요지점 통행량	주거환경 만족도	
도시환경 재생	주거환경 개선	주택 개·보수 건수, 신규 주택수	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 수	
	상가환경 개선	상가신축 및 리모델링 수		
	가로환경 개선	가로환경 만족도		

자료: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정보활용 방안 연구』, 2018, pp.26~27. 참고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각 사업지는 지역 및 사업특성에 적합한 모니터링·성과지표를 직접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가령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거지구 지표 24개, 상가지구 지표 20개로

구성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표 3-4〉 참조). 세부지표는 인문·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표 점검은 설문조사, 현장 실제계측, 현장 연구진의 계측조사, 현장탐문 및 관계자 인터뷰 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표 3-4〉 전주TB의 사업 모니터링 지표

구분	인문·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주거지구 모니터링 평가지표	· 주민모임·조직·활동 참여여부 및 정도 · 상주인구수 · 마을개선 참여의향정도 · 지역자력에 대한 주민의식변화 · 전문가(센터)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 · 동네협의회에 대한 만족도	· 공시지가 · 가구별 월소득 · 주민공동사업창업건수 · 종사자수 · 주민공동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 주민공동사업에 대한 투자액	· 공가 및 폐가 호수 · 주택신축 및 개량 건수 · 과소필지, 미이용토지 면적 · 접도율, 도로율, 녹지수 · 주차장 면적·공원 · 주거환경 만족도 · 생활안전시설 설치 수 ·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수 · 공공디자인 투자액
상가지구 모니터링 평가지표	· 지구내협동사업수 · 지구활동 조직수 · 정보확산사업 참여 상가민수 · 상가주민주최 지구 행사수 · 문화체험시설 · 테마조성사업수 · 정보확산사업수	· 주요 지점 보행통행량 · 영업매출(점포당) · 영업 점포수 · 공모사업 유치수 · 공실 점포수 · 공실활용창업 · 상가주민 상권 만족도 · 이용자 만족도	· 공용시설 · 보행전용가로 · 이벤트 공간 · 협조적 동등개발 · 정보거점설치

자료: 토지구획연구,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정보활용 방안 연구』, 2018, p.53.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니터링·평가지표도 전주와 같이 주거지구, 상가지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표 3-5〉 참조). 반면 세부영역은 전주와 달리 사회, 경제, 문화, 물리적 측면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표 3-5〉 창원TB의 사업 모니터링 지표

구분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물리적 측면
주거지구 모니터링 평가지표	• 기초생활 • 수급자수 • 거주민 거주 • 만족도	• 주민공동사업 창업 및 일자리창출건수 • 주민공동사업으로 인한 종사자수	• 공공디자인 투자액 • 지역적 특성 만족도	• 공시지가 • 신축, 개량 주택 수 • 재생사업의 주거환경 • 개선에 미친 영향 • 주요지점 통행량
상가지구 모니터링 평가지표	• 상인 만족도	• 빈 점포 수 • 창업점포 수	• 창조사업 투자액 • 창조사업 투자건수 • 방문객 만족도 (장소성, 매력도, 정체성 관련)	• 주요지점 지가 건축물 신축, 리모델링, 철거 건수 • 가로환경 만족도 • 주요지점 통행량 • 주요지점 통행차량

자료: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정보활용 방안 연구』, 2018, p.54.

사후평가에 해당하는 종합성과평가는 효과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의 목표달성도와 파급효과를 평가한다. 목표달성도는 사업별 성과관리 방안에 제시된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를, 기타 파급효과는 성과관리 방안에는 없으나 사업이 창출한 경제·사회·물리적 개선정도를 평가한다. 효과지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나, 토지주택연구원(2018)은 지역개발 영향평가 지표로서 부(Wealth)의 변화, 고용, 생산성, 부가가치 수준 등을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 사업 개요

서울시는 성숙한 도시문화와 주민참여에 기반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문제를 다루는 전 세계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도시를

개발의 대상에서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활력 있는 도시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주목한다. 이에 따라 저성장 완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신성장 동력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시 내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서울형 도시재생은 법정 도시재생으로서 제도적 기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0년 로드맵을 설정하고, 사업추진을 도입기-성숙기-정착기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3-4〉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유형



*활성화지역 외는 시비, 부처 협력 등을 활용한 보편적 지원

자료: 서울도시재생포털(검색일: 2019.9.25)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도시재생 대상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정의하고, 해당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등 사업유형을 도시재생 뉴딜과 동일하게 구분하였으나, 지금은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을 일자리거점 육성형, 생활중심지 특화형, 주거지 재생형으로 새롭게 분류하고 있다. 더불어 소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한 거점 확산형을 추가하여 혁신거점 공간 중심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그림 3-4〉 참조).

2018년 기준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지역은 유형별로 <표 3-6>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사업지 수는 법정 활성화계획으로 진행된 29개소를 포함하여 총 132개소이다.

<표 3-6> 서울형 도시재생 현황

서울형 분류	법적 유형		관련법	개소수
일자리거점 육성형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생활중심지 특화형	근린 재생형	중심시가지형		9
주거지 재생형		일반근린형		11
		주거지지원형		3
		우리동네살리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6
	도시활력증진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1
	새마을사업			2
거점확산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비법정	12
	골목길재생사업			2
합 계	-		-	132

자료: 서울특별시, 「2025 서울시도시재생 전략계획」, 2018, p.88.

2) 평가 체계 및 방법

(1) 평가 체계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수행지역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도시재생 효과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해 자가진단과 외부평가로 구성된 모니터링·평가를 진행한다. <그림 3-5>를 기준으로 모니터링은 ①재생주체의 자력재생역량 육성을 목표로 하는 자가진단, ②재생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추진과정 모니터링, ③활성화정도를 관찰하는 성과(변화) 모니터링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평가는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①재생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외부 평가,

②시사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종합 평가, ③종합평가 결과를 사업주체에 환류하는 컨설팅으로 구성된다.

〈그림 3-5〉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 구성체계



자료: 서울연구원,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2017, p.35.

(2) 평가 방법

가. 추진과정 모니터링

추진과정 모니터링은 중심지는 3년, 주거지는 2년 시점을 기준으로 면담 및 현장조사, 설문조사로 진행한다. 먼저, 면담 및 현장조사 내용은 서울시와 광역센터에서 조사하는 공통항목과 자치구 및 현장센터에서 조사하는 특화항목으로 구성된다(〈표 3-7〉 참조).

공통항목으로는 거버넌스 형성·운영사항, 시·구 협력정도, 주민·상인의 재생사업 참여도, 마중물예산 등의 집행실적을 조사한다. 반면 특화항목은 재생사업 유형별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체 및 종사자수, 유동인구 등 정량적 변화추이, 상권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거버넌스 강화 등 정성적 추진성과 등이다. 임대료, 지가변화 수준 등을 포함하여 추진과정 모니터링에 필요한 DB는 1년 단위로 집계한다.

〈표 3-7〉 추진과정 모니터링 지표 예시

공통 항목		특화 항목(자가진단)		
구분	항목(안)	목표	기본방향	핵심지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 형	• 유동인구 변화 • 상가 업체수 변화 • (산업별) 사업체수 변화 • (연령별) 종사자수 변화	경제적 활력창출	고용기반 구축	• 신규사업체수
			창업 생태계 육성	• 창업공간활용 사업 체 수
일반근린형	• 임대료 변화 • 인구특성 변화(주민등록) • 접도율 등 생활환경 개선 정도 • 주민활동공간, 공동이용 시설 개소수 증가 • 주민조직 활성화 정도 • 집수리, 증개축, 신축, 소 규모 정비사업 실행사례	문화· 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명소 구현	• 문화시설수
			생활 인프라 확충	• 지역주민생활만족 도 • (행복지수) • 여성·청소년 복지 시설수
		물리적 환경개선	지역 통합 · 연계	• 보행환경 만족도
			도시환경 정비	• 공원, 오픈스페이스 확충 면적

자료: 서울특별시, 「2025 서울시도시재생 전략계획」, 2018, pp.291~292.

나. 성과관리 모니터링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과관리 모니터링은 29개의 공통지표와 별도의 지역 KPI(Key Performance Index)를 통해 진행된다. 공통지표는 모든 활성화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용지표와 사업유형 별에 따라 상이한 유형별 적용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공통지표는 지역거주만족도 변화, 유동인구변화 등 도시재생 수행으로 기대되는 일반적인 성과 등을 포함한다. 반면 지역 KPI는 지역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사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해당 지표로는 지역별 재생 목표 달성여부를 관찰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3-8〉은 공통지표 중 모든 사업에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용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관리 지표의 유형은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정성·정량지표와 단기·중장기 지표로 분류된다. 정량 지표 모니터링은 행정통계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정성지표는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또한 단기지표와 유사한 개념의 우선진단지표는 유동인구, 상권, 거래, 가격 변동 등 변동성이 높은 지표를 의미하며, 중장기 진단지표는 사업시행 안정기 이후의 자력재생 단계에 적절한 모니터링 지표를 담고 있다.

〈표 3-8〉 성과(변화) 모니터링 공통지표

목표	시기	지 표	세부항목	조사방법
함께 잘살고 (6)	우선 진단	상권활성화정도	•상권역동성(창폐업률) •영업기간 중위수	통계자료
		유동인구	•대중교통 이용자수 •시간대별 승하차패턴	통계자료
		앵커시설방문객수	-	현장조사
	중장기 진단	인구·가구 구조	•연령별 인구수 •가구원수별 가구수 •점유형태별 가구수	통계자료
		순인구이동률	-	통계자료
		주택거래	•㎡당 주택실거래가격 •주택 실거래 건 수	통계자료
함께 행복 하고 (6)	우선 진단	건축물변경(개량) 사항	-	통계자료
		기초생활인프라수	•주차장, 공원, 공공체육시설 •보육시설, 도서관(작은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현장조사
		지역거주(생활) 만족도	-	설문조사
		앵커시설조성수	-	현장조사
	중장기 진단	앵커시설이용도	-	설문조사
		신축 허가건축물 수	-	통계자료

목표	시기	지 표	세부항목	조사방법
함께 만드는 (6)	우선 진단	공동체활동참여도	• 주민설명회 참여자 수 • 공동체 프로그램 수 •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자 수 •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자 수	현장조사
		추진조직역량	• 주민협의체 회원 수 • 지역주민 · 상인 조직 수 • 활동가(코디네이터)수	현장조사
		공동체활동만족도	-	설문조사
		도시재생사업참여도	• 주민공모사업 수 • 소식지 등 홍보수단 확보 수 • 지역축제 수	현장조사
	중장기 진단	사회적경제조직수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현장조사
		지역사회소속감	-	설문조사

자료: 서울연구원,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 평가체계」, 2017, p.62.

다. 종합평가

〈표 3-9〉 종합평가 항목

모니터링 항목		고려사항	
자가진단	추진조직 구축여부	• 주민협의체 구성원수, 운영회수 •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수, 상근직 비율	
	교육 및 홍보 시행현황	• 교육회수, 지역 내 거주자 수 대비 참가자비율 • 홍보회수, (소식지, SNS 등)홍보수단 확보수	
	지역자체 도시재생 운영체계 구축정도	• 관 지원 종료 후, 지역주도 자력재생가능성 판단 • 추진조직 운영현황, 주민공모사업 제안건수 · 참여도	
	KPI 변화정도	• 도시재생 수행 전의 최초값 대비 현재값	
자가진단	KPI 달성정도	• KPI 최종 목표값 대비 현재값	
	성과지표 및 KPI 외 영역의 변화정도	• 도시재생 수행 전의 기타지표 최초값 대비 현재값	
추진 과정 모니 터링	주민 상인 의견	참여정도	• 인지도, 참여도, 체감도 중심
		변화인식정도	• 설문조사 1부에 해당하는 주민 · 상인 의견수렴 결과값
		자력재생기대정도	• 현장인터뷰 및 통합워크숍 내용

모니터링 항목			고려사항
추진 과정 모니 터링	활성화 사업	사업의 타당성	• 활성화계획(안) 작성 시 고려된 활성화사업 수립 근거
		사업의 실현가능성	• 현장인터뷰 내용
		사업수행여부	• 자가진단에서 기록한 활성화사업 실시현황
		사업수행정도	• 현장인터뷰 및 통합워크숍 내용
	활성화 사업 변경시	변경사유	
		기존 계획에 미치는 영향	• 자가진단에서 기록한 활성화사업 수정사항
		변경내용의 실현가능성	• 현장인터뷰 및 통합워크숍 내용
성과관리 모니터링		공통지표 변화정도	• 지표정의서에 근거하여 산출된 결과값
		변화가 발생한 원인	• 유의미한 변화가 모니터링에서 관찰된 경우, 그 변화와 도시재생 간의 연관성 분석
		변화가 없는 원인	• 도시재생을 지속 수행하였음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원인 분석
		공통지표 간 상관관계	• 공통지표 결과값 분석을 통해 지표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 유무 검토

자료: 서울연구원,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 평가체계」, 2017, p.83.

종합평가는 자가진단, 추진과정 모니터링, 성과관리 모니터링 시기가 겹치는 2년마다 수행된다. 종합평가의 목적은 지역 · 사업 간 비교가 아니라 각 사업의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종합평가는 아래 <표 3-9>의 항목을 주로 참고하되,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 · 활용되고 있다.

제2절 지역개발 성과평가

1.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1) 사업 개요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사업의 주안점은 성장촉진지역 내 대규모 SOC 사업위주에서 탈피하고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H/W, S/W 용·복합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데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도 칭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한다. 특히,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 지역과 그 인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사업 선정은 기반시설과 문화컨텐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2) 평가체계 및 방법

(1) 평가체계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는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사전평가와 집행 평가로 구성된다. 사전평가는 실현가능성 검증과 기반시설 사업타당

성 평가를, 집행평가에서는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와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를 실시한다(국토교통부, 2014). 사전평가는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하고, 집행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 실시 이후 국토부에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표 3-10〉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요

구분	사전평가		집행평가	
	실행가능성 검증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
중점 평가	입지 적합성 및 계획 충실성 등	모사업의 진척도 및 사업의 적절성 등	집행실적 및 착수 사업 비중	집행 실적 및 사업 관리역량
평가 대상	개발계획 및 지구에 포함된 모든 사업	총사업비 100억 이상 500억 미만 기반시설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산업	국토부 소관 국비지원 사업
평가 시기	개발계획 및 지구 승인(변경) 신청시	신규사업예산 의견제출 전(2~5월)	당해연도 집행완료 후 (3~7월)	당해연도 집행완료 후 (3~7월)
평가 주기	개발계획 및 지구 승인(변경) 신청시	신규사업예산 신청시	매년 (단, 개발계획 승인 2년 후부터 시행)	매년
평가 활용	사업 제척 및 조정	사업 착수시기 연기 및 규모 조정	사업 조정 등	사업 조정 및 컨설팅 제공
평가 주체	국토부 (국토연 위탁)	국토부 (국토연 위탁)	지자체 · 국토부 (지자체 자체평가 → 서면심사 · 현지심사 → 평가결과 확정 → 평가결과 통보)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2014, p.115.

(2) 평가방법

가. 개발계획 사전 · 사후 평가

① 실행가능성 검증

사전평가에 해당하는 실행가능성 검증은 사업추진 필수요건을 우선적으로 진단하는 PASS/FAIL 방식으로 검증이 진행되며 모두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된 평가지표를 적용한다(〈표 3-11〉 참조).

평가방법으로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 특정지역 개발계획안,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안, 신발전지역 등에 포함된 모든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유형별, 시행자별로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병행한다.

〈표 3-11〉 개발계획안 실현가능성 검증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시행자별 적용여부		
			지자체	민간 등	지자체 민간공동
기본평가	입지적합성	입지적합성	○	○	○
	정책부합성	정책목적과의 부합성	○	○	○
모사업 (개발사업)	계획 충실성	사업의 구체성	○	○	○
		관계 기관 협의의견 반영정도	○	○	○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여부	○	○	○
	사업추진 가능성	토지 확보 용이성	○	○	○
		관계 부처 소관 종합계획 반영 여부	○	-	-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	○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	○	○
	수요확보 가능성	이용객 및 입주 수요 확보 가능성	○	○	○
		지역 내 유사시설 개발·운영 현황	○	○	○
	사업적정성	총사업비 산정규모 및 산정내역의 적정성	○	○	○
		국비 기투자 및 관련 예산 확보 여부	○	-	○
		지방비 확보 가능성	○	-	○
		재원조달 현실성	-	○	○
기반시설 사업	사업공공성	기반시설사업의 필요성	○	○	○
	연결성 및 중복성	타 기반시설과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	○	○
		인접한 유사 기반시설과의 중복성	○	○	○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2014, pp.104~105.

② 집행결과 평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등에 포함된 모든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 승인 후 2년이 경과한 개발계획에 한하여 실시한다. 예산 집행실적 및 착수사업 비중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자율적인 내부통제 유도를 위해 일차적으로 지자체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국토교통부가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재검토한다.

〈표 3-12〉 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기준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시행자별 적용여부			평가내용
			지자체	민간 등	지자체 민간 공동	
계획 추진도	예산 대비 집행액	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	○	○	○	총예산현액 대비 총집행액을 산출하여 계획추진 정도를 평가
	목표 사업 대비 착수 사업 비중	목표 착수사업 대비 실제 착수 사업 비중	○	○	○	목표착수사업 대비 실제 착수사업 비중을 산출하여 계획추진 정도를 평가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2014, p.111.

나. 기반시설사업 사전·사후 평가

① 사업타당성 평가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 특정지역 개발계획안,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안 등에 포함된 국비지원 기반시설사업이 대상이고,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반시설사업에 한정된다. 사업유형별, 시행자별로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병행한다. 모사업과 연계된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모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도로사업의 착수 시기 및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단계적 평가를 시행한다.

〈표 3-13〉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시행자별 적용여부		
			지자체	민간등	지자체 민간공동
모사업 (1단계)	모사업 진척 정도	사업시행자의 선정 및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	○
		사업시행자 투자의향	-	○	○
		토지 확보 용이성	○	○	○
		관련 부처 소관 종합계획에의 반영 여부	○	-	○
	재원 조달 가능성	국비 및 지방비 확보율	○	-	○
		재정건전성	○	-	-
		사업시행자의 부채비율	-	○	○
		사업시행자의 신용등급	-	○	○
기반시설 사업 (2단계)	사업 적절성	유발교통수요의 충분성	○	○	○
		시설규모의 적절성	○	○	○
		국고지원 비용 적절성	○	○	○

주: 2단계 평가의 경우, 배점 없이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 등을 조정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2014, p.107.

② 집행결과 평가

기반시설사업의 집행결과는 예산 집행률, 사업관리 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은 진행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안, 특정지역 개발계획안,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안 등에 포함된 국비지원 기반시설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국토교통부가 서면심사 및 현지심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표 3-14〉 기반시설사업 집행결과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재정조달 및 집행실적	예산집행률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을 평가
	사업공정률	계획 대비 공정진행정도	계획 대비 공정진행 정도를 평가
	지방비 확보율*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	지방비 투입 목표액 대비 실제 매칭액을 평가
	민간투자액 확보율**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	민간투자액 확보계획 대비 실제 확보액을 평가
사업관리 역량	추진조직 및 관리 역량	사업추진 전담체계 구축 여부 및 운영역량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
		자체 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량	주기적 점검시스템 운용을 통해 지속 적으로 사업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판단
	갈등대처 역량	민원 등 대응, 조치여부	민원 등 대응, 조치 여부를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판단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노력 여부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노력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판단
		부진 시 만회노력	부진사업에 대한 만회 노력을 파악하여 지자체의 갈등대처 역량을 판단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2014, p.113.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 사업 개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인구유지 및 특화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중 하나로, 읍·면지역을 포함한 농촌 시·군 중 특수상황지역을 제외한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조 2,4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읍·면소재지 대상 중심지 정비 569개소, 마을·권역 대상 1,344개소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표 3-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개요

사업유형			총사업비	사업기간
농촌중심지활성화			(통합지구) 120억 원 이하 (선도지구) 80억 원 이하 (일반지구) 80억 원 이하	5년 이내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 단위	종합개발	10억 원 이하	5년 이내
		공동문화 · 복지	5억 원 이하	5년 이내
		경제 (체험 · 소득)	(체험) 5억 원 이하 (소득) 2억 원 이하 - 체험, 소득 중 1개만 선택 가능 - 국비 56%, 지방비 24%, 자부담 20% (사업부지는 100% 자부담)	5년 이내
		환경 (경관 · 생태)	5억 원 이하	5년 이내
		신규마을	1.5억~36억 원 이내 (사업규모에 따라 호당 0.3억~0.4억 원 차등 지원)	5년 이내
	권역단위	종합개발	40억 원 이내	5년 이내
	산림휴양치유마을 (산림청)		(기반) 5억 원 이하 (종합) 10억 원 이하	5년 이내
시 · 군 역량	시 · 군 단위	시 · 군 창의	10억 원 이하	5년 이내
		시 · 군 역량강화	2.5억 원 이하(0.5억 원 단위 신청)	1년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실소요액	1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2017, p.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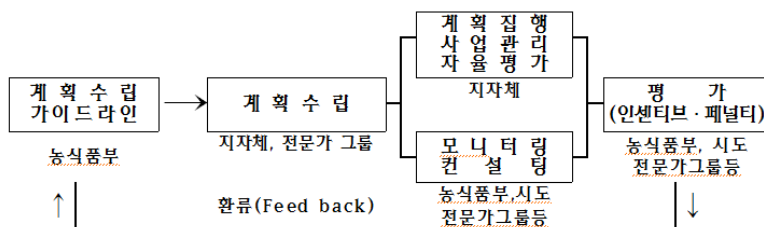
또한 농·산·어촌 활용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역개발 기획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을 구축하여 사업관련 정보를 체계화하고 있다¹¹⁾.

11)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검색일자 : 2019.9.25)

2) 평가체계 및 방법

사업평가는 사업집행 단계의 자율평가, 모니터링·컨설팅 내용을 활용한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전문가 그룹의 집행결과 평가로 진행된다.

〈그림 3-6〉 사업추진체계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요」, 2018,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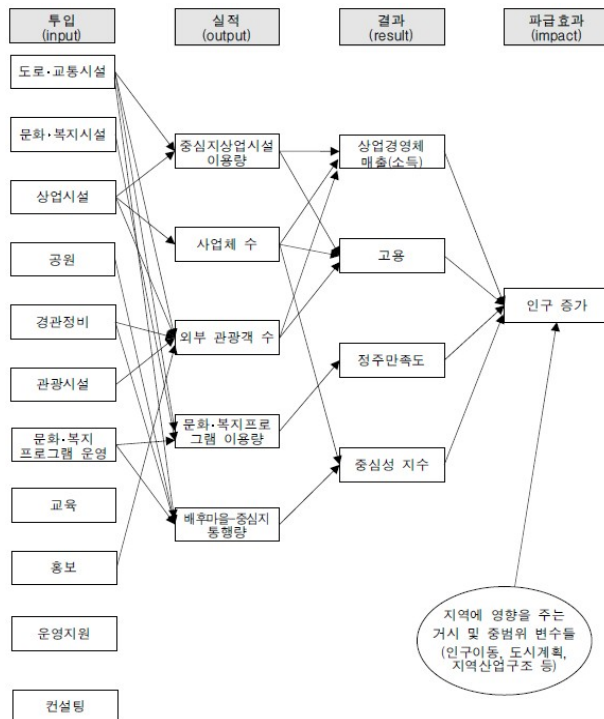
모니터링은 포괄보조금 제도로써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모니터링의 기초자료는 성과목표, 사업진행 상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으로 확보한다. 1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기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미흡한 사업지는 상시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한다.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및 현장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산출(Output)지표, 결과(Result)지표, 파급효과(Impact)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산출지표는 정책단위의 활동과 집행에 따른 생산물을 나타내며, 공공지출과 관련하여 획득된 모든 것을 산출로 평가한다. 결과지표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에 대한 즉시적인 이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혜자들에게 발생한 변화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파급효과는 수혜자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넘어서 정책의 결과를 나타

내는 지표로 중장기적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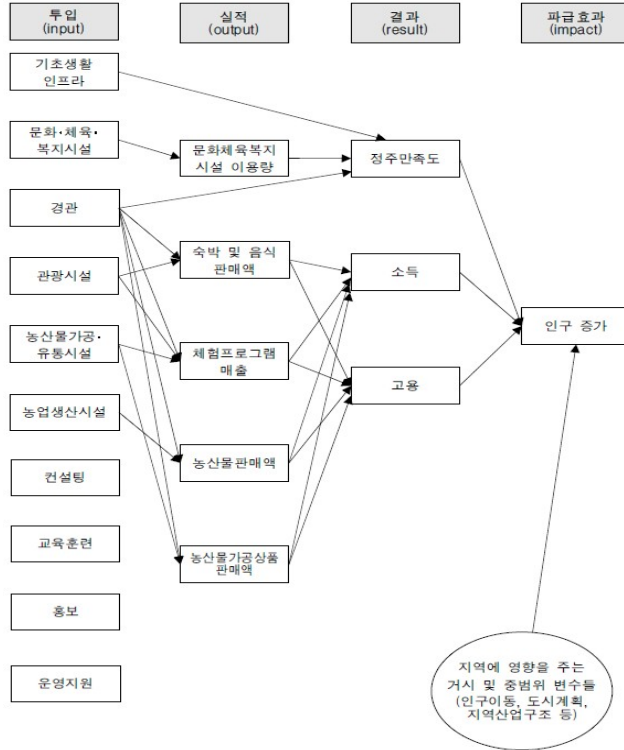
가령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경우, 투입요소를 10개로 나누고 각 투입요소에 해당하는 실적지표, 결과지표, 파급효과지표를 연계·활용하고 있다(〈그림3-7〉 참조). 반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주요 투입요소에 농산물 가공·유통 및 생산시설이 포함되는 등 중심지활성화사업의 평가지표와 상이하게 구성된다(〈그림 3-8〉 참조). 이에 따라 실적지표와 결과지표 또한 다르게 도출되나, 파급효과 지표는 지역발전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동일하게 인구 증가 수준을 활용한다.

〈그림 3-7〉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평가지표 구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2017, p.71.

〈그림 3-8〉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2017, p.80.

제3절 도서개발 성과평가

1. 도서종합개발사업

1) 사업 개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생활·소득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은 10개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며, 관계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

안전부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1차 계획은 1988~1997년, 2차 계획은 1998~2007년, 3차 계획은 2008~2017년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2018~2027년에 해당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에 따르면, 개발대상도서는 372개 도서로 특수상황지역 186개소와 성장촉진지역 186개를 포함한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는 3조 1천여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제4차에서는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1,256개 사업에 1조 5,1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2016).

〈표 3-16〉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 도서지역 분류

단위: 개소

시도	특수상황지역(행정자치부 소관)		성장촉진지역(국토교통부 소관)	
	해당 시 군	도서수	해당 시 군	도서수
인천	중구, 서구, 강화, 옹진	32	-	-
경기	안산, 화성	4	-	-
충남	보령, 서산, 홍성, 당진	21	서천, 태안	3
전북	군산시	16	고창, 부안	7
전남	목포, 여수, 무안	48	고흥, 보성, 강진 해남, 영광, 완도, 진도, 신안	168
경북	-	-	울릉	2
경남	창원, 통영, 사천, 거제	57	고성, 남해, 하동	6
제주	제주, 서귀포	8	-	-
합계	19개 시군	186개 섬	17개 시군	186개 섬

자료: 행정자치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안)」, 2016, p.28.

2) 평가체계 및 방법

(1)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국회예산정책처(2009)에 따르면, 과거 제1~2차 도서종합개발사업 평가는 주민 설문조사, 담당공무원 인터뷰, 통계자료 조사 등의 방법

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3-17〉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주민설문 대상지역

분야	배포 수량	회수 분	회수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0	134	67.0%
전라도 신안군	400	228	27.0
경상남도 거제시	200	193	9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효과성 측정에 관한 연구』, 2009, p. 16.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효과성 평가지표는 산출목표 달성도, 도서기반시설 개선정도, 결과목표 달성도로 구분된다. 먼저, 산출목표 달성도는 생활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환경위생·생활안전시설 분야의 사전계획 대비 집행실적 수준으로 측정한다. 도서기반시설 개선정도는 사업 전·후의 상수도보급률, 도로포장률 등의 증감수준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표 3-18〉 산출목표 달성 및 기반시설 개선 지표

분야	세부내용	산출목표 달성도	기반시설 개선(증감) 수준
생활기반 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도로시설 등	• 투자실적/ 투자계획*100	• 상수도보급률 • 도로포장률
생산기반시설	여항시설, 소득증대시설, 저장시설 등	• 투자실적/ 투자계획*100	• 방파제확충률 • 선착장확충률
문화 복지 · 환경위생 · 생활안전시설	환경 · 위생시설, 의료 · 복지시설 등	• 투자실적/ 투자계획*100	• 하수도보급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효과성 측정에 관한 연구』, 2009, p. 18.

사업의 결과목표 달성도는 성과 및 파급효과 지표로 평가한다. 해당 지표로는 주민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주민의식 변화 등 5개 영역의 변화 수준을 활용한다(〈표 3-19〉참조). 주민소득 및 의식변화, 삶의 질 등 사업결과에 대한 주민의 체감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병행하며, 인구·경제수준 변화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정량지표로 측정한다.

〈표 3-19〉 결과목표 달성도 측정 지표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가방법	조사방법
주민소득 증대 정도	• 가계소득 변화 정도 • 지역소득 변화 정도	• 사업 전후의 가계(지역)소득 변화를 측정	통계자료, 설문조사, 인터뷰
삶의 질 향상 정도	•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에 의식 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 관광객의 변화 정도 등	• 관광객 수, 관광수입액의 변화를 측정	통계자료
인구의 변화 정도	• 인구 증감률	• 사업 전후의 인구변화를 측정(전입과 전출)	통계자료
주민의식 변화 정도	• 거주 의사 정도	• 지속적인 거주 의사의 변화를 측정	설문조사, 인터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효과성 측정에 관한 연구』, 2009, pp.9~20.

(2)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제3차 도서개발사업부터는 10년 단위로 추진되는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정 주기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도서환경변화를 사업 집행에 반영하였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2008년에 수립된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지역정책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14년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중간평가의 주요 목적은 도로, 어항시설 등 시설물 확보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특산물 가공공장 등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생적 도서발전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2010년 광특회계 도입에 따른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변화 등 새로운 도서개발 사업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표 3-20〉 도서기반시설 개선정도 측정 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항목
사업 목표 적절성	• 사업추진근거와 필요성 • 사업목표와 비전의 수립 •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목표 달성	• 일자리창출, 관광객증대, 주민소득증대 • 문화복지향유, 주민 삶의 질 향상, 행복증진 • 지역공동체활성화 • 편의시설확보, 주민복지 증진
사업 내용 적합성	• 상위계획 및 지역발전정책 내용 (국정지표 등)과의 부합성 • 타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관련 사업과의 수평적 연계성 • 세부추진계획(사업대상, 대상자의 규모, 예산, 추진일정 등)의 작성여부 및 적합성	• 균특법, 보조금법 의거 지원가능한 사업 • 상위계획과 부합 • 지역발전정책 및 국정지표와 부합 •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사업 절차 합리성	• 계획수립시 주민여론 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조사 등 절차적 합리성 • 지역사회 조사 반영 여부 • 계획수립 과정의 주민참여 수준 • 주민 요구 반영 수준	• 주민여론 수렴, 지역수요 반영 • 사전조사 실시 • 주민참여 • 관계부처 협의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3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08-’17) 계획 변경(안) 타당성 검토」, 2014, p.78.

제3차 도서종합개발 계획 변경(안) 평가는 계획타당성평가, 사업타당성평가, 메타평가 등 정책평가이론 및 국내외 평가관련 문헌검토를 통해 평가체계를 구성하고 평가하였다.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는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도서개발 사업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2. 도서특성화사업: 가고 싶은 섬 사업

1) 사업 개요

섬 관광자원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2011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사업은 섬 관광개발의 효과적인 모델 도출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낙후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섬의 관광 환경, 지역 환경, 정책 환경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여 섬의 관광·정주여건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였다. 현재는 전라남도에서 해당 사업의 주요 특성을 이어받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체적인 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지역은 보령시 외연도, 완도군 청산도, 신안군 홍도, 통영시 매물도 등 4개 섬으로, 4개 사업지에 총 456억 원이 투입되었다. 90개의 세부사업들은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휴먼웨어 사업, 기타 사업 유형으로 분류하여 추진하였다. 사업의 추진주체는 중앙 정부 주도 하에 지자체, 지역주민, 협의체, 중앙 자문단, 사업 시행업체 등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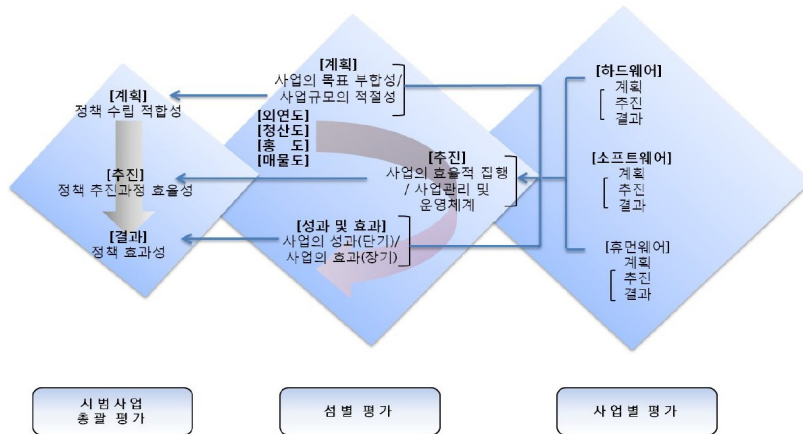
2) 평가체계 및 방법

(1) 평가체계

시범사업의 평가체계는 4개의 섬 지역에 대한 세부 단위사업 간의 유기성, 연계성을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평가절차는 크게 3개 부문으로 구분된다(〈그림 3-9〉 참조). 첫 번째, 사업총괄평가에서는 평가체계설정 단계로 평가의 방향 및 방법 등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섬별 평가에서는 각 섬의 해당 지자체의 자체평가로 사업 추진 조사표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현장평

가와 서면평가를 통해 각 사업의 단계와 유형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 개별사업을 활용하였다.

〈그림 3-9〉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평가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최종평가」, 2011, p.95.

첫째, 총괄평가는 기존의 정책평가 및 사업평가 요소를 기초로 시범사업의 총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였다. 시범사업은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수립 적정성, 정책추진과정의 효율성,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둘째, 섬별 평가는 각 섬이 전체 사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수준을 평가하고, 섬의 정체성 강화 관점에서 고유성, 매력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사업의 한계사항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 과정에 관한 성공적인 사례 및 요인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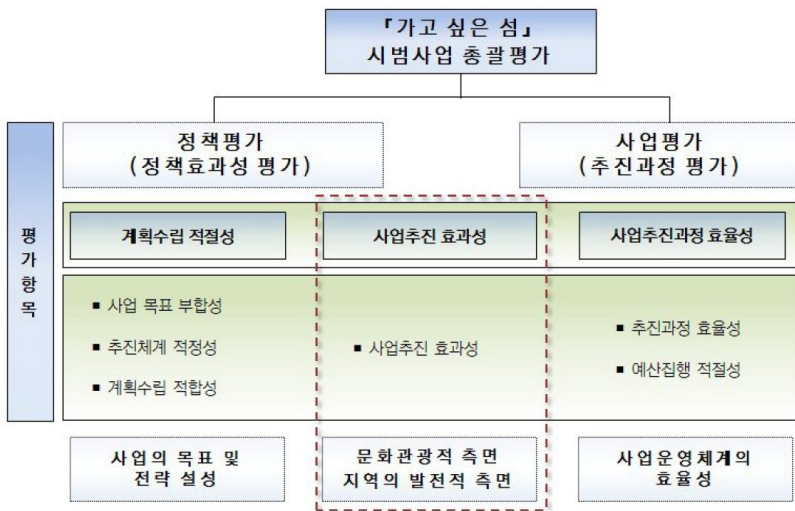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업별 평가에서는 각 개별 사업이 적절한 규모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구분된 세부사업유형에 따라 각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다.

(2) 평가 방법

가. 총괄평가

총괄평가는 <그림 3-10>과 같이 사업의 계획-추진-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계획 수립이 적합하였는지, 사업 추진과정이 효율적이었는지, 사업추진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평가자료는 사업목표의 특성상 사업종료 직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구축하였다. 또한 관광객 증가수준, 지역발전 및 관광효과 등 섬별 평가 및 세부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총괄 평가에 활용하였다.

〈그림 3-10〉 총괄평가 항목 구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최종평가」, 2011, p.102.

나. 섬별 평가

섬별 평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사업 추진과 목표와의 정합성, 둘째는 사업 추진과정의 한계 및 성공 요인과 영향,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의 추진결과 및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이다 (〈표 3-21〉 참조). 평가는 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용하되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서면평가는 각 섬에서 작성한 자체평가서와 사업추진내용 조사표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정량평가를 통해 각 지표별 달성 수준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성평가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성공추진요인 등 비가시적인 내용을 증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사업성과는 관광객 수의 증가, 관련 사업 활성화 등 경제적 수치 외에 사업의 수혜자인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섬의 매력성, 사업을 통해 섬에 가져온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표 3-21〉 섬별 평가항목 구성

단계	평가항목		정성평가	정량평가	평가주체
계획	사업목표의 부합성		•구체적 부적합 사업 적시	•부합성 5점 척도	•평가위원회
	사업규모의 적절성		•개발타당성, 수급분석을 통한 시설규모 적정성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횟수 5점 척도	•평가위원회
추진	사업의 효율적 집행		•추진체계 내 역할 변화 계기	•계획반영 5점 척도	•평가위원회
			•사업집행 지연 사유	•예산집행실적	•평가위원회
	사업관리 및 운영체계		•주체간 의견수렴 여부	•공청회, 설명회 개최 실적 •주민만족도 설문	•지자체 •설문조사
			•모니터링, 환류 사례	•실무노력 5점 척도	•평가위원회
결과	성과 (단기)	경제	• -	•관광객수 변화 •민박·음식점수 변화	•지자체

단계	평가항목	정성평가	정량평가	평가주체
결과	특성화	• 섬 매력성을 반영한 사업 선정	• 섬 고유 문화관광원 사업 개발 건수	• 평가위원회 • 지자체
	정주성	-	• 5년간 인구이동 • 만족도 조사	• 지자체 • 설문조사
	정체성	• 사업을 통한 정체성 강화 요인	• 만족도 조사	• 평가위원회 • 설문조사
	효과 (정기)	애향심 -	• 애향심 향상 수준	• 설문조사
	영향	•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	• 지자체 • 평가위원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최종평가」, 2011, pp.106~107.

다. 세부사업별 평가

개별 사업평가는 각 섬에서 작성한 사업추진 실태조사와 평가위원회의 현장실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사72업 추진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의 집행성과, 구체적 사업내용, 사업의 진행과정, 사업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지표들의 내용변화를 확인하였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 유형 중 유사한 사업끼리 묶어 사업 추진과정 및 우수사업과 부진사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하드웨어 사업에서는 경관 및 건축 관리, 정주인프라, 관광인프라 등 3가지 유형을, 소프트웨어 사업은 섬 문화 콘텐츠 개발, 홍보 마케팅, 방문객 수용태세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휴먼웨어 사업의 경우는 지역 핵심역량 강화, 지역주민 참여 사업 등 2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사업 선정에는 사업추진실태조사의 사업결과내용이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평가위원단과의 현장실사를 통해 대표사업들의 추진과정과 애로사항, 우수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제4절 성과평가 체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분야별 성과평가 체계 비교

앞서 살펴보았던 성과평가 사례들은 사업단계에 따라 평가요소를 차별적으로 구성한 평가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과 유사한 도시재생·지역개발·도서개발 분야의 사업평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업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사업별로 상이하지만 각 평가체계에서 규정하는 사업 단계에 따라 평가지표와 방법, 주체 등 세부 구성요소를 다르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재생 분야의 사업에서 사업단계에 따른 평가체계 구분이 가장 구체적으로 도출·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도시재생 분야의 사업들이 유관 특별법 및 상위계획을 통해 평가요소 및 방안을 비교적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개발 분야의 사업은 평가결과에 근거한 인센티브·패널티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사업효과성 제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국토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를 위탁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일관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관리가 취약하고, 단계별 사업평가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지역개발 분야 사업평가의 한계로 남는다.

도서개발 사업의 평가체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평가·관

리 부분이 비교적 취약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1988년부터 지금까지 4차에 이르는 10년 단위 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평가내용은 사업관리 및 사후평가보다는 사전 타당성 검토에 치중되어 있다. 물론, 해당 사업이 인프라 설치를 중심으로 한 도서지역의 전반적인 정부여건 개선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평가 및 사업종료 직후의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이번 제4차 계획에서만 1,256개 사업에 1조 5,132억 원의 재정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등 사업규모와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후평가 및 피드백 과정의 부족은 평가체계의 한계로 지적된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가고 싶은 섬』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사업단위 및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된 반면, 시범사업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이 단절된 관계로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다소 낮은 실정이다.

〈표 3-22〉 분야별 평가체계 비교

분야	사업명	평가체계	평가주체	시기
도시 재생	도시 재생	• 사업 단계별 평가(준비-계획-집행-관리) • 지자체 TB별 자체 모니터링 지표 활용 • (가이드라인 준용)	• 도시재생지원기구 • 국토교통부, 지자체	매년, 4년 (종합평가)
	서울형 도시재생	• 사업 집행과정 평가에 주력(모니터링, 외부평가, 종합평가, 컨설팅으로 구성) • 공통지표, 지역특화지표로 구성	• 외부평가위원회 • 자가진단, 지자체	매년, 2년 (종합평가)
지역 개발	성장촉진 지역개발	• 사업 단계별 평가(사전평가, 집행평가) • 모사업(개발사업), 기반시설사업 분리 평가	• 전문기관(국토연구) • 국토교통부, 지자체	매년
	일반농산 어촌개발	• 투입요소에 근거, 실적-결과-효과 지표 구성 • 평가결과로 인센티브, 패널리 부여	• 시도 전문가 그룹 • 농식품부, 지자체	매년, 5년 (사후평가)
도서 개발	도서종합 개발	• 타당성 평가 중심(계획·사업타당성, 메타평가) • 목표 적절성, 내용 적합성, 절차 합리성 지표	• 행안부, 지자체	10년 (최종평가)
	가고 싶은 섬(시범)	• 사업 단위별 평가(총괄, 섬별, 사업별) • 사업 유형별 평가(하드·소프트·휴먼웨어)	• 평가위원단(실사) • 문체부	5년 (최종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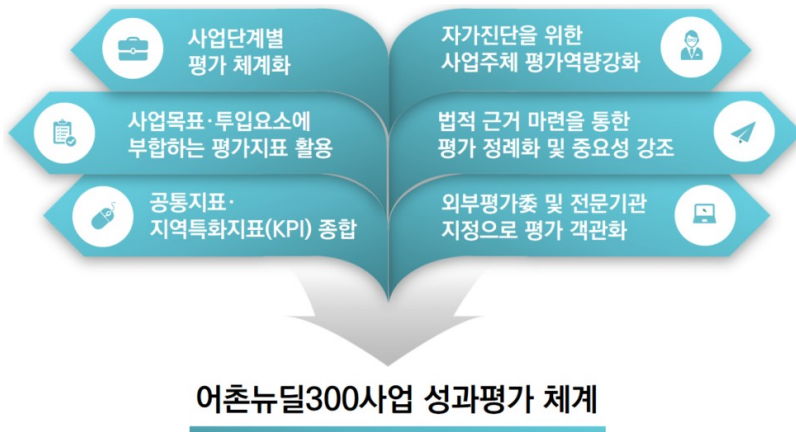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시사점

사업단계별 평가방법 체계화는 평가의 효율성 및 결과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에서도 단계별 평가체계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사업운영·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평가 체계화의 일환으로서 주요 투입요소에 기반하여 산출, 결과, 파급효과 지표를 설정하는 지표 구성방법도 주요하게 참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표체계 구축은 사업의 목표와 실제 투입내용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가지표 구성을 공통 지표와 지역특화지표인 KPI(Key Performance Index)로 이원화 하는 것도 사업별·지역별 고유성을 반영한 어촌뉴딜 300사업 평가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림 3-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가체계 운영에는 법적 근거 마련과 외부평가위원회·전문평가기관 구성 등으로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는 절차적 기반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1> 유사 사례 분석의 주요 시사점



자료: 저자 작성

제 4 장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체계

제1절 어촌뉴딜 성과평가 개요

1. 재정사업의 평가 체계

한국사회는 지난 60년 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고령사회 진입과 초저출산 문제, 경제성장 장기 둔화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뿐만 아니라 책임성 강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재정성과 관리제도는 크게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3가지로 구성¹²⁾되며, 재정사업의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원종학·봉재연·박은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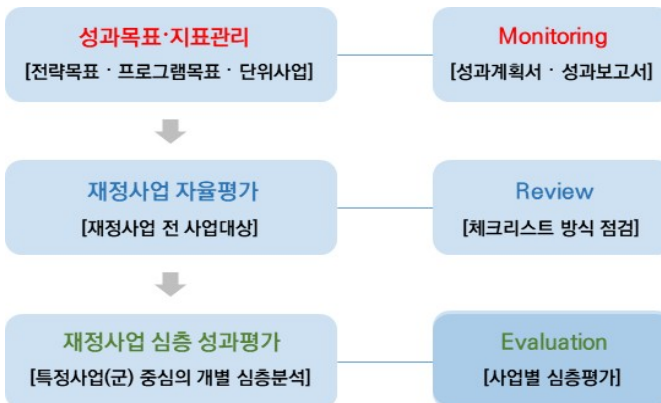
〈표 4-1〉 재정성과 평가의 법적근거

법률	세부내용
국가재정법 제8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19.9.19)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에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행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에서부터 부처별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리뷰 단계, 기획재정부가 특정 개별사업의 심층분석을 평가하는 단계로 세분화된다.

〈그림 4-1〉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자료: 원종학 · 봉재연 · 박은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22

1)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1) 개요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즉, 일정 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시행결과를 비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재정운영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¹³⁾ 동 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에서 22개 부처로 시작해 2006년 모든 정부부처의 재정사업으로 확대하였고, 해양수산부는 200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표 4-2〉 성과관리 대상기관

구분	대상기관	비고
기 시행기관	26개소	
〈'03년 시행〉	교육부, 외교부, 행자부, 과기부, 문화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홍보처, 보훈처,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조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통계청(22개)	선 시행기관
〈'04년 시행〉	노동부, 여성부, 문화재청, 중소기업청(4개)	추가기관
'06년 신규기관	22개소	
	재경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기획처, 법제처, 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행복도시건설청, 방위사업청, 검찰청, 청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조실	

자료: 기획예산처, 「2006년도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지침」, 2006. p.1.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하여 2018년 기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제외하고 총 52개 중앙관서로 나타났다.

13)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검색일: 2019.9.19)

(2)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가. 목표 및 지표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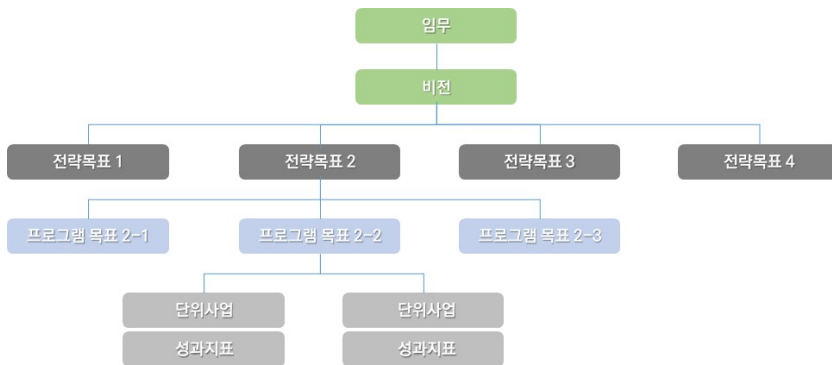
성과목표 관리체계는 전략목표(Strategic Goal), 성과목표(Performance Goal),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 등 위계별로 구분된다.

첫째, 전략목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임무(Mission) 수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전략목표의 하위 개념으로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를 제시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복수의 성과목표를 가지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과목표로 단일화함으로써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지표들을 제시하며, 가급적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4-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도



자료: 원종학·봉재연·박은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34.

나. 성과지표 유형

재정사업의 성과지표는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하며, 결과지표는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적용되고, 나머지 투입, 과정, 산출지표는 사업의 능률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성과지표는 지표측정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측정방법 및 검증방법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대표성과 적절성뿐만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해 왜곡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과관계에 기인하여 사업의 결과가 성과목표의 달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지표는 현재와 과거의 성과, 유사사업의 성과 등과 비교 가능하도록 시계열 실적자료 등의 확보가 가능해야 하고, 단순하면서 적은 수의 지표로 중요 내용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포괄성을 갖추어야 한다.

〈표 4-3〉 성과지표의 4가지 유형

구분	세부내용	예시
투입지표 (Input)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 예산 집행률 • 세미나 개최실적 등
과정지표 (Activity/Process)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달성 정도를 표시 •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점검하는 데 도움	• 건설공정률(%) • 계획대비 집행실적(%)
산출지표 (Output)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결과 또는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 투입에 비례하여 목표한 산출을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에 도움	• 논문게재건수 • 상수도보급률 • 장애인고용률
결과지표 (Outcome)	1차적 결과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 • 사업이 의도한 최종결과의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	• 교통사고 감소율 • 민원인 만족도 증가율

자료: 국무조정실,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 2006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작성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1) 개요

정부는 2005년부터 미국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¹⁴⁾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사업의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 보다 정확한 성과정보의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궁극적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투명한 재정운영,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¹⁵⁾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최근까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평가방식, 평가주체 등을 개선하고, 최근에는 ‘핵심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4-4〉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변화

구분	세부내용	기획재정부 개별사업 평가	메타평가
2005~2014년 (부처평가→기재부 점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	○	×
2015년 (메타평가 실시)	메타평가 방식으로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별로 확인·점검 실시	△	○
2016~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	×	○
2018년 (메타평가 폐지, 핵심사업 평가제도 도입)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 중요 재정을 대상으로 핵심사업 평가	×	×

자료: 원종학·봉재연·박은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41.

14)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각 부처가 5년 주기로 모든 사업을 자체평가, 미국 예산처(OMB)는 평가결과를 점검하고 예산편성에 활용

15) 원종학·봉재연·박은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41.

(2) 주요내용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요소는 계획, 집행, 성과단계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먼저 계획단계는 사업목적의 명료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적절성, 구체성, 인과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집행단계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와 문제발생에 따른 환류,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셋째, 성과단계는 사업평가의 객관성, 목표달성 정도, 평가결과와 예산운용의 활용 등을 평가하고 있다.

〈표 4-5〉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평가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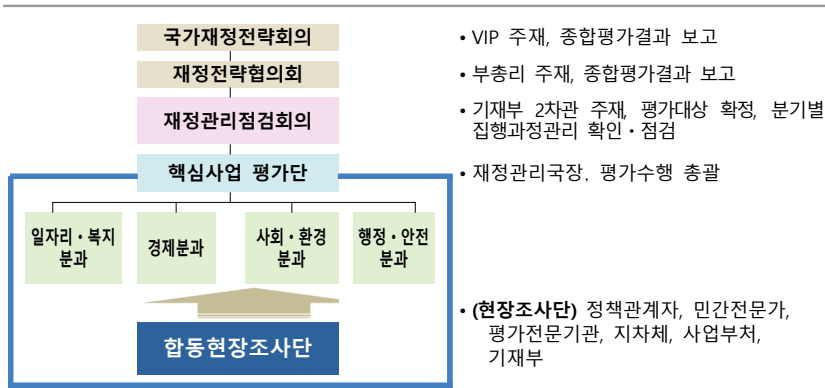
구분	재정사업 자율평가 공통 평가요소
계획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 가 ?
	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가 ?
	3.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가 ?
	4. 현재 지출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 가 ?
	5.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 ?
	6. 성과목표와 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 되었는가 ?
집행	8.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 ?
	9.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 하였는가 ?
	10.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 가 ?
	11. 예산을 절감하거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 가 ?
성과	12.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 하였는가 ?
	13. 당초 계획된 성과를 달성 하였는가 ?
	14.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 가 ?
	15. 평가결과를 제도개선 및 예산자율편성에 활용 하였는가 ?
SOC	1. 각종 갈등요인을 점검 · 조정하고, 계획에 반영 하였는가 ? (계획)
	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 (계획)
	3. 총사업비 관리가 적절한 가 ? (집행)
	4.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하였는가 ? (성과)

자료: 박노옥 외,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21.

나. 핵심사업 평가

핵심사업 평가제도는 2018년 기획재정부와 사업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혁신성장 관련 주요사업의 성과관리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 핵심사업 평가제도는 정책관계자, 민간전문가, 평가전문기관, 지자체, 사업부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현장조사와 성과를 측정하고, 집행과정 상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그림 4-3〉 핵심사업 평가 추진체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 80대 「핵심과제 평가」 추진계획, 2018, p.7.

동 제도는 ①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관리 역량 집중, ②평가방식 혁신으로 성과제고 및 지출혁신의 뒷받침, ③평가 전주기에 걸쳐 국민 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부처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핵심사업을 선별하고, 집행과정과 결과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단기 성과지표와 함께 소득재분배, 성장·분배 선순환 관련 중기 지표 등 정책방향에 맞도록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체계를 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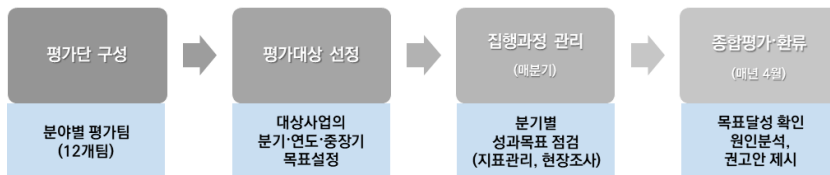
〈표 4-6〉 핵심사업 평가대상(2018년)

구분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소득기반 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 개발
평가대상 수 (80개)	15개	18개	10개	23개	14개
예산규모 (23.1조 원)	7.8조 원	4.2조 원	3.5조 원	5.8조 원	1.8조 원
관련부처 (43개)	고용부 등 6개	중기부 등 10개	복지부 등 6개	국방부 등 14개	교육부 등 7개

자료: 관계부처 합동, 80대 「핵심과제 평가」 추진계획, 2018, p.3.

둘째, 핵심과제 평가제도는 3년간 매분기 지표관리(집행률, 성과목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사업의 당초 목표 달성률을 관리하고 있다. 핵심사업의 평가과정은 집행을 매분기별로 추진하는 체계로 사후적 성과평가에서 집행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초기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다.

〈그림 4-4〉 핵심사업 평가과정



자료: 관계부처 합동, 80대 「핵심과제 평가」 추진계획, 2018, p.5.

셋째, 핵심과제 평가제도는 기존 재정당국이 주도했던 평가대상 선정에 있어서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정책관계자가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사업의 문제점 진단 및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3)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기획재정부가 특정 사업을 선정하여 재정사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사후적인 성과평가제도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각 사업에 대한 성과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사업목표의 달성여부, 효율적인 사업집행, 사업목적 미달성 시 원인 등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평가대상의 단위는 평가목적에 따라 개별사업 또는 사업군이 될 수 있으며, 부처의 자율평가결과 미흡사업 중에서 선정하고, 사업군 단위는 종합적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군이나 이슈가 되는 경우에 선정된다.

〈표 4-7〉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절차

구분	세부내용
① 평가대상 과제 선정	• 주요 재정사업 중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 - 심층평가 대상과제 수요조사 -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등의 자문을 거쳐 평가대상 선정 - 과제선정사유, 평가방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층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전략협의회」에 보고
② 평가계획 수립	• 사업개요, 예산, 선행연구 등 현황 파악을 기초로 하여 평가 목적 및 방법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 -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모형, 주요쟁점, 평가절차 등을 구체화
③ 평가 및 정책제언	• 대상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 상정
④ 후속조치	• 해당 부처 및 예산실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차년도 이후 예산 및 재정운용 방향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등 추진

자료: 원종학·봉재연·박은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45.

2. 어촌뉴딜사업의 현행 성과지표

1) 현행 성과지표

(1) 성과목표 및 지표

가. 성과목표

어촌뉴딜은 범정부 차원의 생활 SOC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혁신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전에 기초한 어촌뉴딜의 성과목표는 ①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②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기 쉬운 어촌, 찾고 싶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3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5〉 어촌뉴딜의 정책목록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모델개발 연구용역』, 2018, p.17.

나. 성과지표

「2020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어촌뉴딜의 성과지표는 지원하는 사업개소수로 나타났다. 사업지원 개소수 달성도는 목표대비 실적의 비율로 산출하는 것으로 성과지표 중 과정지표에 해당된다. 과정지표는 어촌뉴딜의 집행실적을 나타내는 지표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결과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표 4-8〉 어촌뉴딜의 성과지표

단위: 개소, %

성과지표	구분	2019년	2020년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어촌뉴딜 300 사업지원 개소수	목표	70	100*	중기재정계획	연도별 지원개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실적	70	-			
	달성도	100	-			

주: 2020년 정부예산안 증액에 따라 사업지원 개소수가 70개소에서 100개소로 변경

자료: 해양수산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9, p.62의 내용을 저자 재작성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의 지자체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1차 공모사업(2019년~2021년)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그 결과를 취합해서 지표설정과 산출방식 등을 추후에 마련할 계획이다.¹⁶⁾

(2) 성과지표의 측정 및 자료

현행 어촌뉴딜의 성과지표의 측정은 사업지원 개소수 실적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와 목적, 사업평가를 통해 재정운용의 개선 등 핵심 재정사업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체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16) 해양수산부, 2019년 해양수산사업지행지침(수산사업, 어촌뉴딜 300), 2019, p.1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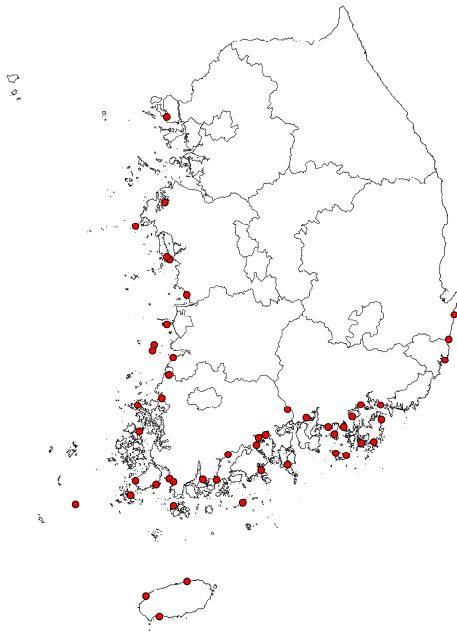
2) 1차 기본계획의 검토

(1) 평가대상 및 성과지표 도출 방법

가. 평가대상

본 연구에서는 어촌뉴딜 300사업 1차 공모선정 70개소 중 지난 8월 기본계획 협의요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된 56개소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를 살펴보았다. 지역별로는 전남 23개소(41.1%), 경남 14개소(25.0%), 충남 7개소(), 경북 5개소(8.9%), 전북 4개소(7.1%), 제주 3개소(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1차 공모사업의 기본계획 협의 완료 대상지역(56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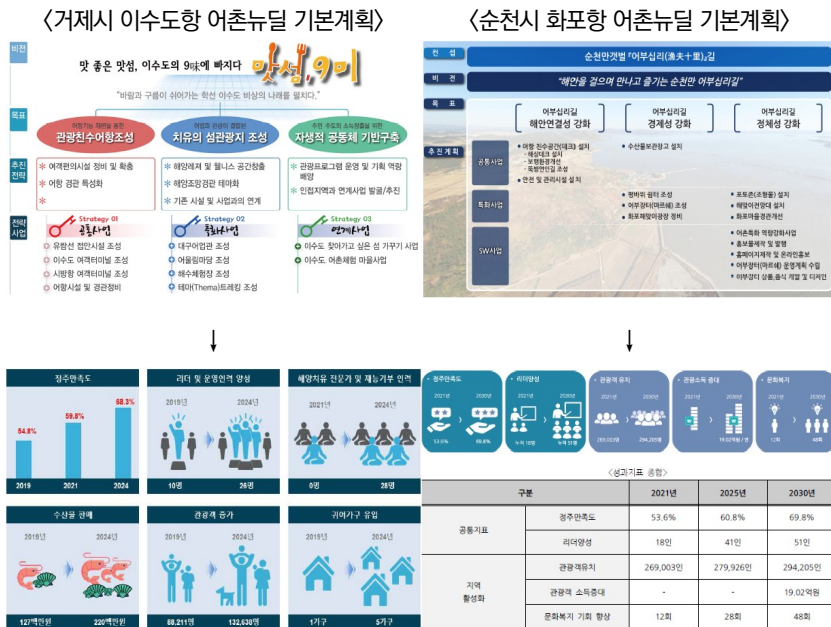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공모사업 선정결과), 2019b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성과목표 및 지표의 산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시한 어촌뉴딜 기본계획 협의가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승인된 56개 사업권역의 비전, 정책(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상관관계, 성과지표의 산출방식과 근거자료, 개별 기본계획의 성과지표가 어촌뉴딜 정책목표와 정합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56개소의 기본계획을 <그림 4-7>과 같이 분류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료 입력과 사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중복성, 오류 등이 나타나는 성과지표는 연구진이 재분류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림 4-7> 거제시(이수도항) 및 순천시(화포항) 성과지표 사례



자료: 거제시, 이수도 기본계획 협의 요청서, 2019, p.9.; 순천시, 화포항 기본계획 협의 요청, 2019, p.9.

(2) 기본계획 검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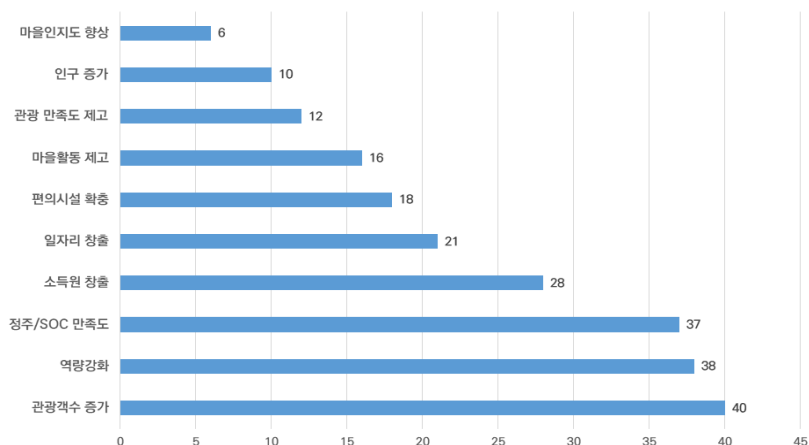
가.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검토는 개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의 수를 살펴보았다. 개별 어촌뉴딜 기본계획의 성과지표는 평균 4.1개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성과지표를 설정한 지역은 경북 울릉군 천부항으로 정주민족도, 역량강화, 일자리창출, 소득창출, 방문객 증가, 인구유입 증가, 주차공간 확보 등 7개를 제시하였다. 한편 기본계획에서 정량적인 성과지표가 없거나 1개만을 제시한 경우도 4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로 관광객수 증가가 40개소(71.4%)로 가장 높았으며, 공동체 역량강화 38개소(67.9%), 정주/SOC 등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37개소(66.1%), 소득원 창출 28개소(50.0%), 일자리 창출 21개소(37.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기본계획의 부문별 성과지표

단위: 개소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공모사업 기본계획 협의자료), 2019a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어촌뉴딜 기본계획의 사업유형은 국민휴양형, 해양레저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복합형으로 구분된다. <표 4-9>는 사업유형별로 성과지표를 구분한 것으로 사업유형과 성과지표 간의 인과성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협의가 이미 완료된 기본계획의 유형별 도입시설(공통시설¹⁷⁾ 및 특화시설¹⁸⁾에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협의가 완료된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특화사업 보다는 공통시설의 비중이 높게 책정되었다.

<표 4-9>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단위: 개, %

구분	국민휴양형	해양레저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복합형
합계	13	5	9	5	24
정주 만족도	7 (53.8)	5 (100.0)	6 (66.7)	3 (60.0)	17 (70.8)
역량강화	10	3	5	4	16
일자리 창출	5	3	3	1	9
소득원 창출	7	2	5	2	12
관광객 증가	10 (76.9)	4 (80.0)	7 (77.8)	4 (80.0)	16 (66.7)
관광 만족도	2	1	0	2	6
인구증가	2	1	2	3	8
마을활동 제고	4	0	3	1	8
기반시설 확충	4	4	3	2	6
마을홍보 강화	1	1	2	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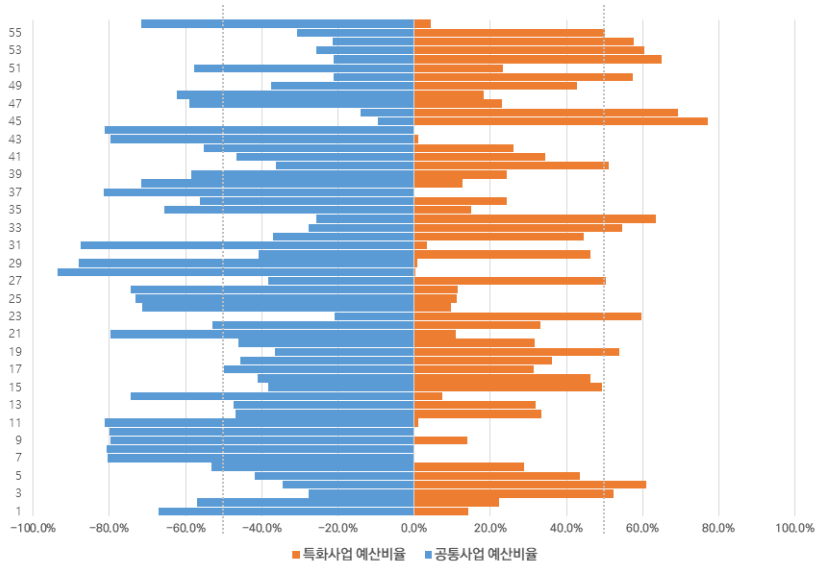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공모사업 기본계획 협의자료), 2019a를 토대로 저자 작성

17) 모든 대상지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생활 SOC 사업(어항시설 정비, 여객선기항지의 접안 시설, 터미널, 화장실, 안전시설 확충, 어구창고, 어구건조장 조성 등이 해당됨)

18) 공모대상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관광·문화(문화복지, 경관개선, 주거개선), 지역소득 증대(소득기반, 레저·체험, 휴식·휴양) 등이 해당됨

〈그림 4-9〉 기본계획의 예산배정 비율(공통사업 vs 특화사업)

단위: %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공모사업 기본계획 협의자료), 2019a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다. 성과지표 산정방식

56개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용역기관에 따라 산정방식과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과지표를 산출하는 근거자료, 산출방식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특정 지자체의 경우 5개 사업권역에서 어촌뉴딜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하였으나, 이들 사업이 완료되는 5개소 모두 주민 만족도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80%, 90%를 제시하는 등 획일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제시된 성과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5개 사업지역의 주민 만족도가 동일하게 제시될 수 없으며, 사업완료 이후에도 목표치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 의견의 기본계획 반영 평가

어촌뉴딜은 예비계획서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역주민, 행정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4-10>은 어촌뉴딜 1차 기본계획 협의자료에 제시되었던 조치사항을 사업유형과 반영여부(반영완료, 반영예정, 부분반영, 미반영)를 연구진이 판단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이 결과분석에 따르면 전체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은 총 1,251건이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이 완료된 것은 395건(31.6%)에 불과하고 반영예정 528건(42.2%), 부분반영 184건(14.7%), 미반영 144건(11.5%)로 나타났다. 어촌뉴딜 사업계획의 행정적인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반영예정인 내용을 전제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사실상 반영예정인 의견들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 설계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4-10> 자문의견의 기본계획 반영 정도

단위: 건, %

구분		비용산정*	하드웨어**	프로그램***	계획검토****	계 (비율)
지역협의체 의견 (지역전문가, 자문단)		89 (100.0)	424 (100.0)	336 (100.0)	402 (100.0)	1,251 (100.0)
기본 계획 반영 여부	반영완료	35 (39.3)	147 (34.7)	98 (29.2)	115 (28.6)	395 (31.6)
	반영예정	36 (40.4)	144 (34.0)	159 (47.3)	189 (47.0)	528 (42.2)
	부분반영	10 (11.2)	63 (14.9)	54 (16.1)	57 (14.2)	184 (14.7)
	미반영	8 (9.0)	70 (16.5)	25 (7.4)	41 (10.2)	144 (11.5)

주: * 사업비용의 조정과 관련된 의견

** 기본계획 협의안의 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 관련된 의견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의견

**** 경관계획, 사업계획 검토, 부지확보 등과 관련된 의견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공모사업 기본계획 협의자료), 2019a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현행 어촌뉴딜 성과목표 및 지표의 한계

1) 검토 개요

현행 어촌뉴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측면과 어촌뉴딜 정책의 내실화 측면으로 이원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앞에서 살펴보았던 연구내용을 토대로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성과평가 체계는 ①어촌뉴딜 정책의 대표성 성과지표 부재, ②사후단계에 국한된 성과평가 체계, ③정책목표와의 인과성 부족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어촌뉴딜은 300개소에 대해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각 개별사업의 내실화 측면에서 현행 성과평가 체계에서는 ①기본계획의 성과지표 일관성 부재, ②투입, 과정, 산출, 성과지표의 혼재, ③사업유형과 성과지표 간 인과성 부족, ④성과지표 측정방식(산출방식)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부족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0〉 현행 어촌뉴딜 성과평가 검토 개요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뉴딜 성과목표 및 지표

(1) 재정사업 성과평가 측면

가. 어촌뉴딜 정책의 대표성 성과지표 부재

어촌뉴딜 300사업의 재정사업 성과지표는 ‘사업지원 개소수’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과정지표에 불과하다. 어촌뉴딜이 단기 간 추진되는 정책으로 3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어촌분야의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정책 사업이라고 본다면 현행 성과지표는 어촌뉴딜 정책의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성과지표는 결국 어촌뉴딜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함축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지표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특히, 성과지표는 정책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연차별, 유사사업 간에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의 경우 생활 SOC 일환으로 어촌의 지역재생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시분야(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분야(일반농산어촌개발) 등과 상대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한 지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후단계에 국한된 성과평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체계는 크게 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에 대한 평가요소를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어촌뉴딜의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체계는 각 단계별에 맞는 성과지표와 이에 대한 달성정도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링과 정량·정성적인 성과도출이 필요하다.

현행 어촌뉴딜의 성과지표는 ‘지원사업 개소수’로 성과단계에 국한되어 있다. 현행 성과평가 체계는 성과단계에 있어서 한계도 나타나지만 어촌뉴딜이 정책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계획단계와 집행단계의 구체적인 성과평가 방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 정책목표와의 인과성 부족

어촌뉴딜의 정책목표는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와 「어촌어항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어항재생”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어촌뉴딜의 정책목표는 크게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역활력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어촌뉴딜의 정책목표와는 다르게 성과지표는 사업지원 개소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간 인과성, 관련성이 부족하다.

〈표 4-11〉 어촌뉴딜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구분		세부내용	비고
정책목표	어촌뉴딜 가이드라인	• 해양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제고
	어촌어항법 제2조 제9호 (어촌·어항재생)	•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	지역활력 (정주, 산업, 주민역량 등)
성과지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어촌뉴딜)	• 어촌뉴딜 300 사업지원 개소수 (목표, 실적, 달성도)	사업개소수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뉴딜 내실화 측면

가. 기본계획 성과지표의 일관성 부재

지자체와 해양수산부 간 협의가 완료된 56개 기본계획을 분석해 본 결과, 성과지표는 지자체, 사업유형, 사업계획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사업계획별로 각기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지만 어촌뉴딜 정책에서 추구하고하고자 하는 종합적이고 공통된 성과지표

또는 핵심 성과지표, 사업권역의 개별 성과지표가 각기 구분되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별도의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자체, 지역주민, 용역기관 등 어촌뉴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 간 성과지표의 일관성 부재는 어촌뉴딜의 정책목표 및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각기 다른 가치관과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기본계획과 어촌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성과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기존 사업권역뿐만 아니라 향후에 추진되는 230개소 사업권역에 우선적으로 이를 공유하고, 향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나. 사업계획 및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간 인과성 부족

어촌뉴딜의 사업계획은 각기 다른 정책목표와 도입시설,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1차 공모를 통해 확정된 다수의 사업계획에서는 정책목표, 도입시설, 성과지표의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1〉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인과성이 부족한 사례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공모사업 기본계획 협의자료), 2019a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4-11〉은 기본계획의 사업내용(정책목표, 도입시설, 성과지표) 간 인과성이 부족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두 지역 모두 전체 사업비의 75% 정도를 어항정비에 투입하는 생활 SOC 중심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였고, 관광 집객력이 높지 않은 소규모 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관정비, 갯벌체험시설 등을 투입해서 제시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특히, 핵심적인 도입시설과 성과지표 간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계획수립자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되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

어촌뉴딜 기본계획 협의자료 56개소의 성과지표는 관광객 수, 정주(어항 인프라) 만족도, 역량강화가 가장 많이 채택되었고, 소득원 창출, 일자리 창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측정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용역기관에 따라 획일적이고 동일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정량적인 값도 동일하게 제시되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핵심 공통적인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관광객 수, 주민 만족도 등의 성과지표 역시 정량적인 수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 의견의 기본계획 반영 불투명

지자체가 어촌뉴딜의 예비계획서와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협의체, 자문단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251건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 중 528건(42.2%)이 기본계획 반영예정을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다. 기본계획 이후 단계에서 향후 반영예정으로 제시된 내용이 설계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하는데, 환류과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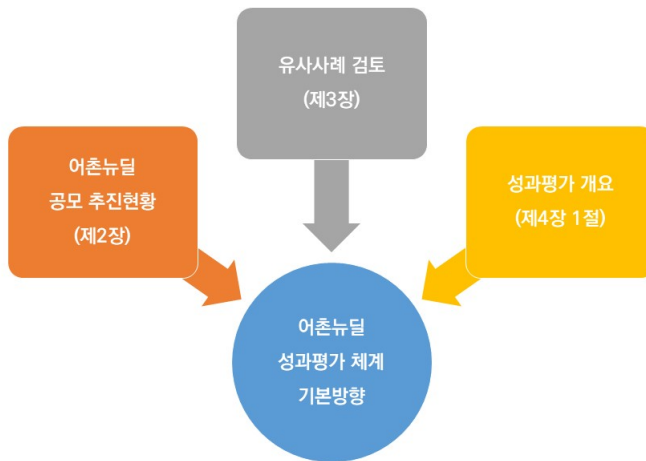
제2절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1. 개요

1) 성과평가 체계의 기본방향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의 기본방향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제2장의 어촌뉴딜 공모 추진현황, 제3장 성과평가 체계의 유사사례 검토, 제4장의 재정사업 평가체계와 어촌뉴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 등을 종합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4-12〉 성과평가 체계의 기본방향 도출과정



자료: 저자 작성

첫째, 어촌뉴딜 1차 공모를 통한 기본계획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 정합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공통 성과지표와 특화 성과지표로 이원화하여 전체적인 성과와 개별 사업권역의 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촌뉴딜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조사·모니터링을 통한 단계별(사전준비단계 → 계획수립단계 → 사업집행단계 → 사업이후 단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자기진단평가, 모니터링 점검·평가, 사업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어촌뉴딜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셋째, 어촌뉴딜 성과지표의 현황과 목표치는 행정기관, 용역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방식의 객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협의체, 자문단 등의 의견사항이 어촌뉴딜 기본계획, 사업설계 등에서 반영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표 4-12〉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의 기본방향

구분		검토사항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적용사항
어촌뉴딜 공모 추진현황		• 사업유형별 성과목표 도출	• 성과지표 이원화 방안 (공통 성과지표 vs 특화 성과지표)
		• 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불일치 (성과지표 산정 객관성, 신뢰성 부족)	• 목표, 도입시설, 성과지표 간 정합성 확보 방안 마련
유사 사례 검토	도시 재생	• 사업 단계별 평가 (준비-계획-집행-관리) • 공통지표, 지역특화지표 구성	• 조사·모니터링을 통해 단계별 평가체계 마련 • 성과지표 이원화 방안 (공통 성과지표 vs 특화 성과지표)
	지역 개발	• 사업 단계별 평가 (사전평가, 집행평가) • 투입요소에 근거, 실적-결과-효과 지 표 구성	• 조사·모니터링을 통해 단계별 평가체계 마련 • 목표, 도입시설, 성과지표 간 정합성 확보 방안 마련
	도서 개발	• 목표 적절성, 내용 적합성, 절차 합리 성 지표	• 목표, 도입시설, 성과지표 간 정합성 확보 방안 마련
성과 평가 개요	재정 사업 평가 대응	• 어촌뉴딜 대표성 성과지표 부재 - 어촌뉴딜 사업지원 개소수	• 공통 핵심 성과지표 → 대표성 확보 (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
		• 사후단계에 국한된 성과평가	• 조사·모니터링을 통해 단계별 평가체계 마련 (사전→계획수립→사업집행→사후)

구분	검토사항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적용사항
어촌 뉴딜 내실화 강화	• 정책목표화의 인과성 부족	• 목표, 도입시설, 성과지표 간 정합성 확보 방안 마련 (자가진단평가 체계 마련)
	• 기본계획 성과지표 일관성 부재 - 일자리, 만족도, 역량강화 채택	• 성과지표 이원화 방안 (공통 성과지표 vs 특화 성과지표)
	• 성과지표 간 인과성 부족 (개별 기본계획 / 4대 유형별)	• 비전, 사업계획, 도입시설, 성과지표 정합성 검토 방안 마련 (자가진단평가 체계 마련)
	• 측정방식의 객관성 · 신뢰성 미흡	• 측정방식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공통 핵심 성과지표 우선 적용)
	• 기본계획 반영예정 사항 모니터링	• 지역협의체, 자문단 의견사항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자료: 저자 작성

2) 근거규정 마련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적근거는 「어촌·어항법」 제 47조의2에서 제47조의6 규정에 따른다. 최근 시행¹⁹⁾된 동 규정은 어촌·어항재생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성과평가와 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표 4-13〉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평가 및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추진과정(사전준비단계, 계획수립단계, 사업시행단계) 및 사업 완료 이후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강제성을 마련하였다.

둘째, 성과평가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19) 어촌어항재생과 관련된 규정은 (개정)2018.12.27. → 시행(2019.8.27.)

〈표 4-13〉 제47조의8 어촌뉴딜 성과평가의 근거규정 마련(안)

현행	개정안
신설 (어촌어항재생 사업의 평가 및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업 완료이후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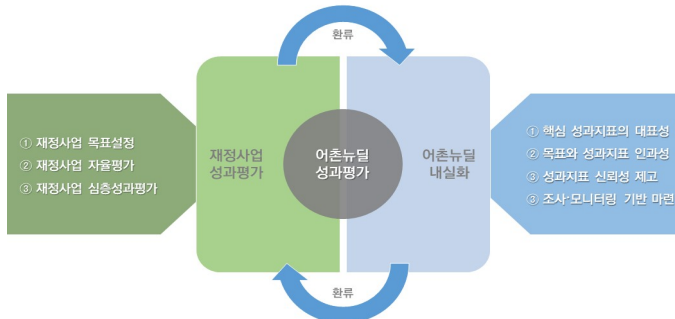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평가체계 목적 및 절차

(1) 평가체계 마련의 목적

어촌뉴딜은 크게 사전단계(사전준비단계)-사업단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사후단계(사업이후단계)로 구분되며, 단계적 구분은 재정사업의 평가 대응과 어촌뉴딜 300사업 본연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림 4-13〉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마련의 목적



자료: 저자 작성

가. 재정사업 평가 대응

어촌뉴딜은 해양수산부가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산·어촌분야의 신규 정책이다. 어촌뉴딜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생활 SOC의 일환으로 생활 SOC 차원에서 재정사업의 평가는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낙후된 도시지역, 농어촌의 지역재생을 통한 지역혁신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에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어촌뉴딜의 평가체계는 재정사업의 평가체계의 틀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정책목표에 인과성과 대표성을 갖춘 성과지표를 도출,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목표에 따른 달성정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나. 어촌뉴딜 추진의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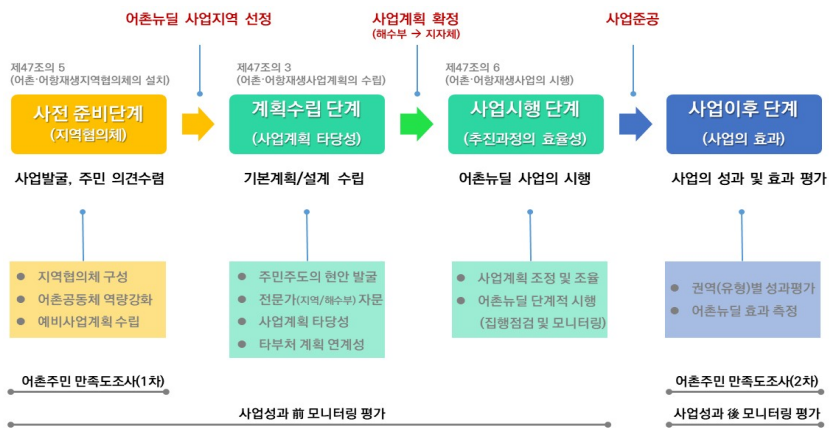
어촌뉴딜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약 300개소 내외가 추진될 예정이다. 해수면과 강마을 지역재생까지 포함하여 전국의 지자체, 어촌주민, 용역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어촌뉴딜에 대한 이해도와 가치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체계화된 성과평가 체계를 통해 일관된 방향성뿐만 아니라 도출시켜야 할 정책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지난 1차 공모사업의 기본계획 협의결과에 나타났던 한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최근 마련된 기본계획에서는 체계화된 성과평가 부재로 공통된 핵심 성과지표 부재, 성과지표 산정방식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살펴보기 어려웠다. 기 추진된 공모사업과 향후 추진될 어촌뉴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①핵심 성과지표의 대표성, ②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인과성 확보, ③성과지표와 산정방식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④조사 및 모니터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

(2) 평가절차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는 공모를 통한 어촌뉴딜의 사업지역 선정, 기계획의 협의과정(지자체 → 해양수산부), 사업준공을 기준으로 <그림 4-12>와 같이 크게 ①사전준비단계, ②계획수립단계, ③사업시행단계, ④사업이후단계로 세분하여 평가절차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평가절차는 ①사업성과 전 모니터링 평가, ②사업완료 이후 모니터링 평가로 이원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과 전 모니터링 평가체계는 사전준비단계, 계획수립단계, 사업시행단계에 해당되며, 사업성과 후 모니터링은 사업이후단계에 해당된다.

<그림 4-14> 어촌뉴딜 단계별 평가절차



자료: 저자 작성

가. 사전준비단계

사전준비단계는 「어촌·어항법」 제47조의5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어촌뉴딜 사업권역 선정에 앞서 지역협의체²⁰⁾를 구성하고, 사업선정을 위해 예비계획서를 마련하는 등 어촌뉴딜 300사업의 착수단계에

20) 어촌어항법 제47조의5에 근거하여 사업발굴 지원, 주민 의견수렴, 지역공동체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어항재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해당된다. 지역협의체는 어촌주민, 지역의 어촌·어항재생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여 구성하고, 지역현안의 진단과 발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 마련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 준비단계의 평가는 지역협의체의 다양한 구성원, 지역현안과 사업발굴을 위한 운영, 공동체의 역량강화 활동, 예비사업계획 마련과 타당성 확보 등에 관한 양적·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 준비단계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지역·사업유형별로 다양한 후보군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어촌뉴딜 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도를 확산시키고, 사업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어촌주민의 주도적인 역할과 선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사전 준비단계는 해당 지자체와 어촌주민이 손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평가를 통해 ①해당 마을에서 어촌뉴딜 사업의 필요성 여부, ②사업추진의 방향성 검토, ③개선하기 위한 사업발굴과 운영·관리, ④성과목표와 달성을 위한 제반여건 검토 등이 충실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어촌뉴딜이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과 현장의 이해도 사이에서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어촌뉴딜이 어촌·어항재생을 통해 지역혁신과 지역활력의 새로운 성장동력 및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1차 공모사업에서 다수의 지역은 기존 어항정비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초기인 현 시점에서는 사전준비단계의 검토와 평가체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이후 계획수립단계와 사업시행단계의 안정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나. 계획수립단계

계획수립단계는 선정된 어촌뉴딜의 사업권역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규정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과 설계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사업계획 및 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계획수립단계는 사전준비단계와 달리 사업실행을 전제로 수립하는 과정으로 용역업체나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주도의 현안 진단과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주민주도의 현안 발굴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협조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어촌뉴딜 사업계획의 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전문기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협의체의 의견과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권역별로 지정한 자문단의 의견이 기본계획과 설계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앞서 1차 공모사업의 56개 기본계획 협의과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체 1,251건의 의견 중 528건(42.2%)은 기본계획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도 반영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협의체와 자문단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절차상의 과정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다시 환류(Feedback) 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기본계획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보고회 절차와 형식을 통해서 심도 있는 사업계획의 정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도입시설에 대한 해당 사업권역의 비전과 목표, 성과지표, 산출근거 등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별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계획요소(도입시

설)를 방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이고, 사업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촌뉴딜은 낙후된 어촌·어항의 현대화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처별 사업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1차 공모를 통한 56개소 기본계획은 모두 부처별 사업계획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수준에서 연계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의 사업구상 시 정부의 의도는 어촌뉴딜과 타 사업계획의 물리적, 화학적 융합을 통해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어촌뉴딜과 타 부처의 사업계획을 통해 해당권역 내 사업주체, 도입 시설과 프로그램 연계, 사업성과(어촌뉴딜, 타 부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와 타 부처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다. 사업시행단계

사업시행단계는 기본계획 협의가 완료된 어촌뉴딜의 사업권역에 대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6에 규정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의 단계로 사업집행과 추진과정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이 핵심이다.

어촌뉴딜의 사업시행단계는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²¹⁾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조정과 조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조정과 조율에 대한 사업집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어촌뉴딜의 단계적 시행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집행의 단계적 시기(주별, 월별, 분기별, 연차별 등)에 따른 집행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21) 사업부지, 이용·개발 규제, 환경문제, 거버넌스 등 당초 예상되지 못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여건, 사업시행자의 문제 등을 포괄함

라. 사업이후단계

사업이후단계는 ‘어촌뉴딜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 즉, 사업권역 및 사업유형별로 사업성과 평가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어촌뉴딜 전체의 사업효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첫째, 개별 사업권역 또는 유형별 성과평가는 핵심 성과지표와 특화된 성과지표로 이원화하고,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어촌뉴딜 전체의 사업효과 측정은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과 급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로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촌뉴딜이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해면과 내륙어촌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도 정량·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2. 성과평가 체계 및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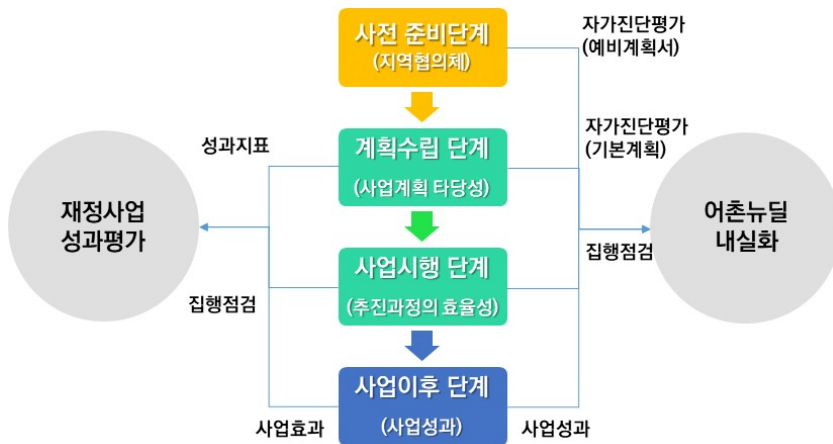
1) 성과평가 체계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체계는 단계별 평가(①사전준비단계 → ②계획수립단계 → ③사업시행단계 → ④사업이후단계)를 기반으로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어촌뉴딜 300사업의 내실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원적인 체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어촌뉴딜 성과평가는 정책의 중요도와 재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도 핵심과제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재정사업 성과평가 지침에서 규정하는 계획, 시행,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와 핵심 성과지표(KPI)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 자체의 내실화를 위해 각 단계별 점검사항을 강화하고, 성과지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림 4-15〉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안)



자료: 저자 작성

2) 평가항목 개발

(1) 사전준비단계

사전준비단계의 핵심적인 평가항목은 지역협의체, 공동체 역량강화, 예비사업계획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평가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가. 지역협의체

지역협의체는 어촌뉴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어촌의 현안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발굴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버넌스 요체이며, 동시에 어촌뉴딜 사업을 이끄는 사업주체

이다. 따라서 지역협의체는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평가해야 한다. 특히,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회의개최 등 정량적인 점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역협의체의 구성원이 협의체 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한 역할과 성과 여부를 기록하고, 그 결과가 예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인과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현안 진단과 사업발굴에 대한 예비사업계획의 점검과 개별요소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공동체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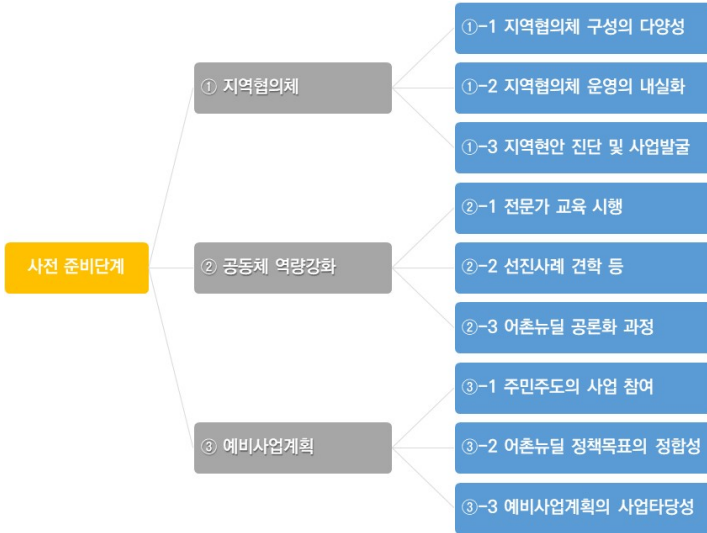
어촌사회는 고령화와 지역전문가의 부족으로 공동체 역량기반이 취약하다. 따라서 어촌뉴딜을 준비,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교육 시행, ②국내외 선진사례 견학 등, ③어촌뉴딜 공론화 과정 등 어업공동체는 지속적인 역량강화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특히, 어촌뉴딜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점검·평가는 강화되어야 한다. 어촌뉴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와 참여부족으로 일부 마을리더 중심의 어촌뉴딜이 추진되지 않도록 마을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 예비사업계획

예비사업계획은 어촌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적인 사업계획안으로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예비계획 수립단계 부서의 철저한 자기진단평가(또는 사전점검평가)를 통해 공모 참여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질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예비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①주민주도로 사업계획안 마련 여부, ②어촌뉴딜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 간 정합성, ③예비사업계획의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점검·평가가 필요하다.

〈그림 4-16〉 사전준비 단계의 평가항목(안)



자료: 저자 작성

〈표 4-14〉 사전준비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지역 협의체	① 지역협의체 구성의 다양성 - 어촌계, 어촌주민 중심의 구성은 지양되어야 함 - 수협, 행정(시군, 읍면), 지역전문가(연구소, 대학), 관광업체 등	지역협의체 구성 시 구성원 및 전문성 ※ 적합 vs 부적합
	② 지역협의체 운영의 내실화 ②-1 지역협의체 회의(워크숍) 개최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자 / 참석자별 의견 내용 / 결과 ②-2 지역협의체 운영 성과 - 지역협의체 운영과 예비계획 간 인과성(문제 진단 및 사업발굴)	① 회의개최 여부 ※ 최저기준 ○회 이상 ② 결과보고서 첨부 ※ 첨부 vs 미첨부 ③ 결과보고서 첨부 ※ 적합 vs 부적합
	③ 예비사업계획의 사업타당성 - 지역현안과 문제진단의 정확성	① 현안 및 문제진단 ※ 적합 vs 부적합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지역 협의체	- 사업별 타당성 검토 - 성과지표 적절성(어촌뉴딜 정합성, 산정방식 객관성/신뢰성)	② 사업별 타당성 ※ 적합 vs 부적합 ③ 성과지표 적절성 ※ 적합 vs 부적합
공동체 역량강화	① 어촌뉴딜 공론화 과정 - 어촌뉴딜 개념 / 정책목표 / 추진방식 / 기대효과	어촌뉴딜 공론화 ※ 시행 vs 미시행
	② 선진사례 견학 등 - 사업방향과 관련성이 높은 사례지역 방문 - 선진사례를 통한 시사점 및 사업방향 구체화 계획	조사 결과보고서 ※ 적합 vs 부적합
	③ 전문가 역량교육 시행 - 관련 전문가 섭외의 전문성 - 교육과정 내실화에 대한 점검	역량강화 교육 평가 ※ 최저기준 ○회 이상 ※ 적합 vs 부적합
예비사업 계획	① 주민주도의 사업 참여 - 주민참여도를 점검 - 예비계획서에 주민의견 반영정도	① 주민참여도 ※ 적합 vs 부적합 ② 주민의견 반영도 ※ 적합 vs 부적합
	② 어촌뉴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정합성 - 핵심 성과지표와 특화된 성과지표 마련 여부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 및 도입시설과의 정합성 - 성과지표 산정방식의 객관성 및 신뢰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 적합 vs 부적합
	③ 예비사업계획의 사업타당성 - 시설 및 사업구상의 적절성 / 실행가능성 / 이용규제 검토 - 시설규모 및 사업예산의 적정성 - 사업효과 기대효과	사업타당성 ※ 적합 vs 부적합

주: 자기진단평가는 정량적인 점수산정 방식이 아닌 모든 점검요소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자료: 저자 작성

(2) 계획수립단계

가. 주민주도의 현안 발굴

주민주도의 현안 발굴은 어촌뉴딜의 시작점이며, 동시에 사업추진의 배경과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는 기본 요소이다. 특히, 주민주도의 현안 발굴의 과정과 절차, 내용적 충실성 등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56개소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협의과정에서 나타났던 ①기존 활동조직 및 이해관계자 등 지역협의체의 역할과 성과, ②행정 지원 및 협의체계 마련, ③여건에 맞는 지역현안 발굴 등의 핵심요소를 평가항목(안)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평가항목들은 자기점검평가의 개념으로 체크포인트에 충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사업 초기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나. 전문가 활용 체계 마련

전문가 활용 체계 마련은 용역기관이나 전문가 참여와 역할이 형식적인 절차의 과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기진단평가와 함께 어촌뉴딜 성과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함으로써 어촌뉴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전문가 활용 체계의 체크포인트는 크게 ①적합한 전문가의 참여와 운영, ②용역기관의 전문성에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전문가 영역과 사업권역 니즈의 미스매칭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방향과 전문영역의 정합성, 지속적인 전문가의 참여 여부, 계획수립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조정, 결정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용역기관이 어항분야의 기술용역분야에 한정되지 않도록 지역재생, 경관디자인, 관광분야 등 다양한 영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이 잘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점검·평가가 필요하다.

다. 기본계획(설계) 타당성

기본계획의 타당성은 어촌뉴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①성과지표의 합리성(핵심 성과지표와 추진과제의 적절성), ②지역협의체 및 자문단 의견 피드백, ③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④타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제시하였다.

개별 어촌뉴딜 사업권역의 사업목표와 도입시설, 성과지표 간 정합성 확보 여부와 다양한 자문의견이 기본계획(설계)에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이 지역여건, 법제도 규제,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 적절성 확보 여부, 타 부처 계획과 어촌뉴딜 사업계획 간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림 4-17〉 계획수립 단계의 평가항목(안)



자료: 저자 작성

〈표 4-15〉 계획수립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주민 주도의 현안발굴	① 기존 활동조직 및 이해관계자 ①-1 지역협의체 기능과 역할 - 지역협의체가 사업계획에 맞는 주체와 이해관계자 구성 여부 - 구성원 역할과 참여도 (어촌주민 참여도 최소 50% 이상) ①-2 지역협의체 운영 성과 -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한 성과 점검	① 지역협의체 역할 ※ 적합 vs 부적합 ② 지역협의체 성과 ※ 적합 vs 부적합
	② 행정 지원 및 협의체계 마련 - 어촌뉴딜에 대한 지자체 역할 및 지원 내용 (협의체 구성 /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성과 지원 등)	행정기관 지원 ※ 적합 vs 부적합
	③ 여건에 맞는 지역현안 발굴 - 현안 및 문제진단의 적절성 (생활 SOC 제고 / 소득 및 일자리 창출 / 관광 활성화 등)	현안/문제진단 적절성 ※ 적합 vs 부적합
전문가 활용 체계 마련	①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와 운영 - 전문가의 미스매칭 여부(사업내용 vs 전문가 전문분야) - 사업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지정 - 전문가 참여의 지속성	① 전문가 전문성 ※ 적합 vs 부적합 ② 전문가 참여도 ※ 최소 〇명/〇회 이상
	② 용역기관 전문성 - 사업계획(사업내용)에 충실한 용역기관 전문성 매칭 (지역재생, 어항분야 엔지니어링, 경관디자인, 관광 등)	용역기관 전문성 ※ 적합 vs 부적합
기본계획 (설계) 타당성	① 합리적인 성과지표 - 성과지표 정합성(사업계획 목표 vs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어촌뉴딜 목표 부합 여부 - 성과지표의 정량화, 객관성, 신뢰성 확보	성과지표 합리성 ※ 적합 vs 부적합
	②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 의견 환류 - 전문가 의견의 반영의견 및 조치사항 명확성 - 기본계획 협의과정 전에 자문의견의 환류과정 완료 (전문가 의견 → 의견 조치 → 전문기관 점검평가 → 환류 → 반영예정 없이 완료)	자문의견 환류 ※ 적합 vs 부적합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기본계획 (설계) 타당성	③ 기본계획의 적정성 - 시설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 실행가능성 / 법·규제 검토 - 시설규모 및 사업예산의 적정성 - 시설의 사업주체와 운영·관리 지속가능성 담보	기본계획의 적정성 ※ 적합 vs 부적합
	④ 타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권역 내 유효한 타 부처 계획의 제시 - 타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한 방안 제시 (단순하게 타 부처 계획의 나열은 지양)	타 부처 계획 연계성 ※ 적합 vs 부적합

주: 자기진단평가는 정량적인 점수산정 방식이 아닌 모든 점검요소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자료: 저자 작성

(3) 사업시행단계

가. 사업계획 조정 및 조율

기본계획 또는 설계는 현장여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이 조정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연차별로 사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 이후에는 200개소 내외가 동시에 진행될 개연성이 있고, 사업변경 등 지역별로 다양한 문제에 기인한 여건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사업집행 과정에서 변경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 점검·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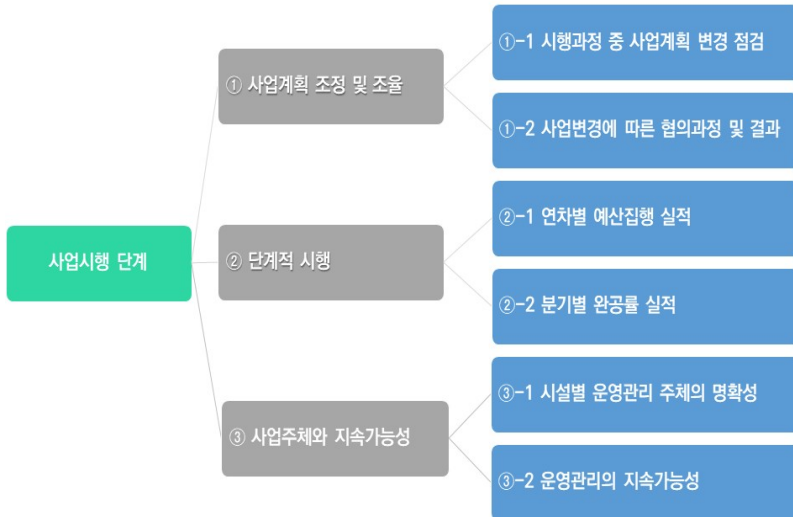
나. 단계적 시행

단계적 시행은 어촌뉴딜의 각 권역별, 지역별 예산집행이나 사업지에 대한 완공률 등 공정관리를 통해 행정적인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다.

다. 사업주체와 지속가능성

재정투입으로 조성된 시설은 명확한 사업주체와 운영관리 방식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아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촌뉴딜을 통한 사업에서도 여객터미널, 화장실, 관광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조성되기 때문에 다음의 항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시설별로 운영관리의 주체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시설별 운영관리 주체가 가급적 지역의 어업공동체로 구성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구체적인 운영방법, 운영관리 예산 마련 등 시설 운영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

〈그림 4-18〉 사업시행 단계의 평가항목(안)



자료: 저자 작성

〈표 4-16〉 사업시행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사업계획 조정 및 조율	① 시행과정 중 사업계획 변경 점검 - 사업계획대로 사업집행 여부 점검 평가 (전문기관 모니터링)	① 사업지 관리 ※ 적합 vs 부적합
	② 사업변경에 따른 협의과정 및 경과 - 사업변경에 따른 협의과정 이행 및 점검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외)	사업변경 협의 ※ 적합 vs 부적합
단계적 시행	① 예산집행 실적 - 예산집행 실적을 주기별(월별, 분기별, 연차별) 점검	예산집행 모니터링 ※ 주기별 점검
	② 분기별 완공률 실적 - 사업공기에 따른 완공률을 분기별로 점검	완공률 모니터링 ※ 분기별 점검
사업주체와 지속가능성	① 시설별 운영·관리 주체의 명확성 - 운영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의 주체의 명확성 - 주체는 지역공동체로 중심으로 구성	시설 운영관리주체 ※ 적합 vs 부적합
	② 운영·관리의 지속가능성 - 시설 운영관리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 - 운영관리 예산 등 지속가능성 담보	운영관리 지속성 ※ 적합 vs 부적합

자료: 저자 작성

(4) 사업이후 단계

가. 어촌뉴딜 사업성과

어촌뉴딜의 사업효과는 크게 사업유형별 성과 측정과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차 사업공모의 경우 4개의 사업유형(국민휴양형, 해양레저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으로 공모하였고, 공모결과 4개 유형과 2개 유형을 합쳐 복합형으로 제시된 경우가 35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유형에 대한 성과를 유형의 특성에 따라 검증하고, 이를 향후 어촌사회 혁신성장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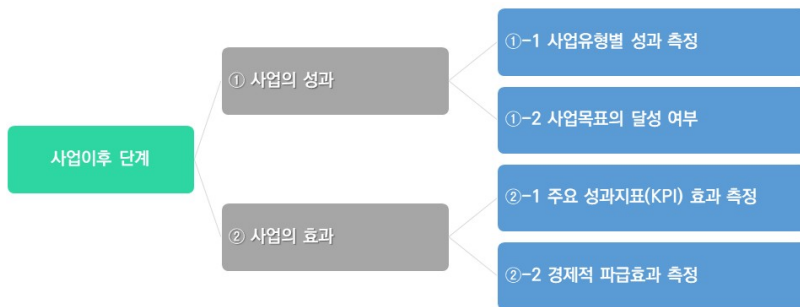
한편, 어촌뉴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수면과 강마을 지역재생에 대해통합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공간위계별(개별 사업권역, 시군구, 시도, 전체), 사업목표(삶의 질 개선, 관광객 유입효과, 소득·일자리 창출 등)의 달성정도를 점검해야 한다.

나. 어촌뉴딜 사업효과

어촌뉴딜의 사업효과는 크게 주요 성과지표(KPI) 변화의 측정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이원화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우선 핵심 공통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 점검·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특히, 핵심 성과지표의 선정은 어촌뉴딜 정책을 상징적으로 함의하고, 도입사업, 추진방식 등을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최대 3개 이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촌뉴딜은 약 3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수산·어촌의 대표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촌뉴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부가가치, 고용, 생산 유발)에 대한 분석을 지역단위,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4-19〉 사업이후 단계의 평가항목(안)



자료: 저자 작성

〈표 4-17〉 사업이후 단계의 체크리스트(안)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어촌뉴딜 사업성과	① 사업유형별 성과 측정 - 국민휴양형, 해양레저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복합형	핵심 성과 측정 ※ 유형별 성과평가
	②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 - 공간위계별 사업목표 달성 이행·점검 (사업권역 / 시군구 / 시도별 / 전체 사업목표) - 어촌뉴딜 사업목표에 달성 점검·평가 (삶의 질 만족도 / 관광객 유입효과 / 소득·일자리 창출 등)	사업목표 달성 점검 ※ 사업목표/공간위계별
어촌뉴딜 사업효과	① 주요 성과지표(KPI) 효과 측정 - 핵심 공통 성과지표의 도출 - KPI 연차별 측정 (사업완료 이후 5년)	공통 KPI 모니터링 ※ 최소 〇개 이상
	②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 - 부가가치 유발 효과 - 고용유발효과 - 생산유발효과	파급효과 모니터링 ※ 1차 사업완료 이후 (2022년부터)

자료: 저자 작성

3. 평가항목 우선순위

1) AHP분석 개요

(1) 조사체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되었던 단계별 평가항목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촌뉴딜 300사업의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²²⁾을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은 1차 어촌뉴딜 300사업의 공모 시 현

22) AHP 분석은 의사결정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중적인 경우, 이를 세부 요인으로 계층화하여 세부 요인별로 상대적 중요도 비교 등을 통해 세부 요인의 순위를 선정하는 기법

장실사 등에 참여해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이들로 구성해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높은 이해도를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사업의 사전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이후에 이르기까지 각 프로세스별로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비교해 평가항목의 세부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했다.

전문가 집단의 인력풀은 1차 어촌뉴딜 300사업 시 현장평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105명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는 분야별로 ①수산·어촌 및 지역경제, ②지역공동체, ③건축 및 디자인·경관, ④도시계획 및 항만기술, ⑤문화관광 및 레저로 구분하였다. 한편, 조사시기는 2019년 9월 16일부터 7일 간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시행되었으며, 105명 가운데 46명의 전문가로부터 응답을 회수하였다. 조사에 응한 전문가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전체 응답자의 80.4%로 대부분이며, 연령은 50대를 중심으로 40대와 60대 이상이 고르게 분포했다. 활동분야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레저 분야가 30.4%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건축 및 디자인·경관 분야와 도시계획·항만기술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설문결과는 코딩 작업을 거친 후 통계 처리하였고, 일관성 분석을 수행한 후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항목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표 4-18〉 AHP 조사 체계

구분	내용		비고
조사기관	자체 조사		-
조사기간	2019. 9.16~9.22		7일
전문가 집단	제1차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평가위원 대상(105명)	- 수산어촌 지역경제 18명(17.2%) - 지역공동체 14명(13.3%) - 건축, 디자인·경관 19명(18.1%) - 도시계획, 항만기술 25명(23.8%) - 문화관광, 레저 29명(27.6%)	-
조사 방법	온라인을 통한 AHP조사 분석 실시		-

자료: 저자 작성

〈표 4-19〉 응답자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성별		연령				활동분야				
	남	여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수산 어촌 지역 경제	지역 공동체	건축 디자인 경관	도시 계획 항만 기술	문화 관광 레저
빈도	37	9	2	10	23	11	6	7	10	9	14
비율	80.4	19.6	4.3	21.7	50.0	23.9	13.0	15.2	21.7	19.6	30.4

자료: 저자 작성

(2)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계층구조 설정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AHP분석 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의사결정기법을 적용하였다. 쌍대비교 의사결정기법을 통해 개념적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계층구조 내 하위 구성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평가 항목 결정에 반영하도록 해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 구축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계층구조는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프로세스에 따라 사전준비단계, 계획수립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이후단계의 네 단계로 구성하였다. 이후 사업 추진의 프로세스별로 일차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각 단계의 평가기준에 따르는 세부 평가항목들을 설정한 이후 전문가들로 하여금 쌍대비교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 프로세스별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4-20〉과 같다.

〈표 4-20〉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프로세스별 평가기준

사업추진 프로세스	평가 기준
사전준비단계	지역협의체 구성 / 공동체 역량강화 / 예비사업계획
계획수립단계	주민주도의 현안 발굴 / 전문가 활용 체계 마련 / 기본계획(설계) 타당성
사업시행단계	사업계획 조정 및 조율 / 단계적 시행 / 사업주체와 지속가능성
사업이후단계	사업의 성과 / 사업의 효과

자료: 저자 작성

〈표 4-21〉 어촌뉴딜 300사업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항목

프로세스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사전준비단계	지역협의체 구성	지역협의체 구성의 다양성
		지역협의체 운영의 내실화
		지역현안 진단 및 사업 발굴
	공동체 역량강화	전문가 교육 시행
		선진사례 견학 등
		어촌뉴딜 공론화 과정
	예비사업계획	주민 주도의 사업 참여
		어촌뉴딜 정책목표의 정합성
		예비사업계획의 타당성
계획수립단계	주민 주도의 현안 발굴	기존 활동 조직 및 이해관계자 파악
		행정 지원 및 협의체계 구축
		여건에 맞는 지역의 현안 발굴
	전문가 활용 체계 마련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와 운영
		용역기관 적합성(분야, 전문분야 등)
		목표설정(KPI) 및 추진과제 적절성
	기본계획 타당성	지역협의체 및 자문단 의견 피드백
		사업계획(설계)의 적정성 및 합리성
		타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시행단계	사업계획 조정 및 조율	시행과정 중 사업계획 변경 점검
		사업변경에 따른 협의과정 및 결과
	단계적 시행	연차별 예산집행 실적
		분기별 완공률 실적

프로세스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사업시행단계	사업주체와 지속가능성	시설별 운영관리 주체의 명확성
		운영관리의 지속성
사업이후단계	사업의 성과	사업유형별 성과 측정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
	사업의 효과	주요 성과지표(KPI) 효과 측정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마련이라는 목적을 위한 의사결정 계층화로 사업추진의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의사결정의 선택대안으로 각 단계별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을 제시하면서 항목 간 독립성 및 항목 내 종속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AHP척도는 9점 척도를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2 항목 간 쌍대비교값은 차례로 1점 동등, 3점 약간 중요, 5점 매우 중요, 7점 확실히 더 중요, 9점 절대적으로 더 중요로 구성하였다.

〈표 4-22〉 AHP 쌍대비교값

쌍대비교값	의미
	A가 B보다
1	동등
3	약간 중요함
5	매우 중요함
7	확실히 더 중요함
9	절대적으로 더 중요함

자료: 저자 작성

2) 우선순위 분석 결과

(1) 성과평가의 추진단계별 중요도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의 추진단계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23>과 같다. 성과평가의 추진단계별 상대적 중요도는 사전준비단계가 0.313, 계획수립단계가 0.321, 사업시행단계가 0.193, 사업이후단계가 0.174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의 추진단계에 있어서의 중요도는 계획수립단계가 1순위, 사전준비단계가 2순위, 사업시행단계가 3순위, 사업이후단계가 4순위로 나타났다. 즉, 사업의 시행 전 어촌뉴딜 300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수립의 평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성과평가 추진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프로세스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사전준비단계	0.313	2
계획수립단계	0.321	1
사업시행단계	0.193	3
사업이후단계	0.174	4

자료: 저자 작성

(2) 평가기준별 중요도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의 추진단계별 평가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단계별 중요도를 반영한 종합 중18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24>와 같다. 사전준비단계에서의 평가기준은 지역협의체 구성 0.339, 공동체 역량강화 0.338, 예비사업계획 0.321 순으로 나타났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기본계획 타당성 0.375, 전문가 활용 체계 마련 0.330, 주민주도의 현안 발굴 0.294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사업주체와 지속가능성 0.461, 사업계획 조정 및 조율 0.354, 단계적 시행 0.18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이후단계에서는 사업의 효과가 0.516, 사업의 성과가 0.484로 나타났다. 추진단계의 상대적 중요도를 함께 고려한 평가기준의 종합 중요도에 있어서는 사업이후단계의 사업의 효과가 0.129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의 성과가 0.121로 2순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주체와 지속가능성이 0.115, 기본계획의 타당성이 0.0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단계에 있어서는 사업의 사전준비와 계획수립단계가 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성과평가의 평가기준에 있어서는 사업이후단계의 사업효과와 사업성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24〉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평가기준별 상대적 중요도/종합 중요도

프로세스	상대적 중요도	평가기준	상대적 중요도	종합 중요도
사전준비단계	0.313	지역협의체 구성	0.339	0.085
		공동체 역량강화	0.338	0.085
		예비사업계획	0.321	0.080
계획수립단계	0.321	주민 주도의 현안 발굴	0.294	0.073
		전문가 활용 체계 마련	0.330	0.083
		기본계획 타당성	0.375	0.094
사업시행단계	0.193	사업계획 조정 및 조율	0.354	0.089
		단계적 시행	0.185	0.046
		사업주체와 지속가능성	0.461	0.115
사업이후단계	0.174	사업의 성과	0.484	0.121
		사업의 효과	0.516	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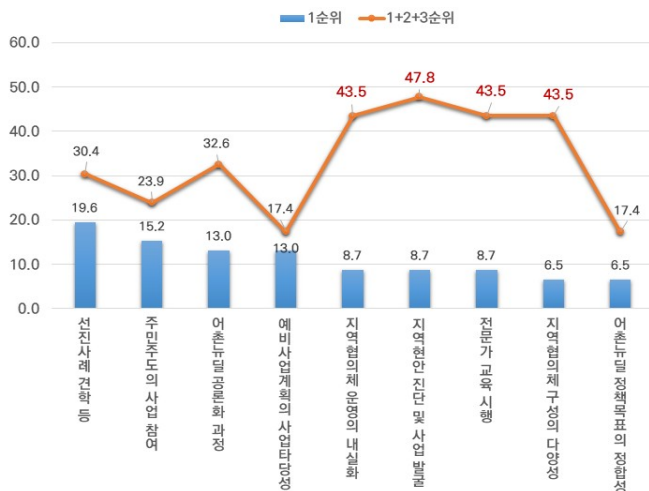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추진단계별 세부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가. 사전준비단계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의 사전준비단계에서의 세부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4-20>과 같다. 사전준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선진사례 견학이 19.6%로 1순위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는 주민주도의 사업 참여가 15.2%, 어촌뉴딜 공론화 과정과 예비사업계획의 사업타당성이 각각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1+2+3순위 중복응답의 경우에는 지역현안 진단 및 사업 발굴이 4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협의체 구성의 다양성과 지역협의체 운영의 내실화, 전문가 교육 시행이 43.5%로 높게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이 평가한 사전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 평가항목은 선진사례 견학과 어촌뉴딜 공론화 과정과 같은 공동체 역량강화 기준에 관한 것이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역협의체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20> 사전준비단계의 세부 평가항목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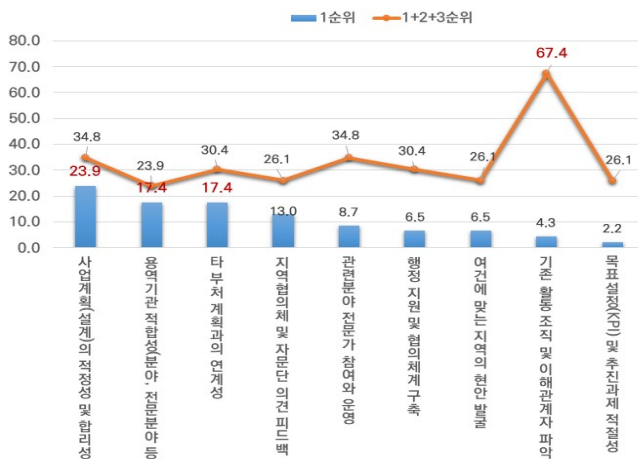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나. 계획수립단계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의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세부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4-21>과 같다. 계획수립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설계)의 적정성 및 합리성이 23.9%로 1순위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는 용역기관 적합성(분야, 전문분야 등)과 타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이 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1+2+3순위 중복응답의 경우에는 기존 활동 조직 및 이해관계자 파악이 67.4%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와 운영, 사업계획(설계)의 적정성 및 합리성이 34.8%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계획수립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타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과 같은 기본계획(설계) 타당성 평가기준에 관한 것을 꼽았으나, 주민주도의 현안 발굴 기준에 따른 기존 활동 조직 및 이해관계자 파악은 다수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로 선택한 세부 평가항목이었다.

<그림 4-21> 계획수립단계의 세부 평가항목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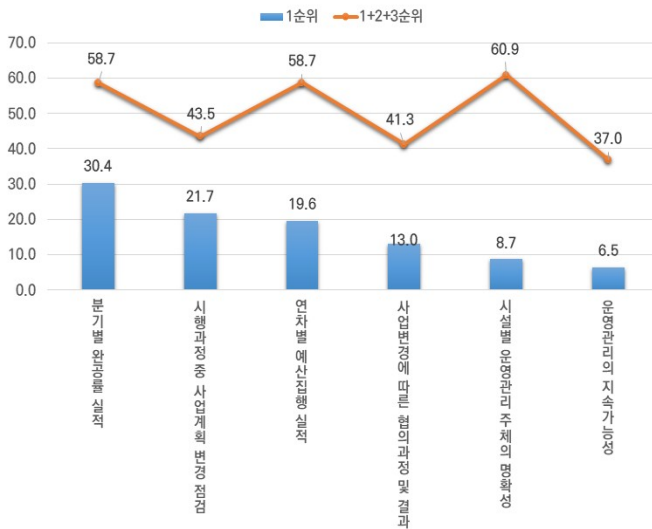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 사업시행단계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의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세부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4-22>와 같다. 사업시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 평가항목은 분기별 완공률 실적이 30.4%로 1순위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는 시행과정 중 사업계획 변경 점점 21.7%, 연차별 예산집행 실적이 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1+2+3순위 중복응답의 경우는 시설별 운영·관리 주체의 명확성이 60.9%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연차별 예산집행 실적과 분기별 완공률 실적이 57.8%로 나타났다. 즉, 분기별 완공률 실적과 연차별 예산집행 실적과 같은 단계적 시행기준에 따른 평가항목들이 사업시행단계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사업시행단계의 세부 평가항목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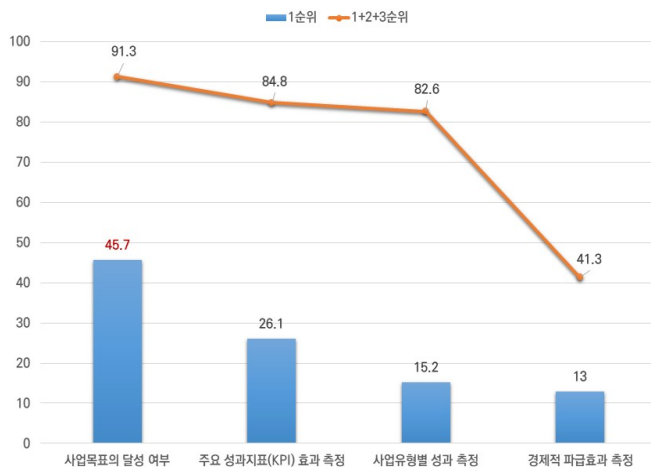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라. 사업이후단계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의 사업이후단계의 세부 평가항목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4-23>과 같다. 사업이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 평가항목은 사업목표의 달성여부가 45.7%로 1순위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는 주요 성과지표(KPI) 효과 측정이 26.1%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1+2+3순위 중복응답의 경우에도 사업목표의 달성여부가 9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요 성과지표(KPI)의 효과 측정이 84.8%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 성과 측정은 다수 전문가가 상대적으로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나 가장 중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은 타 항목에 비해 덜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림 4-23〉 사업이후단계의 세부 평가항목 우선순위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어촌뉴딜 성과평가 추진방안

1. 추진 개요

어촌뉴딜 성과평가는 <그림 4-24>와 같이 각 공모절차에 따른 단계별(①사전준비단계 → ②계획수립단계 ③사업시행단계 → ④사업이후단계) 성과평가 체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어촌뉴딜은 2019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어 마지막 시행계획이 완료되는 2023년 이후 5년이 경과한 2028년까지는 사업이후 성과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촌뉴딜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50~70개소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앞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예산규모가 탄력적이기 때문에 일부 변동이 예상되지만 2020년 3차 공모에 따라 300개소를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다.

어촌뉴딜 성과평가는 각 단계별로 준비단계, 계획단계, 시행단계, 사후평가단계가 연차별·지역별로 복잡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24> 어촌뉴딜 성과평가 추진 로드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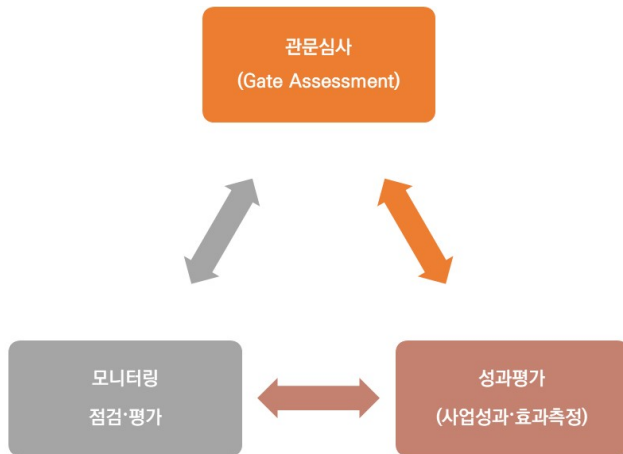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평가방식 및 방법

1) 평가방식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에 따른 평가방식은 크게 관문심사(Gate Assessment)²³⁾, 모니터링 점검, 성과평가의 방식을 채택한다. 이들 평가방식은 상호 연계성이 있으며, 각 단계에서 상호 보완적이며, 동시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4-25〉 어촌뉴딜 성과평가의 평가방식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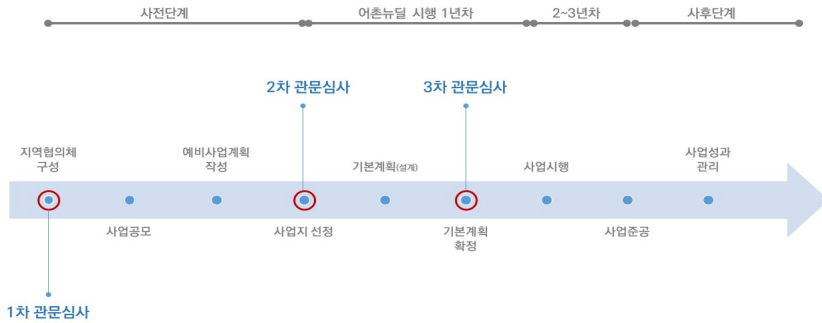
(1) 관문심사

관문심사는 어촌뉴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평가하고, 부족하거나 미흡한 경우 이를 충족시켜 나감으로써 어촌뉴딜 사업 전반의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림 4-26〉은 어촌뉴딜 추진 과정에서 관문심사가 필요한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1차 관문심

23) 관문심사는 정부의 각종 조달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수행 시 사업의 생애 전 주기를 대상으로 중요한 시점마다 프로젝트의 진행경과와 이행성과를 점검하는 제도로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

사(지역협의체 구성 단계), 2차 관문심사(사업공모), 3차 관문심사(기본계획 승인) 절차로 제시하였다.

〈그림 4-26〉 여촌뉴딜 사업추진과정 및 관문심사 도입(안)



자료: 저자 작성

가. 1차 관문심사(지역협의체 구성)

1차 관문심사는 지역협의체가 형식적인 절차로 이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내실화를 높일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1차 관문심사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로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자기진단평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다만, 전문기관을 통해 자기진단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협의체의 사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표 4-25〉는 1차 관문심사의 점검사항(안)으로 구성, 운영계획, 예비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방안, 역량강화 계획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이를 전문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표 4-25〉 1차 관문심사 점검사항(안)

구분	체크포인트	점검요소
지역 협의체	① 지역협의체 구성 계획 - 어촌계, 어촌주민 중심의 구성은 지양되어야 함 - 수협, 행정(시군, 읍면), 지역전문가(연구소, 대학), 관광업체 등	지역협의체 구성 시 구성원 및 전문성 ※ 적합 vs 부적합
	② 지역협의체 운영의 내실화 방안 ②-1 지역협의체 회의(워크숍) 개최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석자 / 참석자별 의견내용 / 결과 ②-2 지역협의체 운영 기대효과 - 지역협의체 운영과 예비계획 간 인과성(문제진단 및 사업발굴)	① 회의개최 여부 ※ 최저기준 ○회 이상 ② 결과보고서 첨부 ※ 첨부 vs 미첨부 ③ 결과보고서 첨부 ※ 적합 vs 부적합
	③ 예비사업계획 추진 계획(안) 마련 - 지역현안과 문제진단의 정확성 - 사업별 타당성 검토 - 성과지표 적절성(어촌뉴딜 정합성, 산정방식 객관성/신뢰성)	① 현안 및 문제진단 ※ 적합 vs 부적합 ② 사업별 타당성 ※ 적합 vs 부적합 ③ 성과지표 적절성 ※ 적합 vs 부적합
공동체 역량강화 공동체 역량강화	① 어촌뉴딜 공론화 계획 - 어촌뉴딜 개념 / 정책목표 / 추진방식 / 기대효과	어촌뉴딜 공론화 ※ 시행 vs 미시행
	② 선진사례 견학 계획 - 사업방향과 관련성이 높은 사례지역 방문 - 선진사례를 통한 시사점 및 사업방향 구체화 계획	조사 결과보고서 ※ 적합 vs 부적합
	③ 전문가 역량교육 시행 계획 - 관련 전문가 섭외의 전문성 - 교육과정 내실화에 대한 점검	역량강화 교육 평가 ※ 최저기준 ○회 이상 ※ 적합 vs 부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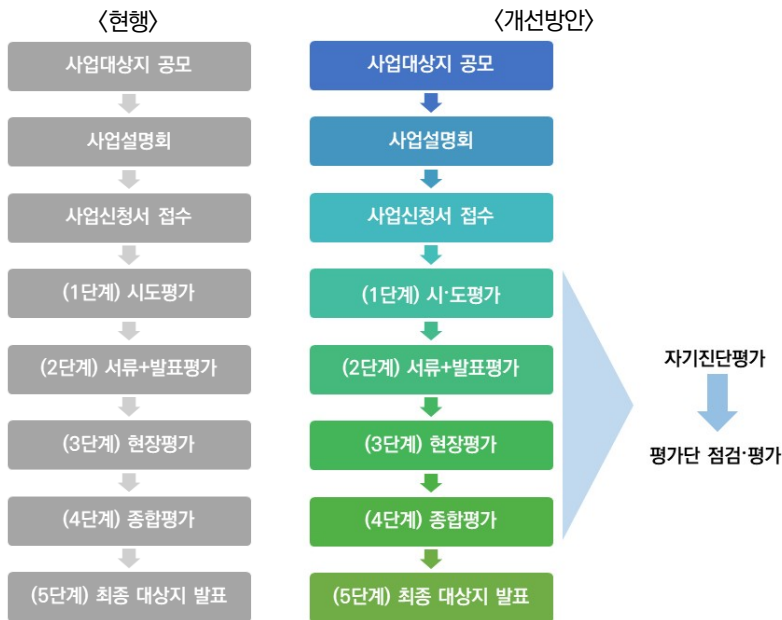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나. 2차 관문심사(사업공모)

2차 관문심사는 해양수산부가 사업공모 절차를 통해 서면, 현장(발표), 종합평가 등을 통해 해당 사업권역의 예비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개별 사업계획이 최대한 어촌뉴딜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어촌뉴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에 투입하고 있으나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구성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평가기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1차 관문심사와 같이 자기진단평가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객관성을 갖고 이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사업지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림 4-27〉 2차 관문심사(공모평가) 개선방안(안)



자료: 저자 작성

다. 3차 관문심사(기본계획 승인)

3차 관문심사는 개별 사업권역별로 지역협의체, 해양수산부 자문단 등의 의견을 토대로 최종적인 사업계획을 확정, 승인하는 단계로 평가요소와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과 객관성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진단평가와 이를 점검·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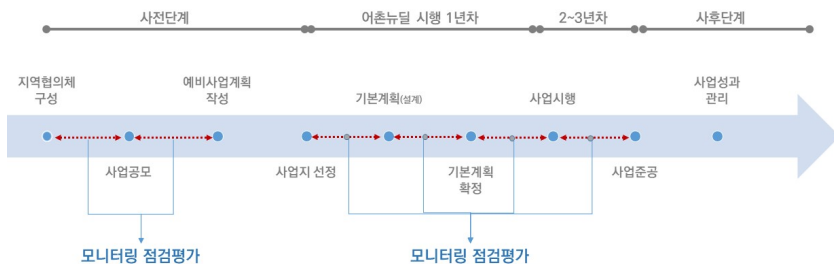
(2) 모니터링 점검·평가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체계에서 모니터링 점검·평가는 크게 사전 단계와 사업시행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지역협의체, 사업계획 마련, 사업집행 등이 적기에 추진되고 있는지를 어촌뉴딜 사업평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야한다.

사전단계 모니터링은 어촌뉴딜 사업지가 선정되기 전에 예비 후보군의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예비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1차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지 선정이후단계에서 지역협의체가 구성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현안과 사업발굴 보다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예비 후보군의 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사업평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업시행 단계의 모니터링은 사업선정 이후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설계과정, 사업시행단계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사업집행의 모니터링 항목 및 평가방식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4-28〉 어촌뉴딜 사업추진과정 및 모니터링 점검·평가 도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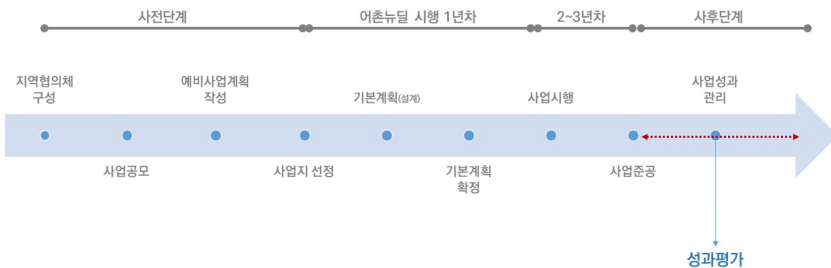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성과평가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체계에서 모니터링 점검·평가는 사업준공이 완료된 이후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과 어촌뉴딜 단계별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투자효과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단계이다.

성과평가는 사업완료 이후 5년까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연차보고서(가칭 어촌뉴딜 백서)의 형식으로 발표하는 등 성과평가 결과를 공식화해야 한다. 특히, 핵심 성과지표는 매년 대내외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향후 포스트 어촌뉴딜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4-29〉 어촌뉴딜 사업추진과정 및 성과평가 도입(안)



자료: 저자 작성

2) 평가방법

(1) 평가체계 및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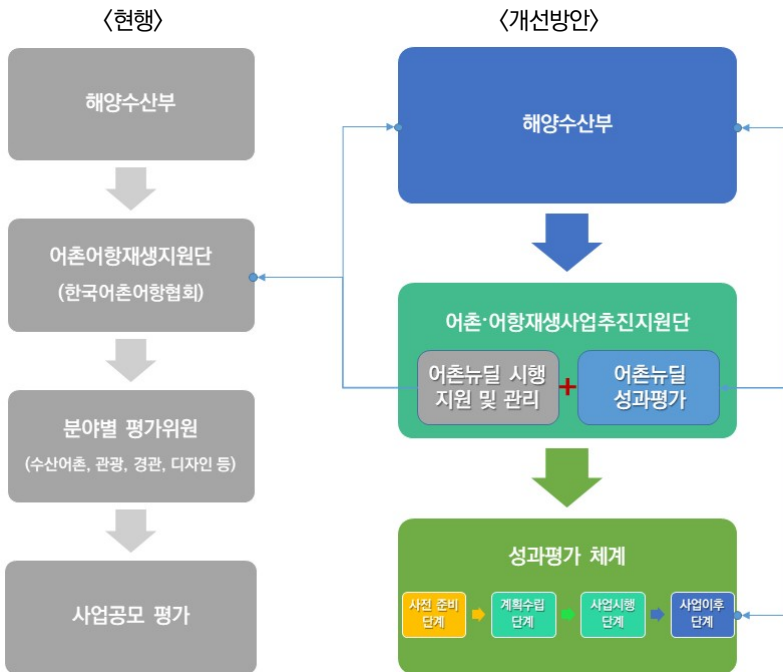
가. 성과평가 체계

어촌뉴딜은 생활 SOC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3조 원의 재정규모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어촌뉴딜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촌어항법」 제4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을 사업시행지원 및 관리, 성과평가를

위한 업무로 이원화하고, 단계별 성과평가 체계를 전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지 평가,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의 이행점검 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촌·어항법」 제47조의4 제3항(어촌·어항재상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에 따른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위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림 4-30〉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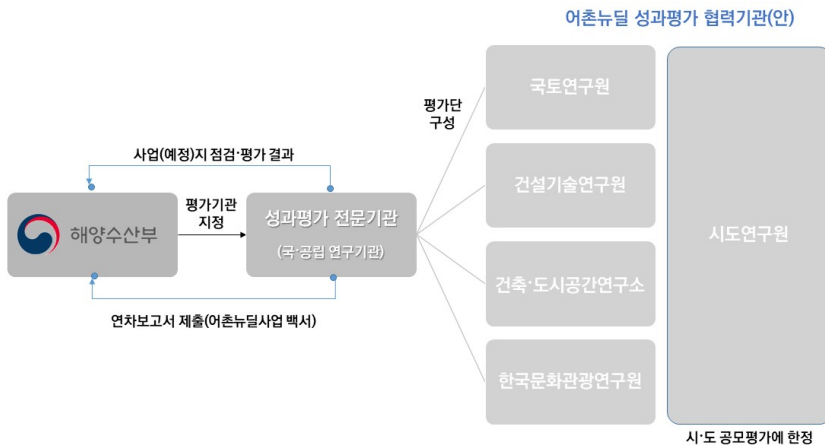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나.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거버넌스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거버넌스는 <그림 4-31>과 같이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법」 제47조의4 제3항에 근거하여 성과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이 관련 국책연구기관들과 각 12개 시·도연구원 간 협력을 통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기진단평가,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다. 다만, 시도연구원의 경우 공모사업 및 성과평가 등 해당 지자체와의 이해관계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어촌뉴딜 공모사업의 시·도평가(1단계)에 한정하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과평가 전문기관은 매년 가칭 「어촌뉴딜사업 백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어촌뉴딜 사업예정지 또는 사업지의 모니터링, 성과평가에 대한 점검·평가를 제공함으로써 평가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4-31>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거버넌스(안)



자료: 저자 작성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어촌뉴딜은 지금까지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어촌·어항의 통합적 개발을 통해 생활 SOC 등 인프라 현대화와 어촌사회를 혁신하는 것으로 주민과 행정기관의 기대가 높다. 하지만 2차 공모사업(2020~2022년)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촌뉴딜 정책이 기존 어항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자문단, 평가위원 등 전문가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어촌뉴딜의 현장에서는 현안 진단 및 사업 발굴 등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역협의체는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 300개소에 약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으로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어촌뉴딜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고, 생활 SOC 정책동향과 어촌뉴딜 공모 추진상황, 유사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AHP 분석을 통해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어촌뉴딜 정부정책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를 ①사전준비단계, ②계획수립단계, ③사업시행단계, ④사업이후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자기진단평가와 모니터링 점검·평가, 성과지표 이행점검 등을 통해 재정사업 성과평가(부처 자율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어촌뉴딜 내실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어촌뉴딜 성과평가는 3단계의 관문심사(1차 지역협의체 → 2차 공모를 통한 사업지 선정, 3차 기본계획 확정)를 제안하고, 특히, 사전준비단계로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과정에서 1차 관문 기능을 강화하여 어촌뉴딜의 주민주도와 지역혁신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어촌뉴딜 성과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촌·어항법」 제47조의8 개정안을 통해 성과평가의 근거규정과 국책연구기관 및 협력기관 등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 행정, 중앙부처(해양수산부), 전문가 등 수요자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촌뉴딜 공모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의 과정과 성과평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촌뉴딜 성과평가 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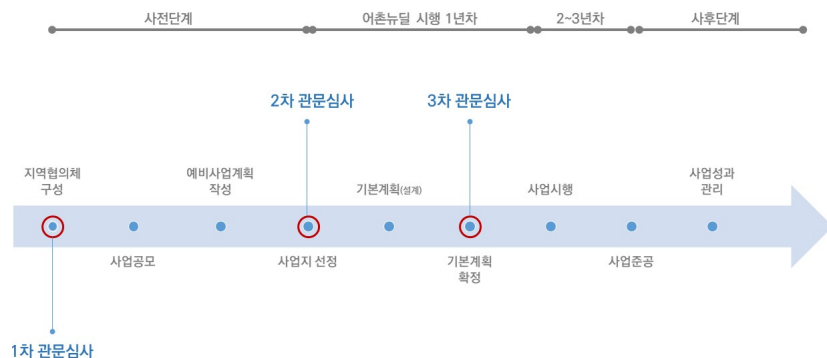
1. 관문심사 및 자기진단평가 체계 도입

1) 관문심사(Gate Assessment) 도입

어촌뉴딜은 300개소가 단계별로 단기에 해수면과 내륙어촌(강마을) 등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전준비단계와 계획수립단계는 관문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충족요건(체크포인트)을 달성해 어촌뉴딜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사업지 선정과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현행 평가위원을 통한 사업공모 평가에 한정해 보더라도 평가위원의 전문분야,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이해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1차 관문심사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해야 한다.

〈그림 5-1〉 어촌뉴딜 관문심사 제도 도입(안)



자료: 저자 작성

2) 자기진단평가 체계 도입

자기진단평가는 관문심사 시 해당 지자체와 지역협의체가 스스로 자기진단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이 점검·평가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자의성과 이해충돌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관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자기진단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1차 공모사업의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어촌뉴딜 자기진단평가 체계(S.A.S : Self Assessment System)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기진단 평가는 체크포인트에 대한 결과를 지자체와 지역협의체가 구분하여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과 평가요소의 디테일을 마련해야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2. 어촌뉴딜 핵심 성과지표(KPI) 도출 및 평가 결과

1) 어촌뉴딜 핵심 성과지표(안)

어촌뉴딜은 명확하게 핵심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과지표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어촌뉴딜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어촌뉴딜사업의 정책목표는 크게 ①일자리 창출, ②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③국가균형발전 실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촌뉴딜의 정책목표를 단순화·종합화하면 결국 일자리, 삶의 질, 국가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한편, 어촌주민의 삶의 질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은 유사한 성과지표로 귀결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지표는 삶의 질 영역에 있어서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노인 복지서비스, 유아·보육 서비스 등 분야별 사회서비스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점검·평가하고 있다. 결국 어촌뉴딜의 핵심적인 성과지표는 ‘일자리 창출’과 ‘어촌사회의 삶의 질 만족도 향상’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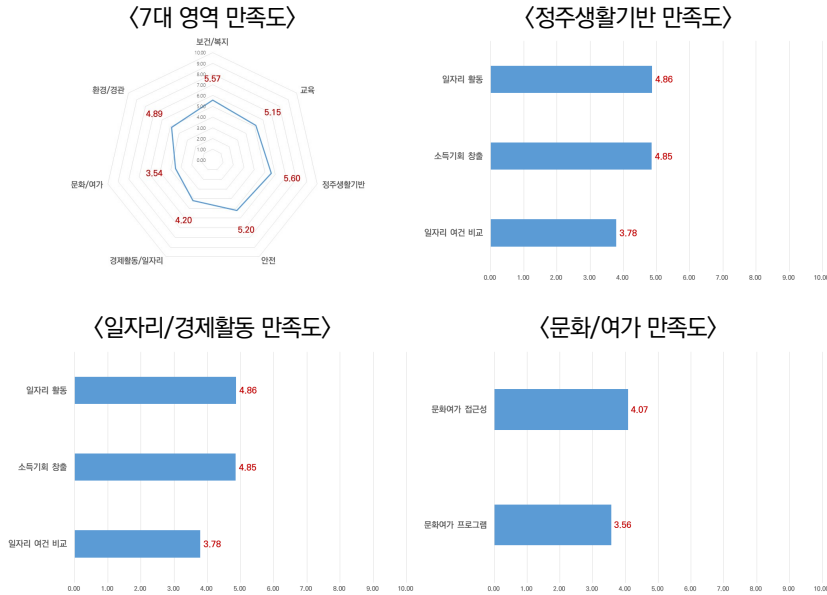
2) 어촌사회의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평가결과

본 연구에서는 어촌뉴딜 1차 공모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56개소 가운데 40개소 권역 어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평가²⁴⁾하였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촌뉴딜 300사업과 어촌주민 삶의 질 만족도 7대 영역 중 사업 간 인과성이 높은 ①정주생활기반 만족도, ②일자리/경제활동 만족도, ③문화·여가 만족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5점 미만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문화·여가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촌뉴딜 사업계획의 성과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만족도는 과대평가 되었거나 용역기관이 임의로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촌뉴딜의 핵심 성과지표인 어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는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모니터링 점검·평가와 성과평가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24) KMI 삶의 질 전문지원기관 운영사업에서 시행한 결과임

〈그림 5-2〉 어촌뉴딜사업 40개소의 어촌주민 삶의 질 만족도 평가결과



자료: 「KMI 삶의 질 전문지원기관 운영사업」의 설문 결과(미발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어촌뉴딜 성과평가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1차 어촌뉴딜사업의 공모와 기본계획 협의과정까지 살펴보면, 정부와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단은 공모사업의 준비와 평가과정에 매몰되어 있다. 어촌뉴딜 정책의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반해 현행 어촌뉴딜 추진의 법적근거가 되고 있는 「어촌·어항법」 제47조의2에서 제47조의7까지 성과평가를 위한 근거규정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촌뉴딜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와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5-1〉은 현행 「어촌·어항법」 제47조의8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성과평가의 실시 근거,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어촌어항재생과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방안 마련과 함께 성과평가의 근거규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표 5-1〉 어촌뉴딜 성과평가의 근거규정 마련(안)

현행	개정안
신설 (어촌어항재생사업 의 평가 및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업 완료이후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저자 작성

4. 어촌뉴딜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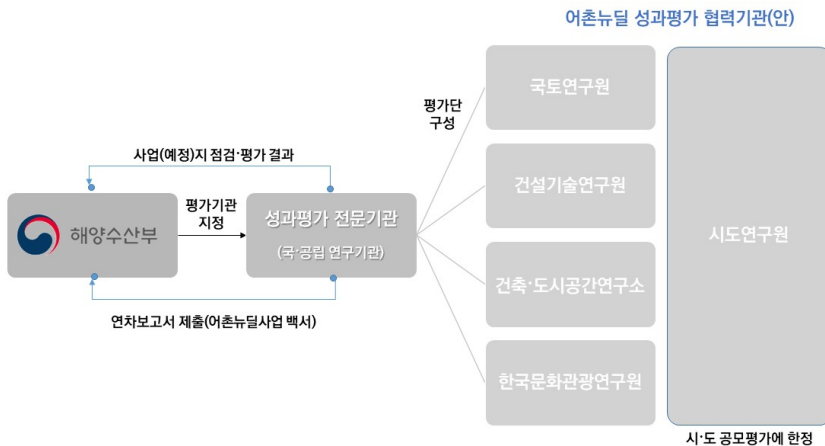
본 연구는 앞서 전문기관에 대한 필요성과 역할을 제시하였듯이 어촌뉴딜의 성과평가 업무는 현행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단의 기존 수행업무(한국어촌어항공단)와 별도로 분리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성과평가 전문기관은 국토연구원(균형발전), 건설기술연구원(안전, 어업기반 인프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경관, 디자인), 한국문화관

광연구원(관광) 등 국책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평가단을 구성하고, 앞서 제안했던 자기진단평가에 따른 점검·평가, 모니터링 평가,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토록 한다. 한편, 시·도연구원은 시도별 공모사업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전문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토록 한다.

성과평가 전문기관은 사업(예정)지 점검·평가에 대한 결과와 연차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함으로써 어촌뉴딜 정책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특히,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어촌뉴딜 성과평가 체계 실행방안 연구」 수행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5-3〉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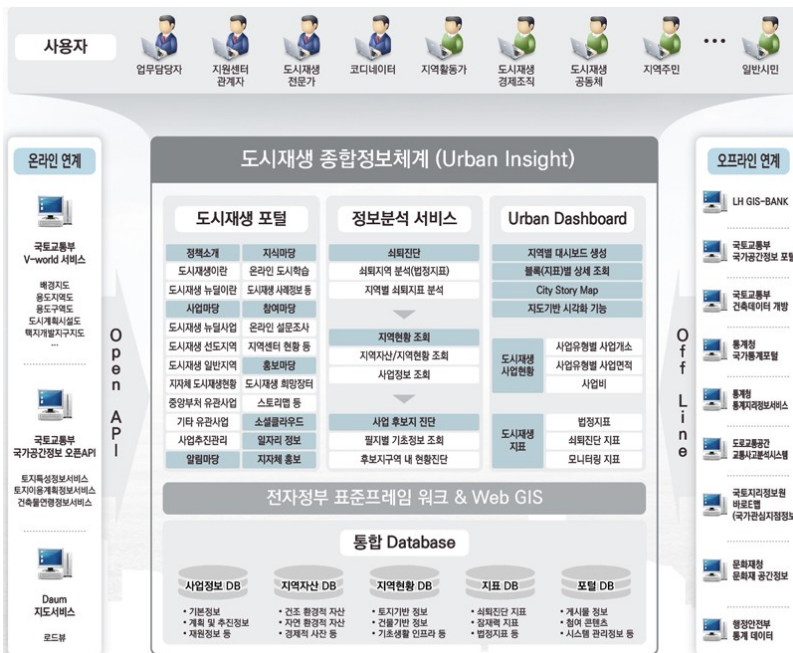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5. 어촌뉴딜 성과평가 관리시스템 도입

어촌뉴딜은 300개소가 2022년이 되면 공모,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집행, 성과평가 등이 전국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어촌뉴딜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림 5-4>는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다양한 주체의 니즈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어촌뉴딜에 대한 수요자 니즈분석, 평가시스템(조회, 입력, 환류 등), 정보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5-4>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자료: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검색일: 2019. 9. 27)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거제시, 이수도 기본계획 협의 요청서, 2019.
- 관계부처 합동, 80대 「핵심과제 평가」 추진계획, 2018.
- 관계부처 합동,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18.
- 관계부처합동,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18.
- 관계부처합동, 「어촌뉴딜300 후속조치 추진방안」, 2018.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생활SOC 3개년계획안 발표), 2019.
- 국무조정실, 「생활SOC 3개년 계획(안)」, 2019.
- 국무조정실, 「성과지표 개발 · 관리 매뉴얼」, 2006
-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2014.
- 국회예산정책처, 「도시재생 뉴딜 분석」, 2018.
- 국회예산정책처,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효과성 측정에 관한 연구』, 2009.
- 기획예산처, 「2006년도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지침」, 2006.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요. 2018.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2017.
- 문화체육관광부,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 최종평가, 2011.
- 박노욱 외,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서울연구원,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 평가체계』, 2017.
- 서울특별시, 「2025 서울시도시재생 전략계획」, 2018.
- 순천시, 화포항 기본계획 협의 요청서, 2019.
- 원종학 · 봉재연 · 박은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정보활용 방안 연구』, 2018.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3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08~'17) 계획 변경(안) 타당성 검토』, 2014.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공모사업 기본계획 협의자료), 2019a.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공모사업 선정결과), 2019b.
- 해양수산부, '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선정결과(56건), 2019.
- 해양수산부,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 기본계획 협의요청서
- 해양수산부,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가이드라인, 2019.
- 해양수산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9.
- 해양수산부, 「2019년 해양수산사업지행지침(수산사업, 어촌뉴딜 300)」, 2019.
-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사업유형 모델개발연구 용역』, 2018.
- 행정안전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안)」, 2016.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76367>)(검색일 : 2019.9.19.)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검색일 : 2019.9.19.)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www.moef.go.kr)(검색일 : 2019.9.19.)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http://www.raise.go.kr/raise/intro/main.do?page=01&menu=11>)(검색일 : 2019.9.25.)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검색일 : 2019. 9. 27)
-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surc/seoulInfo/businessTypeAndStatus.do>)(검색일: 2019.09.25.)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해양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최지현
02	수산부문 전망모형「KMI-FOSiM」구축 연구(2차년도)	이현동
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박상우
04	해양수산업 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최석우
05	연안토지의 공공적 관리 강화를 통한 연안관리 효과 제고방안	윤성순
06	선박 배출저감기술의 국내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안용성
07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최일선
08	주요국의 해양유전자원 관리체계 강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09	하천·해양 수질의 연계·통합 관리 체계 연구	장원근
10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이정삼
11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 및 보존에 관한 연구	류정곤
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정명화
13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영향분석 연구	한광석
14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김태일
15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전형진
16	해상 사이버 보안 대책방안 연구	박한선
17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해운기업 역량강화방안 연구	윤희성
18	국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산항 및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하태영
19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이기열
20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협력 수준 분석과 물류정책 개선방안 연구	김은수
21	온도조절 컨테이너의 국제물류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신수용
22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3/3)	박한선
23	환동해권 경제개발 및 협력방안 연구(3/5)	최나영환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 구축 연구(1/2)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양식어장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해양사고조사체계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연구 - 베이지안 방법론을 중심으로	고병욱
12	해운기업 지배구조 및 비즈니스 유형과 경영성과 관계 분석	황진희
13	간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함수 추정과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한동해권 국내기업 진출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이기열
18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지속발전방안 연구 -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차년도) -	박한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일본의 수산물 수입 구조 분석과 對일본 수출 전략 연구	임경희
02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장홍석
03	사업체 총조사 MD를 활용한 2016,2017 어촌지역 고용통계	한광석
04	외래 해양부착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박수진

2018년

01	선화주조선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낙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3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안용성
04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FTZ) 활성화 방안	조지성
05	최저임금 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6	수산업·어촌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류정곤
07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방안	엄선희
08	유엔 BBNJ 신 공해질서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박수진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9년

01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최일선
02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이남수
03	해수욕장의 사회악자 포용성 증진 방안	정지호
04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황규환
05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연계·활용방안 연구	안용성
06	한국산 수산물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한기욱
07	해양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구상	이윤정
08	USMCA 수산분야 협정문 분석 및 시사점	안지은
09	해운 조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	안영균

2018년

01	미얀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 ASC 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 대기업 물류자화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 위한 우리나라-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4	페루 수산업 실태 및 수산 협력 방향	엄선희
25	경제 총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이용한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	한광석
26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남정호
27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해양휴양·복지서비스 도입방안	홍장원
28	어촌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박상우
29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 및 배후단지 활용방안 연구	이종필
30	IMO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비한 국내 해운산업 대응 전략	이호춘
31	외래병해충에 대한 항만분야 방제체계 개선방안	최나영환
32	수산물 생산·유통분야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가능성과 도입방안	고동훈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성과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트렌드 분석 및 수출 전략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브릿지 구축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어촌뉴딜 300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인 쇄 | 2019년 10월 26일 인쇄

발 행 | 2019년 10월 28일 발행

발 행 인 | 장 영 태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공감(070-4407-6252)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6,000원